

Ⅲ . 손해배상청구사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도한 경우,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6. 5. 28.자 판결 (94다33828)
서울고등법원 1996. 9. 20.자 판결 (96나24196)

事實概要

대법원(주심 이돈희 대법관)은 1996년 5월 28일 TV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최 [] 씨가 주식회사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간신문사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마치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관련자와 접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였거나 그 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실패하자, 더 이상의 사실확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없이 만연히 기사를 작성한 경우, 일간신문이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언론매체에게 그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피고가 발행하는 영자지 코리아 헤럴드는 1991년 4월 12일자 “여배우 불법유학관

런 혐의(Film actress accused of overseas study scam)”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가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포함해 동일한 기사내용을 게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비록 그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재행위와 관련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며 원고 패소판결(1·2심판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3집 pp.185~205 참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3심판결 후,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996년 9월 20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다시 판결했다.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4다33828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코리아 헤럴드, 내외경제신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6인)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4. 5. 26. 선고 93나39814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발행하는 영자지 일간신문인 1991년 4월 12일자 코리아 헤럴드에 “여배우 불법유학관련 혐의(Film actress accused of overseas study scam)”라는 제목과 『약 100억원 챙겨 : 한국유학생 250명 미국 산악지역 가건물에서 시간만 낭비(Pockets about ₩10bil. : 250 Korean students idling in makeshift building on U.S. mountain)』라는 소제목 아래 “최 (Choi)”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과 함께 “서울 경찰은 중, 고생 수백명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유학토록 불법 알선하고, 100억원 이상을 챙겼다는 미확인 혐의로 유명 여배우 최 를 찾고 있다(Popular film actress Choi is being sought by the Seoul police for allegedly illegally arranging for

hundreds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be enrolled at a U.S. high school and pocketing at least 10 billion won in 'arrangement fees.')(중략)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의 부유층 자녀들로 영어실력이 모자라는 관계로 미국 학교측에서 수업시간 후 학교부설 농장에서 말 먹이를 주는 등의 하찮은 일도 시킨다고 한다. 서울 소재의 한 유학 알선업체인 코리아아카데미의 대표인 최 [] (28)는 경찰수사가 시작된 후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The students, mostly from highly affluent families in Seoul, were forced by U.S. school authorities to do menial work at the school farm, such as feeding horses after class, because they lacked English ability, the police investigators said. The 28-year-old Choi, head of the Korea Academy, an overseas study arrangement agency in Seoul, is known to have fled to the United States after getting the wind of the investigation.)(중략) 이 업체에서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할 알선한 약 250명의 한국 학생은 산간지방의 임시 건물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The roughly 250 Korean students whom Choi's arranged to have enrolled at a language program in the U.S. high school stayed in makeshift building high on a mountain.)(이하 생략)"라는 기사가 게재된 사실, 그런데 사실은 소외 유 []가 위 코리아아카데미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교육법,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미달하는 자는 교육감의 유학자격 인정을 받아야 국외유학을 할 수 있음에도,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부터는 17세 미만자들도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고, 미국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에 실시하는 단기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에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함으로써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왔으며, 원고는 위 회사의 광고모델이 되었다가 위 유 []의 제의로 위 회사의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의 유학상담 업무 등을 하여 온 사실, 경찰은 코리아아카데미 등 해외유학 알선업체를 내사한 후 위 유 [], 소외 유 [] 및 원고를 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250명의 중, 고등학생을 유학 알선하고 그 명목으로 합계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하고 1991년 4월 11일 09:30경 서울시경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위 사건에 관하여 "코리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위 유 [], 유 []과 그 이사장으로 되어 있

는 원고가 공모하여 1990년 1월 25일부터 1991년 4월 10일까지 사이에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여권발급 신청시 그 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유학이 아닌 일반 관광 목적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25명 중, 고등학생의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였는데, 위 유 [] 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여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와 위 유 [] 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부하면서 담당 직원이 “원고가 위 유 [] 등과 공모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원고는 현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배 중이다”라는 보충설명까지 하였으나, 사실은 위 발표 당시까지 원고는 미국으로 도피하는 등 수사를 피하려고 한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를 조사한 바도 없었던 사실, 경찰 발표 후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매체들은 같은 날 13:00경 뉴스부터 마치 원고가 위 불법 유학사기 사건의 주모자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피하여 도주한 듯한 표현으로 뉴스를 내보냈고, 같은 날 오후 석간신문인 중앙일보에는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연합통신도 판시와 같은 내용의 통신문을 송신한 사실, 위 코리아 헤럴드는 영자지인 특수한 사정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는 기자가 없는 관계로 경찰수사 관련 기사나 기타 사건기사는 연합통신의 통신문과 방송, 기타 다른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 피고 소속 기자들은 뒤늦게 경찰에 가서 위 보도자료를 구한 후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리아아카데미에서도 그 진위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경찰 보도자료, 연합통신의 통신문, 다른 신문의 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 등을 참고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 그 후 경찰은 같은 달 18. 원고를 조사한 후 여권법위반과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같은 해 5. 18. 여권발급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1992년 6월 26일 원고는 위 코리아아카데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여 위 유 [] 등이 불법유학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받은 비위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사기혐의에 대하여 각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원고가 위 불법유학사기에 관련된 듯한 표현의 기사와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되나, 위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고, 당시 피고로서는 경찰 출입기자가 없었으므로 위 사건을 경찰로부터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라 후에 입수한 경찰의 보도자료, 연합통신의 통신

문, 다른 신문의 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접촉을 시도하여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를 본다.

신문 등 언론매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당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199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분명하나, 위 기사 자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유학을 알선하여 약 100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경찰수사가 시작된 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부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기사내용 중 유학간 학생들이 현지에서 받는 처우에 관한 부분도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사내용 중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은 위와 같은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는 경찰출입기자가 없는 탓에 피고 소속 기자들은 경찰의 보도자료, 연합뉴스의 통신문, 다른 신문의 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을 참고하여 위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기사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기자들이 직접 구한 유일한 취재자료는 경찰의 보도자료뿐이라 할 것인데, 위 기사 내용을 경찰이 보도자료 내용과 비교하여 보아도 경찰의 보도자료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 즉 유학간 학생들이 산간 가건물에서 허송세월하고 있으며, 학교당국이 수업 후에 학교농장에서 말을 먹이는 일과 같은 하찮은 일을 시키고 있거나, 원고가 수사가 시작된 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내용 등이 추가되어 있고, 특히 그 추가 부분 중 일부를 소재목으로 강조하는 등 과장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기사가 작성되어 있다.

또한 언론매체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참작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

의 보도로 인한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취재한 양 작성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자기 책임하에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일간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은 취재시간이 제한된 탓에 보도내용의 진위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과장보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진실로 믿기 위하여는 더욱더 진위 여부의 확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속 기자들이 경찰 보도자료의 내용에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일부를 추가하여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한 노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제1심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 소속 기자들이 원고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리아아카데미에서도 그 진위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함 다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접촉을 시도하여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려 하였다고 하여 마치 피고가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한 듯이 판시하였으나, 강제17호증에 의하면 소외 이□□가 1991년 4월 11일 14:00경 이 사건을 보도한 중앙일보를 보고 원고 집에 전화하여 원고와 통화하였고, 같은 날 저녁 7시 뉴스를 보고 난 후에도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와 통화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소속 기자들의 원고에 대한 접촉 시도가 부적절하였거나, 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위 이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이 코리아아카데미의 사무실에 전화하니 성명미상의 여자가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지금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코리아아카데미측 관련자와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신원도 확인되지 아니한 자와 위와 같은 말을 들어 원심과 같이 코리아아카데미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 소속 기자들은 위 기사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와 코리아아카데미측 관련자와 접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였거나 그 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실패하자, 더 이상의 사실확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만연히 기사를 작성하였으므로, 일간신문이 신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취재 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28.

재판장 대법관 정 귀 호
주심 이 돈 회
이 임 수

2심 判 決 文

사 건 : 96나2419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최 [] (崔 [])

서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소송측대리인 유현석, 이진호, 장건상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

서울 []

대표이사 김진억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신영무, 심재두, 박교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세열, 오종한, 조춘, 김용호, 양영태, 김문회, 최명호

변론종결 : 1996. 9. 6.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8. 12. 선고 93가합2361 판결

환송판결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2. 27.부터 1996. 9. 2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용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10 내지 13호증, 갑 15. 16호증, 을3. 10. 13 내지 17. 19. 21 내지 23호증, 을9호증의 1 내지 4, 을20호증의 1. 2, 을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가 발행하는 영자지 일간신문인 1991. 1. 12.자 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 “여배우 불법유학관련혐의(Film actress accused of overseas study scam)”라는 제목과 “약 100억원 챙겨 : 한국유학생 250명 미국 산악지역 가건물에서 시간만 낭비(Pockets about W10bil.:250 Korean students idling in makeshift building on U.S. mountain)”라는 소제목 아래 “최[](Choi [])”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과 함께 “서울 경찰은 중, 고생 수백 명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유학토록 불법 알선하고, 100억원 이상을 챙겼다는 미확인 혐의로 유명 여배우 최[]를 찾고 있다. 이 학생들은 유학비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일년짜리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국내 여권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유학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의 부유층 자녀들로 영어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미국 학교측에서 수업시간 후 학교부설 농장에서 말 먹이를 주는 등의 하찮은 일도 시킨다고 한다. 서울 소재의 한 유학알선업체인 코리아 아카데미의 대표인 최[](28)는 경찰수사가 시작된 후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위반혐의로 경찰이 찾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이 유학알선업체의 최고경영자인 유[]인데, 그 또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의 유[](44)는 어제 경찰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이 업체에서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할 알선한 약 250명의 한국 학생은 산간지방의 임시건물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미국 고등학교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최씨의 이 업체는 서울의 주요 신문에 광고를 내어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경찰은 또 다른 유학알선업체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의 대표인

김 [] 를 허위 토폴성적표를 발급한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의 허위 토폴성적표로 15명 이상의 한국 학생이 작년과 올해 미국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0. 3. 부당한 방법으로 500점에 훨씬 못 미치는 6명의 고등학생의 토폴점수를 500점 이상으로 올려주고 대신에 총 61,000,000원을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가 게재되었다.(원문 : Popular film actress Choi [] is being sought by the Seoul police for allegedly illegally arranging for hundreds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be enrolled at a U.S. high school and pocketing at least 10 billion won in “arrangement fees.” The students entered the United States with a one-year tourist visa because they could not apply for students passports. Current domestic passports law bans people under 18 from applying for students passports. The students, mostly from highly affluent families in Seoul, were forced by U.S. school authorities to do menial work at the school farm, such as feeding horses after class, because they lacked English ability, the police invertigators said. The 28-year-old Choi, head of the Korea Academy, an overseas study arrangement agency in Seoul, is known to have fled to the United States after getting the wind of the investigation. Also being sought by the police for violation of the passport law is another to executive of the agency. Yu [] who has also gone into hiding. The agency’s managing director Yu [], a 44-year-old man, was arrested by the police yesterday. The roughly 250 Korean students whom Choi’s arranged to have enrolled at a language program in the U.S. high school stayed in makeshift building high on a mountain. The police refused to identify the U.S. high school. Choi’s agency recruited the students by carrying advertisements in major Seoul dailies, 이하 생략)

나. 소외 유 [] 는 국외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코리아아카데미(이하 코리아아카데미라고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코리아아카데미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교육법,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은 사람의 경우 관할 교육감의 유학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9. 1.부터 시행된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부터는 17세 미만자들이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1주간의 단기어학연수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만 하면 학업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하는 학교가 있어서 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 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왔다.

다. 한편 원고는 세 살 때부터 방송에 출연하여 연예활동을 하여 온 연예인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1. 10.경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1986. 6.경 귀국하고 국내에서 다시 연예활동을 계속하여 오다 1989. 2.경 코리아아카데미의 광고모델로 출연한 바 있었는데, 유□□는 유학 희망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유학 경험이 있는 인기 여배우인 원고에게 코리아아카데미에서 같이 일해줄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부터 코리아아카데미의 강남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처음에는 “강남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같은 해 말경 코리아아카데미의 본사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왔다.

라. 원고가 코리아아카데미에서 담당한 업무는 유학생 모집광고를 낼 때 광고모델의 역할을 하는 일과 시간이 나는 대로 위 회사에 출근하여 유학경험과 대학에서의 전공과목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위 회사를 찾아 온 유학희망자나 그 학부모들에게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의 교육제도, 어학공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 주는 일이었고 그 대가로 코리아아카데미로부터 매월 금 1,500,000원의 보수를 받아 왔는데, 유□□는 “코리아아카데미의 이사장”이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같은 내용으로 광고문안을 작성하여 일간신문 등에 유학알선광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그 후 약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주었고, 1990. 여름에는 위 회사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토폴시힘 없이 미국 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미국대학 관계자들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한편 세미나의 통역을 담당하였고, 같은 해 7. 하순경에는 미국에 있는 엘리엇 팝(ELLIOTT POPE)이라는 중, 고등학교에 약 30명의 유학희망자를 인솔하여 안내하였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는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 해외유학알선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학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의 유학을 알선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1991. 3.경 '코리아아카데미',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을 포함하여 '한국해외유학본부', '해외교육문화원' 등 9개 해외유학알선업체를 내사하였고, 이에 따라 범죄혐의가 짙은 코리아아카데미 및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코리아아카데미 관계자로 유[] , 원고, 소외 유[] 등을 유학비자를 받을 수 없는 250명의 중, 고등학생을 유학 알선하고 그 명목으로 합계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 원장인 소외 김[]를 학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토폴성적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태평양유학진흥원 상담실장인 소외 오[]을 유학희망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김[]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위조된 토폴성적표를 교부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각 입건하면서 같은 해 4. 11. 09:30경 수사과 기자실에서 서울시경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불법해외유학사건을 수사한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다.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 원장인 김[]가 소외 정[], 오[]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토폴시험성적표를 이용하여 그들의 자녀를 유학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동인들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등 행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코리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유[], 유[]과 이사장으로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들이 공모하여 1990. 1. 25.부터 1991. 4. 10.까지 사이에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여권발급신청시 그 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유학이 아닌 일반 관광목적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250명의 중, 고등학생의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였는데, 유[]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여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와 유[]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특별시 경찰국 담당직원이 "원고가 위 유[] 등과 공모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원고는 현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배 중이다"라고 보충설명까지 하였다.

바. 이에 따라,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매체들은 같은 날 13:00경 뉴스부터 마치 원고가 불법유학사기 사건의 주모자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피하여 미국으로 도주한 듯한 표현으로 뉴스를 내보내었고, 같은 날 오후 석간신문인 중앙일보에서도 "여우가 해외유학사기"라는 제목과 "최[] 씨 미 도피, 2백여 명에 백억원 가로채", "중고생 등 미국서 영어 못해 목장일 하기도"라는 소재목 아래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배포하였으며, 연합통신은 같은 날 오후 '통신수신 및 전재계약'을 체결한 피고 등에게 『학생 250여 명 불법유학』이라는 제목과 『알선업자 넷 영장신청 2명 수배』 『토플성적위조-관광비자 이용』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시경은 11일 해외유학자격이 없는 중, 고교생들을 토플성적표를 위조하거나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미국과 호주 등지로 유학시켜 온 (주)코리아아카데미 상무 유 [] (44. 서울 []) 등 해외유학알선업자 4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여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다. 경찰은 또 달아난 (주)코리아아카데미 이사장 최 [] 씨(28. 여, 영화배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녀의 해외유학을 의뢰한 학부모 채모 씨(45. 주부, 서울 [])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 해외유학알선업체인 (주)코리아아카데미를 설립, 미국유학 경험이 있는 배우 출신의 최씨를 월 1백 50만원씩 주고 이사장으로 내세운 뒤, 일간지 등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남모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고 남씨의 아들을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유학을 보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250여 명의 학생들을 불법유학시켜 주고 25억여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유학희망자 모집과 진학상담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이하 생략)"는 내용의 통신문을 송신하였고, 피고는 위 보도자료, 통신문, 방송, 신문기사의 내용 등에 기초하여 가. 항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배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유학사기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미국으로 도피하거나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지명수배를 받은 일이 없으며, 코리아아카데미는 토플성적 위조와는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며 가사 위 각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또는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14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어 보면, 경찰에서는 코리아아카데미의 운영관계자로 유 []에 대한 신병만을 확보하여 조사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상 1991. 3. 1.자로 인천 []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서울 []에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 내어 경찰관이 위 거주지를 찾아갔으나 여기서 만날 수가 없어 조사하지 못하였고, 한편 원고는 1991. 3. 7.부터 같은 달 11.까지와 같은 해 4. 4.부터 같은 달 9.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다녀왔으나 위와 같이 수사가 시작된 후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도피하거나 다른 곳으로 달아나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언론매체가 위 사건을 보도한 이후인 같은 달 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유 [], 유 [], 유 []과 공모하여 국외유학자격이 없어 유학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관계로 국외로 출국할 수 없는 중, 고등학생의 여권을 여권발급신청시 진정한 목적인 유학이 아닌 관광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았다는 여권법위반의 점과 유학알선을 구실로 국외유학자격이 없는 중, 고등학생의 부모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그러나 그 후 검찰에서 같은 해 5. 18. 원고와 유 [] 등에 여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권 신청시 그 목적을 유학이 아닌 관광 등으로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후 그 목적과는 달리 유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권발급신청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처분을 하였고, 원고와 유 []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일단 기소중지결정(유 []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구속기소를 하였다)을 하였으나 1992. 6. 26.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원고가 코리아아카데미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유 [] 등이 불법유학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받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던 사실, 이어 피고도 그가 발행하는 1992. 7. 29.자 신문에서 원고가 유학사기사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등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원고는 영화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일반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인(公人) 또는 유명인이며 위 기사 내용은 불법유학알선 등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 사건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유[] 등의 해외유학 알선에 대하여 원고가 관여하게 된 경위와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 원고가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약 100억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한 부분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유학간 학생들이 현지에서 받은 처우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과장되어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토폴성적 위조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사에서도 원고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하지 않았다.)

(4)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기사내용 중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은 위와 같은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기사를 실제 작성한 피고 소속의 사회부 기자인 이[]은 1991. 4. 11. 13:00경 라디오 방송을 통해 원고가 불법유학사기에 관련되었다는 보도를 듣고 연합통신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통신문이 도착하자 그 당시 피고의 사회부장이었던 소외 김[]의 지시에 따라 다른 기자들에게 부탁하여 서울특별시 경찰국이 배포한 앞서 본 내용의 보도자료(갑15호증)를 팩스를 통하여 수신한 사실, 또 이[]은 같은 기자인 소외 황[]으로 하여금 원고와 접촉해 볼 것을 부탁하였으나 황[]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직접 코리아아카데미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 여직원으로부터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지금 아무도 없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듣고서는 원고가 그 날 오후 14:00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원고의 집에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원고와의 직접적인 전화 접촉조차 하지 않은 채 피고 소속 기자들이 구한 유일한 취재자료인 보도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합통신의 통신문, 다른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직접 취재한 양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기사 내용을 경찰의 보도자료나 연합통신의 통신문과 비교해 보아도 그 보도자료나 통신문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내용, 즉 유학간 학생들이 산간 가건물에서 허송세월을 시

키고 있다거나 원고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내용 등이 추가되어 있고, 특히 그 추가부분 중 일부를 소재목으로 강조하는 등 과장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기사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 소속 기자들이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와 코리아아카데미측 관련자와 접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였거나 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실패하자 더 이상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히 허위사실이 포함된 과장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영자지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경찰관서에 출입하는 기자가 없는 관계로 경찰수사 관련기사나 기타 사건기사는 국내 통신사인 소외 주식회사 연합뉴스로부터 수신료를 지급하고 수신하는 통신문과 방송, 기타 다른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는 사정과 일간신문은 신속성을 요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소속 기자들이 이 사건 기사의 취재 및 작성과정에서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가 발행하는 영자 일간신문인 코리아 헤럴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게재, 배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피고 발행의 신문이 배포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유등의 유학알선 행위의 불법성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아카데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유학희망자나 그 학부모들의 상담에 응하고 유학희망자를 인솔하고 미국 소재 학교를 안내하는 등 일반인의 오해를 야기한 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피고의 회사 규모와 신문발행부수, 신문의 구독층,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크기 및 전체 기사의 분량 중에서 원고에 관한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 게재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그가 발행하는 신문에서 원고가 유학사기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등 내용의 이 사건 기사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2. 2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9. 20.까지는 민법 소송의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9. 20.

재판장 판사 김 동 건
판사 김 상 균
판사 김 상 철

□

공인의 경우 상업적이 아니라면 언론에 의해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관련 없는 보도에
공표되었다면 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11. 24.자 판결 (95가합13495)
서울고등법원 1996. 6. 18.자 판결 (96나282)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1996년 6월 18일 임 _____ 씨

가 호화 웨딩드레스 대여업자들의 횡포를 고발하는 뉴스에 자신의 결혼식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보도한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초상권 침해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피고를 포함한 언론기관이 결혼식을 취재하면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 이를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어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그 결혼식 보도와 관련하여 촬영된 사건 또는 화면을 공표하는 데 대한 동의만을 포함하는 것이지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든 관계 없이 일체의 공표에 대하여 동의한다거나 그 공표와 관련한 자신의 초상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자신의 초상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더욱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 보도 이후 ‘원고의 아버지와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정정보도와 2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 수차례 절충 끝에 정정보도를 방영하였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합의한 내용과 달리 보도되었고 이에 합의내용을 위반한 데 분노를 느낀 원고측이 피고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피고측이 원고 아버지를 찾아와 손해배상청구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불법행위와 관련한 피고와의 협상에서 원고 아버지가 결혼까지 한 원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원고 아버지는 원고를 설득해 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자료화면에 나오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내용과 같이 과시적으로 비싼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한 신부의 하나이거나 최소한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혔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공적인 논쟁에 있어서 언론의 초점이 된 자는 그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한 스스로 자신의 초상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 95가합13495 손해배상(기)

원 고 : 임 []

서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현수, 이병선

변론종결 : 1995. 11. 10.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3. 29.부터 1995. 11. 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가. 피고는 T.V. 라디오 방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인데, 1995. 3. 28.자 KBS TV 9시뉴스와 중간부분에 “부르는게 값”이라는 제목으로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약 1분 55초에 걸쳐 방영하면서, 그 배경화면으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을 약 13초 가량 사용하였다.

나. 위 보도의 내용은 먼저 앵커의 “결혼시즌에 맞춰 최근 한 웨딩드레스 업체가 가격파괴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한편에선 여전히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진열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단 한번 빌려 입는데만 몇 백만원이라는 웨딩드레스가 아직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장□□ 기자의 보도입니다”라는 발언을 15초 가량 방송한 후, 원고의 결혼식 장면 중 하객들을 배경으로 한 원고의 결혼식 입장 장면, 신랑신부 맞절 장면, 주례사 진행으로 화면을 내보내고, 주례사를 듣는 화면 가득한 원고의 모습과 화면 가득한 신랑의 모습을 화면으로 송출하면서 기자의 “길게 잡아도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결혼식, 이 시간을 위하여 신부가 드레스를 빌리는데 드는 돈은 엄청납니다”라는 발언을 방송하고 그 후 원고가 신랑이 퇴장하는 모습 등을 방송한 후, 이어서 장면을 바꾸어 웨딩드레스 진열장에 진열된 웨딩드레스의 화면, 그 외 2명의 여성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의 화면을 송출하면서 기자가 “더구나 지역에 따라 비용은 큰 차이가 납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이어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하여 인터뷰장면을 내보내면서 “웨딩숍에서 3,000,000원 주고 했다고 들었어요” “1,500,000 불렀는데 깎아가지고 부케까지 1,200,000…” “일반적으로 드레스 빌리는 것만 800,000원이고…”라는 그들의 발언을 방송하고, 이어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예비신부 등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그 대여비용이 몇십만원부터 8,000,000원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는 내용의 발언들을 내보낸 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 실제값보다 적어도 서너배 이상까지 부풀려졌다는 증거입니다. 일생의 한 번밖에 없는 예식임을 교묘히 악용하여 업자들은 터무니없는 드레스 값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자의 발언으로 이 부분 뉴스를 마감하였다.

위 보도 중 원고의 결혼식 장면의 대부분은 원고와 그 신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면에서 얼굴을 찍은 장면이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89. 전대협 대표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하여 세간에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1995. 1. 23. 원고의 결혼식은 각 언론기관에서 취재하여 보도되었고, 피고가 본 사건 뉴스에서 사용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은 그 때 보도자료로 촬영된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도 후 호화 웨딩드레스 관련기사에서 자신의 결혼식 장면이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측에 항의를 하여, 피고는 1995. 4. 18. KBS TV 9시 뉴스시간에 “임 씨, 호화 웨딩드레스와 무관”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면서 앵커가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원고의 결혼식 장면이 삽입된 것은 뉴스편집·제작과정상의 착오였으며 원고가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호화 결혼식을 한 것처럼 비춰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를 하였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명예훼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KBS TV의 9시 뉴스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제목으로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존재하며 실제 신부들이 결혼식 때 입는 웨딩드레스의 대여료가 심지어 8,000,000원까지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원고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선명한 화면으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의 전반을 방영하였는 바, 피고의 위 뉴스보도의 취지가 웨딩드레스 대여업자들의 횡포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보도를 접한 일반 시청자들이라면 그러한 사정하에서는 ‘통상적으로’ 그 자료화면으로 나오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내용과 같이 과시적으로 비싼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한 신부의 하나이거나 최소한 그러한 경향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결혼식 장면의 사용에 의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의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혔다고 할 것이다.

나. 초상권 침해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결혼식 장면을 원고의 허락 없이 촬영한 후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도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보통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타인이 자신의 용모, 자태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널리 공표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정신적 평온이 방해를 받게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상의 이익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 할 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이를 편의상 ‘초상권’이라고 한다)라고 함이 상당하나, 한편으로는 전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공적인 논쟁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 자신의 주장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여 언론의 초점이 된 자는 그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스스로 자신의 초상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국민의 공적인 관심사인 통일문제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실정법에 위배하여 밀입북하여 한 때 전국민의 관심의 대상으로

한동안 언론의 초점이 되어 원고의 초상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의 결혼식 장면은 국내 대부분의 언론기관에 의해 보도되어 이미 공표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혼식 장면에서의 원고의 초상”은 이미 원고가 묵시적으로 공표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공표가 승낙된 위 결혼식 장면에서의 원고의 초상”을 피고가 방영하였다 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이 관련 보도와 결합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는 바이므로 그 결혼장면상의 원고의 얼굴이 공표된 것만을 따로 떼어 별도의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볼 수도 없어서 원고의 초상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도 이후 원고의 친정 아버지인 소외 임□□와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정정보도와 금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오므로, 피고측은 원고의 대리인들과 수 차례의 절충을 거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정보도를 방영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가 손해배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절충을 통하여 그 주장과 같은 정정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객관적 명예와 명예감정의 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호화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였다는 점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웨딩드레스 업소의 횡포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가사 위 보도를 접한 시청자들이 원고가 호화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허위의 사실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 점(원고는 피고의 위 보도가 허위의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입증한 바가 없다), 그 보도된 장면은 원고의 비밀적 영역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범위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질 것이 예정된 결혼식 장면으로 각 언론사에 의해 보도된 장면인 점(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의 결혼식에는 각 정당의 대표 혹은 중진 국회의원들, 종교계나 학계의 저명인사들도 참가하여 세인들간에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보도후 피고측에서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같은 시간대에 정정보도를 하여 원고의 명예가 상당 정도 회복된 점 및 원고의 나이, 신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금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1995. 3. 29.부터 피고가 그 채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5. 11.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1. 24.

재판장 판사 이 중 찬
판사 최 종 길
판사 이 병 한

2심 判 決 文

사 건 : 96나28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및 부대피항소인: 임 []

서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한국방송공사

서울 []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현수, 이병선

변론종결 : 1996. 5. 21.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11. 24. 선고 95가합13495 판결

주 문 : 1. 원심 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8. 23.부터 1996. 6.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3.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원심의 비디오 테이프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TV와 라디오 방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인데, 1995. 3. 28.자 KBS TV 9시뉴스의 중간 부분에 “부르는게 값”이라는 제목으로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약 1분 55초에 걸쳐 방영하면서, 그 배경 화면으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을 약 13초 가량 사용하였다.

나. 위 보도의 내용은 먼저 앵커의 “결혼시즌에 맞춰 최근 한 웨딩드레스 업체가 가격파괴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한편에선 여전히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진열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단 한 번 밀려 입는데만 몇 백만원이라는 웨딩드레스가 아직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장 [] 기자의 보도입니다”라는 발언을 15초 가량 방송한 후, 원고의 결혼식 장면 중 하객들을 배경으로 한 원고의 결혼식 입장 장면, 신랑 신부 맞절

장면, 주례사 진행으로 화면을 내보내고, 주례사를 듣는 화면 가득한 원고의 모습과 화면 가득한 신랑의 모습을 화면으로 송출하면서 기자의 “길게 잡아도 한 시간이 채 안되는 결혼식, 이 시간을 위하여 신부가 드레스를 빌리는데 드는 돈은 엄청납니다”라는 발언을 방송하고, 그 후 원고가 신랑이 퇴장하는 모습 등을 방송한 후, 이어서 장면을 바꾸어 웨딩드레스 진열장에 진열된 웨딩드레스의 화면, 그 외 2명의 여성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의 화면을 송출하면서 기자가 “더구나 지역에 따라 비용은 큰 차이가 납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이어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하여 인터뷰 장면을 내보내면서 “웨딩숍에서 3,000,000원 주고 했다고 들었어요” “1,500,000 불렀는데 깎아가지고 부케까지 1,200,000…” “일반적으로 드레스 빌리는 것만 800,000원이고…”라는 그들의 발언을 방송하고, 이어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예비신부 등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그 대여비용이 몇십만원부터 8,000,000원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는 내용의 발언들을 내보낸 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 실제값보다 적어도 서너배 이상까지 부풀려졌다는 증거입니다. 일생의 한 번밖에 없는 예식임을 교묘히 악용하여 업자들은 터무니없는 드레스 값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자의 발언으로 이 부분 뉴스를 마감하였다.

위 보도 중 원고의 결혼식 장면의 대부분은 원고와 그 신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면에서 얼굴을 찍은 장면이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89년 전대협 대표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밀입북하여 세간에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1995. 1. 23. 원고의 결혼식은 각 언론기관에서 취재하여 보도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뉴스에서 사용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은 그 때 보도자료로 촬영된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도 후 호화 웨딩드레스 관련 기사에서 자신의 결혼식 장면이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측에 항의를 하여, 피고는 1995. 4. 18. KBS TV 9시 뉴스시간에 “임 씨, 호화웨딩드레스와 무관”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면서 앵커가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원고의 결혼식 장면이 삽입된 것은 뉴스편집·제작 과정상의 착오였으며 원고가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호화결혼식을 한 것처럼 비취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바로잡는다는 정정보도를 하였다.

마. 원고가 실제로 결혼식에서 입은 웨딩드레스는 ‘송이웨딩’에서 금 30만원을 주고 아기 들러리복과 함께 빌린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

가. 명예훼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KBS TV의 9시 뉴스에서 “부르는게 값”이라는 제목으로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가 존재하며 실제 신부들이 결혼식 때 입는 웨딩드레스의 대여료가 심지어 8,000,000원까지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원고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선명한 화면으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의 전반을 방영하였는 바, 피고의 위 뉴스보도의 취지가 웨딩드레스 대여업자들의 횡포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보도를 접한 일반 시청자들이라면 그러한 사정하에서는 ‘통상적으로’ 그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같이 과시적으로 비싼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한 신부의 하나이거나 최소한 그러한 경향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결혼식 장면의 사용에 의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의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혔다고 할 것이다.

나. 초상권 침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결혼식 장면을 원고의 허락 없이 촬영한 후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도의 배경 화면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를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른바 공적인 인물인 원고의 결혼식을 보도하기 위하여 그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무렵 자신의 결혼식 장면의 촬영 및 공표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그 결혼식과 관련한 자신의 초상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의 인정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설사 원고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피고를 포함한 언론기관이 결혼식을 취재하면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 이를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어 촬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 묵시적 동의는 결혼식 장면의 촬영에 대한 동의와 언론 기관이 그 결혼식 보도와 관련하여 촬영된 사진 또는 화면을 공표하는데 대한 동의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촬영한 사진 또는 화면을 향후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든 상관 없이 일체의 공표에 대하여 동의한다거나 그 공표와 관련한 자신의 초상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원고의 결혼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를 고발하는 보도에서 원고의 결혼식 장면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하여 시청자들에게 마치 원고가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호화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화면을 공표하는 것은 원고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 원고로서는 예상치 못한 것으로서 그러한 공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공표 행위와 관련한 자신의 초상권을 포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세인의 관심을 끄는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그 스스로 자신의 초상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세인의 관심을 끄는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더욱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만일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실제로 호화 결혼식을 거행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호화 결혼식을 보도하기 위하여 위 촬영 화면을 사용하였다면 그 법적인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 원고는 호화 결혼식을 거행한 바도 없고, 피고가 원고의 호화 결혼식을 보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초상을 촬영한 화면을 공표한 데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 동의 또는 권리 포기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공적인 인물이므로 원고가 그 화면의 공표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도 이후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임 []와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정정보도와 금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해 오므로, 피고측은 원고의 대리인들과 수 차례의 절충을 거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정보도를 방영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 []가 손해배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임 []가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 []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보도를 한 후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하여 수 차례 협상 끝에 피고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는 데 합의한 사실, 위 합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앵커의 얼굴을 화면으로 잡고 멘트로 정정보도 내용을 처리하되 멘트가 나가는 동안 화면 하단에 "임 [] 씨, 호화 웨딩드레스와 무관"이라는 자막을 계속 내보내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위 정정보도를 방송하면서 위 자막을 잠시 지나가는 형식으로 처리한 사실, 피고가 정정보도를 방송하면서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위반한데 대하여 분노를 느낀 원고측에서 피고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피고의 직원인 담당자가 오랫동안 언론계에 종사한 바가 있는 원고의 아버지 임 []를 찾아가 방송국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위 임 []가 그 입장에 동감을 피력한 후 집으로 돌아와 원고의 어머니인 위 김 []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할 것을 권하였으나 원고와 위 김 []이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측의 담당자가 위 임 []를 찾아가 사정을 하게 된 경위와 위 임 []가 그 담당자에 대하여 동감을 표시한 경위 및 원고가 성년에 이르러 결혼까지 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위 임 []가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한 피고와의 협상에 있어서 원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었던 것이냐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기본적인 대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 위 임 []가 피고측 담당자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은 딸인 원고를 설득해 보겠다는 취지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그와 같은 대화를 통하여 위 임 []가 이미 결혼까지 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점에서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 방송이 원고에 대한 객관적 명예와 명예 감정을 훼손하고,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의 방송 내용, 방송 이후 정정보도 방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정정보도 내용, 원고의 나이와 환경, 기타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하면 위자료 금액을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그 중 원심 인용 금액인 금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1995. 3. 29.부터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 판결 선고일인 1995. 11.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인용 금액인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8. 23.부터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6.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8. 23.부터 1996. 6.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6. 18.

재판장 판사 손 지 열

판사 김 윤 기

판사 박 철

□

수사기관의 공식발표내용에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거나 각색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5. 12. 22.자 판결 (94가합17753)

서울고등법원 1996. 9. 11.자 판결 (96나7849)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1996년 9월 11일 이 □ 씨가 서울신문사 외 5개 중앙일간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브로커라고 적시하고, 원고의 혐의사실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이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듯한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며 피고 서울신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당국의 발표내용에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거나, 사실을 각색하여 보도하거나 그 정도를 초과하여 단정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의 알선수수료 지급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검찰이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을 밝힐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기사내용인 원고의 혐의사실은 진실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사 외 5개의 언론사들은 1993년 4월 9일 내지 같은 달 10일에 걸쳐 서울 지방검찰청 특수2부가 변호사들의 과다수임료 수수사건 소개인에 대한 소개비지급 등의 비리에 관하여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부장검사의 발표를 근거로 보도 하면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브로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법원은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피고들 중 서울신문은 항소를 제기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94가합17753 손해배상(기)

원 고: 이 [] (李 [])

부산 []

피 고: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서울 []

대표이사 권오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2. 주식회사 경향신문사(京鄉新聞社)

서울 []

대표이사 최종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렬, 이동학, 민홍기, 박성호

3.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서울 []

대표이사 홍석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4.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

대표이사 이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5. 주식회사 한국일보사(社)

서울

대표이사 장재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6. 주식회사 국민일보사(國民日報社)

서울

대표이사 조용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렬, 이동학, 민홍기, 박성호

변론종결 : 1995. 12. 1.

주 문 :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한국일보사는 각 금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국민일보사는 각 금3,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3. 4. 10.부터 1995. 12. 22.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각 신문), 갑 제10호증의 1(공소장표지), 2(공소장내용), 갑 제11호증(판결), 갑 제15호증의 1(수사기록표지), 2(기록목록), 3(범죄인지서), 4, 5(각 진술서), 6, 7(각 진술조서), 8(피의자신문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각 급여목록)이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1993. 4. 초순경부터 서울지방법검찰청 특수2부는 변호사들의 과다수임료 수수, 사건 소개인에 대한 소개비 지급 등의 비리에 관하여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달 9. 08:00경 위 특수2부 소속의 검사인 소외 김□□의 사무실에서 변호사 2명과 사무장 등 다수의 직원들이 조사를 받는 현장을 목격한 기자들이 이를 취재하면서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위 특수2부의 부장검사인 소외 김□□은 기자실로 찾아와 소외 최○○ 변호사와 소외 박○ 변호사 2명의 신병을 확보하여 브로커 고용혐의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고, 같은 날 아침 일찍 위 변호사들의 사무실 직원 9명을 연행하여 사건 수임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소속의 법조담당기자인 소외 김□□이 위 김□□ 부장검사에게 연행된 위 변호사들의 사무실 직원 중 대표적인 인물의 한자이름과 나이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자 위 김□□ 부장검사는 위 김□□ 검사에게 전화로 확인한 후 당시 위 최○○ 변호사의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한자 이름과 나이를 알려주었다.

나. 이에 각 신문사 기자들은 위 김□□ 부장검사의 구두발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1993. 4. 9. 내지 같은 달 10. 피고들 발행의 각 신문에 별지 기재와 같이 위 변호사 최○○, 박○의 혐의사실과 함께 원고의 혐의사실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위 김□□ 검사는 위 최○○ 변호사를 같은 달 10. 구속하고, 같은 달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 '1991. 8. 20.경부터 1993. 4. 1.까지 도합 61회에 걸쳐 서울시내 각 경찰서 소속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그 알선자들에게 합계금 44,500,000원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 금품을 받고 사건 수임을 알선하는 자들로부터 사건수임을 알선받았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을 밝힐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였을 뿐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변호사에게 소개료를 받고 사건을 알선해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로부터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을 뿐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사실확인도 없이 위와 같이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같은 피고의 별지 기재 기사는 원고가 변호사법 위반 여부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검찰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신문보도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보도내용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족하고, 그 적시되는 사실이 반드시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표현행위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표현행위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행위가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기사들을 살펴보면 피고들은 공통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브로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변호사로부터 알선료를 받고 사건의뢰인을 소개시켜주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행위를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란 인상을 주고 있고, 더 나아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국민일보사는 그 기사에서 원고에 대하여 '최변호사 등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소개료를 받아온', '변호사에게 사건을 유치해주고 건당 수십만~수천만원까지 챙긴', '사건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소송사건을 알선해 주고 변호사들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로서 하여금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검찰은 이 [] 씨(31) 등 사건 브로커 9명 중 죄질이 무거운 4~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라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 전문 브로커들은 지금까지 수십건의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해 주고 수천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함으로써 아직 혐의사실을 확인 중이라는 검찰의 발표범위를 초과하여 마치 검찰이 원고의 혐

의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법성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역시 위법성이 없거나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신문 및 잡지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그 기사가 이 사건과 같이 검찰 등 공공기관의 발표를 인용 내지 보도하는 형식인 경우 진실성의 판단대상을 발표자체 사실뿐만 아니라 그 내용 되는 사실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한편,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자료 또한 근거는 보도기관으로서 일응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 사실탐지 능력의 한계,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 취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뒷받침 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반면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당국의 발표내용에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거나, 사실을 각색하여 보도하거나, 그 정도를 초과하여 단정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먼저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내용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

고 있는 변호사들의 알선수수료 지급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을 밝힐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형사입건조차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기사내용인 원고의 혐의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할 것인데, 피고들 소속의 기자들이 위 김□□의 구두발표를 토대로 위 각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발표내용이 서울지검 특수2부가 변호사들의 브로커 고용혐의와 원고를 포함한 그 직원들의 브로커 역할혐의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 있어, (피고들은 위 김□□ 부장검사의 발표내용에 원고가 브로커라든가 원고에 대한 브로커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발표내용에 위 피고들 발행의 각 기사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브로커라고 적시하고, 원고의 혐의사실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이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듯한 보도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발표범위를 초과하여 단정적인 기사를 보도한 점에서 수사기관의 발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혐의사실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피고들이 위 각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게재정도 및 명예훼손 행위 이후의 사정 등이 사건 변론의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각 금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국민일보사는 각 금 3,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각 금 5,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국민일보사는 각 금 3,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종불법행위일인 1993. 4. 10.부터 피고들이 그 의무의 준수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5. 12. 22.까지 민
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2. 22.

재판장 판사 이 원 국
판사 권 오 준
판사 김 복 형

각 피고별 보도기사

1. 동아일보(1993. 4. 10.자)

가. 상단기사

(1) 제목

브로커와 共生...人氣변호사로

朴○·崔○○ 변호사 非理유형

교통사고 전문 「앰블런스」 별명朴

“警察에 소개사례비 지급” 소문崔

(2) 기사내용

10일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朴○, 崔○○ 변호사는 그동안 법조계 브로커
에 대한 일제 단속이 있을 때마다 브로커와 함께 사법처리설이 나돌았을 정도로 비리
소문이 자자했다.(중략)

한편 崔변호사는 형사사건의 1차 발생처인 일선 경찰서를 직접 누비며 사건을 수입
하는 유형.

그동안 강남 소재 모 경찰서의 「고문 변호사」라는 풍문이 나돌았는가 하면 사건을
소개받을 때마다 경찰관에게 얼마씩 나눠준다는 등의 미확인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崔변호사는 7, 8명 정도의 사건 브로커를 고용해 이들에게 사건알선대가로 수입료
의 20~30%를 건네 준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검찰관계자는 「이들 변호사들이 소속 변호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원을 편법으
로 고용해 사건알선 수수료를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구속이 불

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하단기사

(1) 제목

변호사 2명 令狀 청구

서울지검 브로커와 결탁 소송사건 受任

(2) 기사내용

서울지검특수2부는 10일 사건 브로커를 통해 소개료를 주고 소송사건을 수임해온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崔○○, 朴○ 변호사 등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중략)

검찰은 崔변호사의 경우 사건 브로커들을 통해 서울시내 경찰서 등에서 형사사건 피의자 가족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뒤 소개료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중략)

검찰은 이에 앞서 崔변호사 등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소개료를 받아온 李동민(31) 등 브로커 9명을 9일 새벽 소환, 조사한데 이어 崔변호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송관련서류 수임사건내용 등을 근거로 이들의 위법사실에 대해 철야조사했다.

2. 경향신문(1993. 4. 10.자)

(1) 제목

구조적 非理 司正 본격화

전국 각계각층 대상 관련자 잇단 內査·소환 辯護士 2명 오늘 拘束

검찰 혐의확인 브로커에 돈주고 受任

의사·변호사 31명은 세무조사도

(2) 기사내용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파문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회 각계층의 구조적 비리 등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활동이 시작됐다.(중략)

서울지검 특수2부(金□□ 부장검사)는 이날 사건수임과 관련,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비리가 드러난 서울변호사회 소속 崔○○(36·사시 26회)·朴○ 변호사(42·사시 24회) 등 2명을 소환해 철야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10일 중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이들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따라 이날 오후 자진 출두, 소송관계서류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소환된 사건브로커 9명의 진술과 관계서류 등을 정밀 검토한 것을 토대로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중략)

검찰은 李□□ 씨(31)등 사건 브로커 9명 중 죄질이 무거운 4~5명에 대해서도 구

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崔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건 브로커 7~8명을 고용해 일선병원과 경찰서 등에 상주시키면서 사건수임을 알선토록 한 대가로 건당 수입료 20~30%씩을 지급한 혐의로 받고 있다.(후략)

3. 중앙일보(1993. 4. 9.자)

(1) 제목

검찰, 辯護士비리 수사

사건브로커 7명 連行...결탁여부 조사

(2) 기사내용

사건 브로커와 결탁, 사건을 수임한 뒤 커미션을 제공하고 과다한 수입료를 받는 등 변호사비리에 대해 검찰이 일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2부(金 부장검사)는 9일 **李 씨**(31) 등 사건 브로커 7명을 연행, 변호사와의 결탁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들을 고용해 사건을 맡아온 혐의가 짙은 C모, P모 변호사 등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기로 했다.(중략)

C변호사는 서울 K경찰서를 담당하는 브로커를 두고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 브로커와 담당경찰관들에게 커미션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李씨** 등은 변호사회에 사무원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으로 행세하며 사건을 알선한 뒤 변호사로부터 수입료의 20~30%인 수백만~수천만원씩을 받아온 혐의다.(후략)

4. 서울신문(1993. 4. 10.자)

(1) 제목

非理변호사 2명 오늘 令狀

검찰 경찰·브로커 통해 受任 커미션

거액 소개비 챙긴 9명도 연행, 철야조사

(2) 기사내용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 기생하고 있는 사건 브로커와 이들과 결탁해 사건을 수임해 온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일제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사건청탁과 과다한 수입료 등으로 지탄을 받아온 법조계의 부정·비리를 사회정화차원에서 뿌리뽑

기 위한 것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金 [] 부장검사)는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朴○ 변호사(42·사시 24회) 소속 崔○○(36·사시 26회) 등 2명을 불러 밤샘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사건 브로커들을 고용, 사건을 수임한 뒤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2억원과 5천여 만원을 브로커들에게 건네준 사실을 밝혀내고 빠르면 10일 중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브로커들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돈이 건네진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중략)

최변호사는 지난 91년 10월부터 강남경찰서 등 서울시내 일선경찰서 경찰관 20여 명과 李모 씨 등 브로커로부터 형사사건 1백여 건을 알선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수입료의 20% 모두 5천여 만원을 건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崔·朴변호사에게 사건을 유치해주고 건당 수십만~수천만원까지 챙긴 李 [] 씨(31) 등 사건 브로커 9명을 연행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모두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이들 9명 중 7명은 최변호사가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사건브로커로 고용했고 2명은 박변호사가 고용했다.

5. 한국일보

가. 1993. 4. 9.자

(1) 제목

非理 변호사 2명 수사

검찰 사건 브로커 7명 연행조사

(2) 기사내용

서울지검 특수2부(金 [] 부장검사)는 9일 미등록 브로커를 고용, 사건을 수임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온 변호사들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상오 변호사 사무실에 고용돼 사건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李 [] 씨(31) 등 법조주변 사건 브로커 7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고용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박모, 최모 씨 등 변호사들도 금명소환, 사건수임 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에 등록되지 않은 브로커를 사무원으로 고용 법원·검찰주변에서 민·형사사건 수임을 알선한 뒤 건당 수입료의 20~30%씩을 나눠 갖는 등 비리를 저질러왔다는 것이다.

검찰조사 결과 李씨 등 전문 브로커들은 지금까지 수십건의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

선해주고 수천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나. 1993. 4. 10.자

(1) 제목

변호사 非理 수사착수

검찰 브로커 고용 2명 오늘 영장

(2) 기사내용

서울지검 특수2부(金 [] 부장검사)는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崔○○(36), 朴 ○(42) 변호사가 사건브로커들을 고용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 등을 잡고 이들을 소환,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변호사 등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李 [] 씨 (31) 등 브로커 9명을 이날 상오 소환, 알선한 소송사건 내역, 수수료 규모 등을 조사 했다.(중략)

검찰은 두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받은 대가로 금품을 건네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브로커 4~5명과 함께 10일 중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중략)

또 최변호사는 지난 9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K경찰서 등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20여 명과 李모 씨 등 브로커들로부터 형사사건 1백여 건을 알선받고 사례비조로 건당 수임료의 20%를 지급 모두 5천여 만원을 건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후략)

6. 국민일보(1993. 4. 9.자)

(1) 제목

변호사 非理 일제수사

검찰 2명 곧 소환키로...브로커 7명 連行조사

변호사 12명 · 醫師 19명 세무조사 國稅廳

(2) 기사내용

대한변협이 변호사회에 대한 자체정화작업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소송수행과 관련 사건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결탁해 온 변호사들에 대한 본격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9일 소송사건을 알선해주고 변호사들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 李 [] 씨(31) 등 7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이들 브로커와 결탁, 사건을 수임받은 혐의로 변호사 C씨와 H씨 등 2명을 금명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받은 대가로 돈을 건네 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브로커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정식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변호사 사무실 종사원으로 일하면서 소송사건을 알선해 준 대가로 건당 수임료의 20~30%를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국민들의 비난과 함께 브로커들이 알선해 준 대가로 변호사들에게서 수십만~수천만원까지 받는 등 폐해가 심해 일제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2심 判 決 文

사 건 : 96나784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이 (李)

부산

송달장소, 서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대표이사 이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변론종결 : 1996. 7. 24.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5. 12. 22. 선고, 94가합17753 판결

주 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4.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5,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8. 5.경부터 소외 최□ 변호사의 사무원으로 근무해 왔다.

(2)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1993. 4. 초경부터 변호사들의 과다수임료 수수, 사건 소개인에 대한 소개비 지급 등의 비리에 관하여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특수2부 부장검사이던 소외 김□은 같은 달 9. 10:00경 서울지방검찰청 1층의 기자실에 내려와 변호사들이 사건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입한 비리혐의를 조사 중에 있다. 새벽에 10여 명의 변호사사무실 직원을 데려와 브로커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고, 기자들이 위 발표만으로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기사작성을 하기 어려우니 소환된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자 위 김□은 담당검사인 소외 김□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이름과 나이를 확인하여 주었다.

(3) 이에 각 신문사 기자들은 위 김□의 구두발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0. 피고 발행의 신문에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최□, 박□ 변호사의 혐의사실과 함께 원고의 혐의사실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4) 이후 위 김□은 같은 달 22. 위 최□ 변호사를 '1991. 8. 10.경부터 1993. 4. 1.까지 도합 61회에 걸쳐 서울시내 각 경찰서 소속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그 알선자들에게 합계금 44,500,000원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 금품을 받고 사건수임을 알선하는 자들로부터 사건수임을 알선받았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을 밝힐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사건에 대한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를 하였을 뿐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나. 일반적으로 신문보도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보도내용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족하고, 그 적시되는 사실이 반드시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표현행위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표현행위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행위가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은 마치 원고가 변호사로부터 알선료로 건당 수십~수천만원씩을 받고 사건의뢰인을 소개시켜 주는 브로커로서 변호사법위반의 범죄행위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란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기사가 신문에 게재됨으로써 원고는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명예를 훼손당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기사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신문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그 기사가 이 사건과 같이 검찰 등 공공기관의 발표를 인용 내지 보도하는 형식인 경우 진실성의 판단대상을 발표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 내용되는 사실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사실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발표를 그대로 기사화한 경우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 사실탐지능력의 한계,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 취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뒷받침 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당국의 발표를 오해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거나, 과장 또는 각색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부가하여 보도를 한 경우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의 알선수수료 지급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사실을 밝힐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기사내용은 진실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 소속의 기자가 위 김 []으로부터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가 변호사들의 브로커 고용 혐의와 원고를 포함한 그 직원들의 브로커 역할 혐의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구두발표를 토대로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면서 발표와는 달리 원고를 브로커라고 적시하는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이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듯한 보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발표범위를 초과하여 과장 또는 단정적인 기사를 보도한 점에서 피고가 수사기관의 발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피고가 위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우, 게재정도 및 명예훼손행위 이후의 사정 등이 사건 변론의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이를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1993. 4.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 12.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9. 11.

재판장 판사 송 기 홍
 판사 최 상 열
 판사 홍 일 표

서울신문(1993. 4. 10.자) 기사

(1) 제목

非理변호사 2명 오늘 令狀

검찰 경찰·브로커 통해 受任... 커미션

거액 소개비 챙긴 9명도 연행, 철야조사

(2) 기사내용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 기생하고 있는 사건 브로커와 이들과 결탁해 사건을 수임해 온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일제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사건청탁과 과다한 수임료 등으로 지탄을 받아온 법조계의 부정·비리를 사회정화차원에서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金 [] 부장검사)는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朴 [] 변호사(42·사시 24회),崔 [] 변호사(36·사시 26회) 등 2명을 불러 밤샘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사건 브로커들을 고용, 사건을 수임한 뒤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2억원과 5천여 만원을 브로커들에게 건네준 사실을 밝혀내고 빠르면 10일 중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브로커들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돈이 건네진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중략)

최변호사는 지난 91년 10월부터 강남경찰서 등 서울시내 일선경찰서 경찰관 20여명과李明 씨 등 브로커로부터 형사사건 1백여 건을 알선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수임료의 20% 모두 5천여 만원을 건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崔·朴변호사에게 사건을 유치해주고 건당 수십만~수천만원까지 챙긴李 [] 씨(31) 등 사건 브로커 9명을 연행,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모두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이들 9명 중 7명은 최변호사가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사건브로커로 고용했고 2명은 박변호사가 고용했다. □

교재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 사건 보도내용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에 근거해 위법성이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7. 4. 16.자 판결 (96가합23110)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1997년 4월 16일 하안누리 교육원 대표 전 [] 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피고의 이 사건 보도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고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도내용은 테이프나 교재판매업자들이 대학가의 신입생들을 상대로 하여 부정한 판매수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물품을 판매하는 실상을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부정판매에 대한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서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이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보내온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피해사례들은 모두 보호원에 접수된 구체적인 피해사례들을 근거로 한 것이고, 원고의 업체도 소비자보호원뿐 아니라 각종 민간소비자보호단체 등에 피해신고가 잦은 대표적 업체이었던 점, 원고의 업체에 대하여 각종 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모아보면 보도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는 1996년 3월 6일 <KBS 9시 뉴스>와 <뉴스라인>에서 “교재 사기판매 극성” 제하의 보도 중 원고가 운영하는 하안누리교육원이 교재 사기판매를 하는 대표적인 업체 중 하나인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1996년 3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피신청인이 해당기사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집계한 자료에 근거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소비자보호원 집계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96서울중재75)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동일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반론보도를 방송하라고 판결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년 10월 19일 판결 96카합1231)

判 決 文

사 건 : 96가합23110 손해배상(기)

원 고 : 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경수근, 김정은

변론종결 : 1997. 4. 2.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3,442,079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케이.비.에스. 제1텔레비전 '케이.비.에스. 9시 뉴스' 및 '뉴스라인'의 각 첫머리에서 각 뉴스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 화면에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각 화면 아래부분에는 두 줄로 "하얀누리교육원 교재 사기판매 한 적 없다"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뉴스보도와 같은 크기로) 각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정정보도문을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각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문 낭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각 위 기간만료의 다음날부터 각 이행완료시까지 각 매일 금 2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피고의 언론보도 및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가. 언론보도 내용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하안누리교육원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을 운영하고 일반서적을 출판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공사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피고 공사는 1996. 3. 6. 자사 방송채널인 KBS 제1텔레비전의 'KBS 9시 뉴스'와 '뉴스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교재 사기판매 극성"이라는 제목하에 별지 방송내용 기재와 같은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내용이라 한다)를 하면서 그러한 교재판매영업을 하는 업체 중의 하나로 하안누리교육원을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새학기 모든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카세트 테이프와 교재 등을 강제로 사게 하는 사기판매가 대학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중략) 반품을 하고도 돈을 요구하구요, 교재뿐만 아니라 다니지도 않은 학원비 40만원 정도까지 요구해서 황당했습니다"라는 부분에서는 대학가에서 신입생들을 상대로 하여 일어나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와 교재 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테이프와 교재 판매원들의 전형적인 판매수법을 예시한 뒤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보여주었고,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교재 판매업체는 하안누리교육원과 한국교육평가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태성문화공사 등 23개 업체입니다.(중략) 심적으로 불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부분은 원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앞에서 본 부정당한 판매업자의 하나로 하안누리교육원을 들면서 위 교육원에서 보낸 위 통보서를 소개하였고, "흔히들 전화로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구하게 되는데(중략) 사기 판매업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약해 새학기가 되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서는 피해자들의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위와 같은 판매업자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는 바, 위 보도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 공사는 원고가 경영하는 하안누리교육원이 대학가 신입생들을 상대로 테이프와 교재를 사기 판매하고 구매자가 위 물건을 반품하여도 독촉장을 보내는 등 부정당한 판매업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말미암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보도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하안누리교육원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었

을 뿐 아니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 공사는 재산상손해로 금 43,442,079원, 위자료로 금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함과 아울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정정보도문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도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송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하며,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주주의를 유지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때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할 경우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이러한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보도내용은 테이프나 교재판 매업자들이 대학가의 신입생들을 상대로 하여 부정한 판매수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물품을 판매하는 실상을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부정판매에 대한 일반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서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송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피고 공사가 이 사건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점에 대하여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들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5,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1 내지 30호증, 을 제32호증의 1 내지 27, 을 제33호증의 1 내지 105, 을 제34호증의 1 내지 23, 을 제35호증의 1 내지 6, 을 제36호증의 1 내지

5, 을 제37호증의 1, 2, 을 제42호증, 을 제45, 46,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오□□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6 내지 8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재정경제원 산하 소비자보호단체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96. 3. 5. 피고 공사에게 “교재판매 관련 대학신입생 피해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모사전송기로 보내왔고, 피고 공사 보도본부 소속으로 소비자 담당기자인 소외 이□□은 위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담당자의 인터뷰를 곁들여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제작하였다.

(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학 및 자격증 교재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집이나 직장, 학교 등을 방문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판매원의 일방적인 권유 및 허위과장 선전에 의해 충동구매 후 해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특히 대학 입학시기에 사회적응력이 미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1993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대학 신입생 관련 사례 216건 중 44%에 달하는 95건이 3월 중 발생되었다)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어학 및 각종 자격증교재 판매관련 피해실태 및 피해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교재판매의 유도 및 대학 신입생과 관련된 피해구제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어학교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995년의 경우 1993년에 비하여 126%가 증가하였고, 자격증교재의 경우 233%가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보호원의 위와 같은 피해예방을 위한 보도자료의 제작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표적인 피해사례 8가지를 피해자와 해당업체명을 표시하여 유형에 따라 5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유형으로는 ① 선배라며 접근하여 서클회원 또는 스터디그룹 가입신청서를 쓰게 한 후 교재와 대금 청구서를 집으로 우송하는 경우, ② 자격증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준다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교재와 지로용지가 집으로 배달되어 즉시 우편으로 부쳤으나 반송된 경우, ③ 강의를 해준다고 하여 회원에 가입하였으나 강의는 해주지 않고 교재만 우송해와 취소를 요구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 ④ 설문조사를 해달라 하여 응해주었는데 교재와 대금청구서가 배달된 경우, ⑤ 공공기관에서 나왔다고 하여 신뢰감을 준 뒤 신청서를 받거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든지 회원수가 한정되었다든지 하여 현혹시키고 서둘러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충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원고의 하안누리교육원을 위 ① 유형의 사례로 들고 있으며, 이러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판매의 문제점으로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인 점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및 행사방법에 대한 규정 등 계약체결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점을 들고, 이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교재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상담사례가 모두 118건 접수되었는데 그 중 원고 업체에 대한 건수가 가장 많아 전체의 37.3%에 달하는 44건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원고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신고는 한국소비자연맹에 20건,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5건, 한국부인회에 5건, 와이. 더블유. 씨. 에이에 2건 등이 접수되었다.

(마) 위와 같이 각 기관이나 단체에 접수된 원고 업체에 대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 업체의 영업사원들은 신학기에 신입생들을 상대로 강의실이나 교정에서 F.G.S.(Fellowship Group Study)라는 대학연합회와 동아리의 선배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위 동아리의 새내기들을 모집한다고 현혹하여 사회경험이 일천할 뿐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들떠 있고 동아리 활동에 호기심이 많은 신입생들로부터 위 동아리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아낸 뒤 금 360,000원이나 하는 영어교재와 카세트테이프를 집으로 보내 그 대금지급을 독촉하고 신입생들이나 그들의 보호자들이 위와 같은 허위설명을 따지면서 또는 계약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교재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면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반품된 물품의 수취를 거절하면서 그 전액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장, 독촉장, 호소문 등의 문서를 계속하여 보내고, 심지어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 그런데 위 F.G.S.란 원고가 경영하는 교육원의 영어회화교육 프로그램 명칭으로 대학생들의 모임인 동아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인데도 원고는 위와 같은 차이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마치 동아리 모임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하는 양 회원가입 신청서를 배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형식으로 학원수강생을 모집하였고 회비 명목으로 교재비를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공사가 이 사건 보도내용을 방송하기 이전 3년 동안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어학교재나 자격증교재의 부당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어학교재의 경우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들인 대학 신입생이었던 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보내온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피해사

례들은 모두 위 보호원에 접수된 구체적 피해사례들을 근거로 한 것이고, 원고의 업체도 위 보호원뿐 아니라 각종 민간소비자보호단체 등에 피해신고가 잦은 대표적 업체이었던 점, 원고의 업체에 대하여 각종 단체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모아보면 원고의 업체가 자신의 어학테이프나 교재를 팔면서 이를 영어회화동아리의 회원모집으로 오인시키거나 그 구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대학 신입생들로 하여금 위 제품에 대한 충분한 판단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이 충동적으로 이를 구매하도록 해놓고 위 제품을 받은 신입생들이 위와 같은 계약과정의 흠이나 제품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을 반품하여도 이를 반송한 채 본인이나 부모들에게 앞에서 본 문서들을 계속하여 보내어 물건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보도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보도내용에 나오는 '사기', '강제' 등의 표현은 다소 과장된 것이긴 하나 이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계약과정에서의 기망적 요소와 물건을 반품한 후에도 집요하게 대금청구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표현을 가리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도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보도내용이 원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것도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16.

재판장 판사 박 일 환
 판사 강 한 승
 판사 고 재 민

보도내용

◎ 류 앵커 :

새학기 모든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카세트 테이프와 교재 등을 강제로 사게 하는

사기판매가 대학가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기 판매업자들은 피해자들이 교재 등을 반품하는 경우에 법적처리 신청 예정통지서라고 하는 엉터리 독촉장까지 학부모들에게 보내서 위협하고 또 대금을 받아먹는 수법까지 쓰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 [] 기자 :

(대학 캠퍼스를 비추면서) 대학 신입생을 상대로 하는 사기판매원들은 날로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판매인들은 학교선배 등을 사칭하고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가입신청서를 받아 낸 뒤 교재와 대금통지서를 집으로 보내 3,40만원 하는 교재를 강제로 사게 합니다.

또 자격증 안내문을 보내준다거나 영어강의를 해준다고 속여 가입신청서를 받아 낸 다음 이것을 마치 계약서처럼 이용해 교재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설문서를 주는 장면과 회원가입 및 교재신청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비취줌)

특히 설문조사를 한다고 유인해 가입신청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피해 여학생 :

(얼굴을 가리면서) 반품을 하고도 돈을 요구하구요, 교재뿐만 아니라 다니지도 않은 학원비 40만원 정도까지 요구해서 황당했습니다.

◎ 이 [] 기자 :

(소비자보호원에서 상대방이 읽고 문서 작성하는 장면과 피해구제카드를 비취주면서)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교재 판매업체는 하얀누리교육원과 한국교육평가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대성문화공사 등 23개 업체입니다.

(하얀누리교육원이 보냈다는 법적처리 적힌 편지봉투를 비취주고 법적처리신청예정 통보서를 자세히 비취줌) 특히 이들 업체들은 피해자들이 교재 등을 반품하는 경우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라는 엉터리 독촉장으로 학부모들을 위협해 대금을 받아 내기도 합니다.

◎ 피해자 학부모 :

(얼굴이 보이지 않은 자세로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를 보면서) 심적으로 불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많이 걱정을 했죠.

◎ 박 [] (소비원 피해구제국)

(내용증명서를 손으로 들고 비취주면서) 흔히들 전화로 사업자한테 해약을 요구하

게 되는데, 전화로 하면 객관적 근거가 안 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약을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 이 기자

(대학 캠퍼스와 하얀누리교육원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사기판매는 지난 3년 전부터 급속히 늘기 시작했으나 사기 판매업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약해 새학기가 되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 입니다.

정정보도문

본 방송 1996년 3월 6일 「KBS 9시뉴스」 및 「KBS 뉴스라인」에서 방영한 “교재사기판매극성”이라는 보도 중 하얀누리교육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하얀누리교육원은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영어회화 교재 등을 강제로 사게 하거나 교재 판매와 관련하여 사기판매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하얀누리교육원은 학교선배라고 사칭하여 대학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거나 그들로부터 회원가입신청서를 받아 낸 적이 없으며 그들에게 자격증 안내문이나 영어강의 가입신청서를 교부하거나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하얀누리교육원은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거나 설문지를 받은 일이 없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습니다.

하얀누리교육원은 교재구입자가 법정기한 내에 교재를 반품해 올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약정된 손료 이외의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별도의 학원비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얀누리교육원은 교재구입자가 법정 반품기간이 지난 뒤에도 교재를 반품할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하였으며 교재 구입자가 반품을 하였는데도 하얀누리교육원이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없고 또 교재 구입자가 법정 반품기간이 지난 뒤에도 교재를 반품하지도 않으면서 교재대금납부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나타내거나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차에 걸쳐 안내문과 호소문을 보낸 뒤 그때까지도 교재를 반품하지도 않고 교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구입자에 대하여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입장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고발성 아이টে
대해 자유토론하는 이 건 프로그램의 특성상,
방송사는 원고회사제품의 효능을 왜곡설명한
출연자를 제지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1.자 판결 (96가합12727)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윤병각 부장판사)는 1997년 8월 1일 ‘엠씨스퀘어’라는 뇌과학습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양합동과 이 상품사용을 계기로 광고모델로 출연한 강□□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사건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1996년 5월 21일 한국방송공사는 KBS-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의 “뇌과학습기 과연 효과있나” 편에서 뇌과학습기의 효능과 관련한 문제를 방송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대양합동은 문제의 방송이 원고회사의 뇌과학습기 제품인 ‘엠씨스퀘어’ 활용효과에 관한 실험연구결과, 아무런 학업효능 증진효과가 없고 상품광고도 허위, 과장광고이며, 이 상품 광고모델인 강□□씨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해 상품의 효능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방송을 했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96서울중재132)했으나 중재불성립되었다.

이에 원고인 이 상품 광고모델 강□□씨는 위 프로그램의 인터뷰 요청 거절을 사회자가 반복하여 언급하고 자신이 출연한 광고를 방영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제조회사인 대양합동과 함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고발성 아이টে를 다루면서 그에 관한 사실을 직접 보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해나 의견 내지 입장이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출연시켜 자유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또한 프로그램 사회자가 원고들의 출연거절 사실을 반복하여 언급한 것만으로 원고회사 제품의 효능 없음과

이를 은폐하려는 인상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상품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위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 강 []의 주장과 관련, 프로그램 사회자가 뇌파학습기의 효능설명에 대해 나타낸 아쉬움으로 광고출연자의 인터뷰 거절 사실을 언급한 것이고 원고회사의 광고에 다른 광고출연자가 더 있었으며 사회자가 광고출연자의 인터뷰 거절 사실을 언급하면서 출연자가 원고임을 특정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도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96가합12727 손해배상(기)

원 고: 1. 주식회사 대양합동(大洋合同)

서울 []

대표이사 이준욱

2. 강 []

3. 이 []

원고 2, 3의 주소 서울 []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운길, 김대회, 이춘원

피 고: 1. 한국방송공사

서울 []

대표자 사장 홍두표

2. 손 [](孫 [])

서울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변론종결: 1997. 6.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대양합동에게 금 100,000,000원, 원

고 강□, 이□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5.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별지 기재 내용을 케이비에스(KBS) 제2텔레비전의 09:00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앞 부분에 제목은 24급 고덕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의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1회 방송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 안□의 증언 및 당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주식회사 대양합동은 1990년경부터 엠씨스퀘어라는 뇌파학습기를 제조하여 판매하여 오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 이□은 1995. 5.경 위 뇌파학습기를 구입하여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의 딸인 원고 강□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원고회사는 원고 강□가 1996학년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 입학시험에 합격한 것을 계기로, 원고 이□, 강□에 대하여 위 뇌파학습기의 상품광고에 출연할 것을 교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1996. 5. 15.자 동아일보 등에 게재된 '고3은 누구나 걱정 50분, 공부 10분 그래요. 이것을 극복해야죠'라는 제목의 엠씨스퀘어 상품광고에 출연케 하였다.

나. 피고 한국방송공사가 운영하는 케이비에스(KBS) 제2텔레비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생활정보 및 고발성 아이템을 다루는 프로그램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방송하여 오던 중, 그 동안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뇌파학습기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받은 적도 있고 또 뇌파학습기를 사용한 학생의 성적이 3,381등에서 4등까지 올랐다는 등의 뇌파학습기 광고 내용이 관심을 끌게 됨에 따라 1996. 5. 14. 기획회의에서 그로부터 1주일 후인 같은 달 21.에 뇌파학습기가 어떤 기기이며 그 효능이 어떠한지에 관한 문제를 위 프로그램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다. 그리하여 위 프로그램의 담당 프로듀서인 피고 손□은 같은 달 15. 및 같은 달 16. 뇌파학습기의 최대 시장점유자인 원고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고 출연해 줄 것을 교섭하였으나 원고회사로부터 엠씨스퀘어에 관한 논문 등 자료만을 제공받았을 뿐 그 요청이 거절당하였고, 위 프로그램의 구성작가인 소외 안□는 같은 달 18. 및 같은 달 20. 원고회사의 위 상품광고에 출연한 원고 이□,

강 []에게 위 프로그램에 출연해 줄 것을 교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였다.

라. 피고공사는 같은 달 21. 09:05경부터 10:00경까지 위 프로그램의 '뇌파학습기 과연 효과 있나' 편을 방송함에 있어, 이 프로그램의 광고 시작 전 도입부에 원고 이 [], 강 []가 출연한 원고회사의 신문광고를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채 클로즈업 하여 방영하였고, 이어 위 프로그램의 사회자인 소외 왕 []은 09:05경 위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출연진을 소개함에 있어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뇌파학습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 두 분이 나오셨구요……. 뇌파학습기를 판매하고 있는 엠씨스퀘어측은 저희가 세 차례나 나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시다만 거절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구요"라고 말한 다음, 40분쯤 지난 후 다시 "오늘 두 군데 업체에서 나와 주셨고, 엠씨스퀘어측은 저희가 세 차례 좀 나와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와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위 프로그램의 출연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사무총장인 소외 김 []은 위 프로그램의 또 다른 사회자인 소외 이 []로부터 어느 유명대학에서 행한 엠씨스퀘어의 학습시스템의 활용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소에서 위 학습시스템이 학업능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줄 것을 부탁받고서, 첫 번째 했던 실험내용에 대하여 설명함에 있어 "…… 그 결과를 보면 단지 암기하는데 일일평가에서만 효과가 있었고 그 외의 문장을 이해한다든지 문법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총괄평가하거나 이런데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학습 동기 증진에도 효과가 없었고 학습불안 감소에도 효과가 없었다 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라고 말하고, 또한 두 번째 했던 실험내용을 피고공사가 작성하여 준 차트를 이용하여 설명함에 있어 "여기에서 1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뭐냐하면 이것을 사용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일일평가에서 향상된 경우가 5명, 떨어진 경우가 3명, 포기자가 2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하느냐요. 효과가 있었다는 학생들을 보니까 공부를 원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던 사람은 효과가 있었고, 목표도 뚜렷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떨어지거나 포기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를 하고 결과가 나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아지고, 그 다음에…… 글썄, 그것은 당연한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을 사용하면은 학습이 올라가는 것처럼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조 실험결과도 보면 이것이 학습동기가 있고 목표가 있던 학생은 그것에 비례해서 향상이 됐다는 것이고 그외에는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이 꼭 그렇게"라고 말하고, 또한 위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마치 이것을 사용하면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유인광고를 하는데 그런 광고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광고를 했던 학생이 나와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오질 않아서 그 광고를 가지고 잘못 이해를 하고, 또 이것만 사용하면 그런 학교에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는 것, 학생들이 원래 공부를 했다는 원래 공부를 잘했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학부모들이 유인광고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고"라고 말하자, 이에 이어서 위 이 []는 "네, 참고로 광고에 등장했던 학생과 학부모께 저희 제작진이 출연섭외를 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거절하였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마. 이 사건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고발성 아이템을 다루면서 업체측 및 소비자측 그리고 전문가, 정부당국자 등 이해나 의견 내지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여러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동수로 출연시켜 자유토론형식으로 진행되어 그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들에게 맡기는 형식으로 제작 방송되어 왔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방송사 내지 그 프로듀서로서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규범윤리로서 의무가 있고 또한 가능한 한 진실한 보도를 추구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보도로 말미암아 특정업체 또는 특정인이 그 명예나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파학습기의 효능이라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방송함에 있어, 출연교섭을 받은 원고회사가 사전에 피고공사측에 방대한 분량의 전문적인 내용이 담긴 관련자료를 전달하여 주면서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이를 방송할 것을 요청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위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과 1주일밖에 되지 않은 방송준비일정을 늦추지 않고 촉박한 방송일정에 따라 위 자료의 충분한 검토 없이 방송을 강행함으로써, 출연자인 위 김 []이 원고회사 제품 관련 논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아니한 채 위 김 []으로 하여금 위 논문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원고회사 제품의 효능에 관하여 왜곡된 설명을 하게 하고, 또한 위 자료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피고공사 소속 아나운서인 위 왕 [], 이 []로 하여금 위 김 []의 발언을 제지

내지 수정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한 원고회사와 원고 이 [] , 강 [] 의 출연거절 사실을 그 사유의 설명 없이 반복언급하게 함으로써 원고회사 제품이 아무런 학업효능 증진효과가 없고, 나아가 그 상품광고도 허위, 과장광고라는 인상과 원고회사와 원고 이 [] , 강 [] 가 이 점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과 아울러 또한 원고회사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그 손해배상 및 피고공사에게 위 김 [] 의 위 논문 설명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 방송을 해 줄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회사가 위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하여 그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에 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피고 공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과 같은 고발성 아이템을 다루면서 그에 관한 사실을 직접 보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해나 의견 내지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동수로 출연시켜 자유토론행식으로 진행되는 토론프로그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피고들이 위 김 [] 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논문에 관한 차트를 작성하여 제공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위 프로그램의 출연자인 위 김 [] 의 원고회사 제품 관련 논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거나 또 위 김 [] 으로 하여금 원고회사 제품의 효능에 관한 왜곡된 설명 내지 의견을 제지 내지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위 왕 [] 이 원고회사의 출연거절 사실을 반복하여 언급했다 하더라도 위 프로그램의 성격 및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점만으로는 원고회사 제품이 아무런 학업효능 증진효과가 없거나 그 상품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라는 인상을 주었다거나 또는 원고회사가 이점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다만 증인 이 []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위 피고공사의 출연요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엠스스퀘어의 일반적 원리 및 그 효능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프로그램의 제작기간이 너무 짧아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고 또 원고회사 혼자

는 출연할 수 있으나 다른 군소업체와 함께 출연하면 원고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함께는 출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요청을 거절하였고, 그 결과 위 프로그램에는 원고회사를 제외한 다른 2개의 뇌파학습기 판매업체와 위 업체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출연한 소외 신 [] 및 위 업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출연한 위 김 [] 등이 출연한 사실, 피고측은 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각 의견이나 입장이 다른 출연자들에게 말긴다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실, 피고측은 그 과정에서 뇌파학습기의 시장에서 그 점유율을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원고회사를 위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않는다면 가장 잘 알려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원고회사에게는 출연기회를 주지 않아 위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오해를 시청자들에게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원고회사의 출연거절 사실을 언급하였고 다만 원고회사 혼자서 출연할 수 있으나 다른 군소업체와 함께 출연하면 원고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함께는 출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여 그 거절이유는 밝히지 아니한 사실, 원고회사는 위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부터 그 제품에 관하여 “오를 듯 오를 듯 안오르던 성적이 전교 1등까지 오르더군요. 8개월만에 전교 202등에서 전교 1등으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1997. 3. 3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광고가 과장광고라는 이유로 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측은 원고회사가 제공한 위 자료들을 미리 모든 출연자에게 전달하였고 한편 위 김 []은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위 자료 중 위 논문의 결론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 인용하여 설명했으나, 엠씨스퀘어가 암기 부분에 있어서 학습능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한 사실,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1996. 8. 7.자 신문인터뷰에서 1996년 상반기에 전년도 판매량의 150%를 판매했다고 밝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성격과 그 진행과정 및 내용, 피고측의 원고회사에 대한 출연교섭 및 그에 대한 원고회사의 출연거절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다. 원고 이 [], 강 []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공사가 위 프로그램의 광고 시작 전 도입부에 원고 이 [], 강 []가 출연한 원

고회사 신문광고를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채 클로즈업하여 상영한 사실 및 위 김 [] 과 위 이 [] 가 뇌파학습기에 관한 광고에 출연한 학생과 학부모가 피고측의 출연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언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프로그램의 도입부에 방영된 신문광고의 내용 중에는 위 원고들의 사진이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화면은 광고전에 잠시 스쳐가는 형식으로 방영된 사실, 위 김 [] 과 위 이 [] 가 학생과 학부모의 출연거절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제의 광고가 원고회사의 것이고 또 그 광고출연자가 위 원고들이라는 점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위 김 [] 은 마치 뇌파학습기를 사용하기만 하면 학습능력이 제고된다는 취지의 광고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그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광고의 출연자가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뇌파 학습기의 정확한 효능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광고출연자의 출연거절 사실을 언급한 사실, 원고회사의 광고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출연한 경우가 위 원고들 이외에도 그 전에 1번 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 [] 과 위 이 [] 가 언급한 그 출연거절자가 원고들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출연거절 사실의 언급으로 인하여 그 광고출연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김 [] 과 위 이 [] 의 위와 같은 언급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1.

재판장 판사 윤 병 각

판사 이 정 렬

판사 김 태 의

별지 (정정보도문)

제목 : 1996년 5월 21일자 본 방송 중 뇌파학습기 『엠씨스퀘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본문 : 1996년 5월 21일 화요일 오전 본 방송시간에 뇌과학습기 『엠씨스퀘어』와 관련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그 방송내용 중 서울대 교육연구소가 시행한 엠씨스퀘어에 대한 1, 2차 연구결과를 설명하면서 학습에 대한 엠씨스퀘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교육연구소는 엠씨스퀘어에 대한 1, 2차 연구를 통해 엠씨스퀘어 학습시스템이 학습자와 학업효능성 예컨대 기억력이나 집중력 등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고, 이러한 효과는 엠씨스퀘어 학습시스템이 학습에 필요한 신체적 생리적 상태를 조성함으로써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

자매지간을 모녀지간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승낙없이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1997. 2. 26.자 판결 (96가합31227)
서울고등법원 1997. 9. 30.자 판결 (97나14240)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용웅 부장판사)는 1997년 9월 30일 손□(예명 윤□) 씨 등 3인이 세계일보와 자유기고가인 성□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고들에게 1심 판결액보다는 적은 모두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 내

용은 원고 손 [] 와 동생 손 [] 사이가 자매지간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고 그 소문에 근거가 있는 듯한 인상을 일반독자들에게 주도록 작성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승낙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입수한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손해배상판결이 유를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원고 손 [] 를 공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기사작성 당시에는 이미 영화계를 은퇴하여 프랑스에서 가정생활에 전념하고 있어 더 이상 공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를 공인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기사내용과 같이 타인의 눈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인은 프라이버시가 제한된다’는 이론을 적용할 경우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자사가 발행하는 월간지 <클라쎈> 1996년 5월호에 『윤 [] 소문의 20세 연하동생(?) 손 [] 수녀 방문 충격 인터뷰!! “지금 32세가 되는데 동생인가?” “동생이다...”』의 제목을 달고 원고 손 [] 씨와 20세 연하의 동생 손 [] (손 [] 수녀)이 자매지간이 아니라 딸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에 손 [] 와 그의 부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96서울중재117) 중재결과 중재불성립되자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클라쎈>의 편집부장과 편집기사를 피고로 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들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지방법원 1997. 3. 27.자 판결 96고단10785)

1심 判 決 文

사 건 : 96가합31227 손해배상(기)

원 고 : 1. 손 [] (孫 []), 예명 윤 []

2. 손 [] (孫 [])

3. 박 [] (朴 [])

원고들 주소 서울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 고 : 1. 주식회사 세계일보(世界日報)

서울 []

대표이사 황환채

2. 성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변론종결 : 1997. 2. 12.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손[]에게 금 50,000,000원, 원고 손[], 원고 박[]에게 각 금 25,0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6. 5. 1.부터 1997. 2. 26.까지는 연 5푼, 1997. 2. 2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손[]에게 금 300,000,000원, 원고 손[], 원고 박[]에게 각 금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 5.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2 내지 17, 19, 20, 25, 27, 28, 31, 35, 36, 39, 40, 44, 47, 51, 59, 62, 64, 66, 68, 6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 손[]는 원고 손[]와 원고 박[] 사이에서 출생한 딸로 한때 우리나라 영화계를 풍미한 영화배우였고,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도서잡지의 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언론사로 월간지 '클라쎄'를 발행하고 있으며, 피고 성[]은 1994.말경부터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세계일보와 클라쎄에 고정적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자유 기고가이다.

(2) 원고 손[](1914. 8. 9.생)와 원고 박[](1927. 5. 25.생), 슬하에 원고 손[](1944. 7. 30.생), 소외 손[](1947. 1. 19.생), 소외 손[](1950.1. 29.생), 소외 손[](1953. 3. 15.생), 소외 손[](1957. 1. 29.생), 소외 손[](1963. 11. 3.생) 등 3남 3녀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원고 손[]가 윤[]라는 예명으로 1966. 가을경부터 촬영이 시작되어 1967. 1. 1. 극장에 상영된 '청춘극장'이라

는 영화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딘 후부터 세간에 ‘윤 []’는 전남여고에 다닐 때 모극장 경영주의 아들과 연애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사실이 창피해서 일가족이 모두 서울로 올라왔으며 서울에서는 딸을 동생처럼 호적에 올린 후 처녀로 돌아가 직장에도 다니고 배우모집에도 응모했다’는 내용의 뜬소문이 돌아다니게 되었고 그와 같은 소문은 원고 손 []가 동생인 위 손 []과 나이 차이가 많고 원고 손 []로부터 소외 손 []까지는 모두 3년 터울인데도 위 손 []과 손 []과의 터울이 6년인 점을 근거로 상당한 설득력을 안은 채 돌아다니던 중 1967년 명랑지 5월호에는 ‘윤 []를 둘러싼 일곱 가지 소문과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소문이 처음으로 기사화되었고 다시 산업경제신문 문화부에 근무하던 소외 최 [] 기자가 1972년 4월 15일자 위 신문 문화면에 “정 []씨가 제작한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영화내용이 윤모 여배우의 사생활과 비슷하다고 해서 화제가 돼있다. 혼전에 얻은 아이를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여인의 고민을 그린 이 영화는 윤모 여배우의 애기와 너무도 흡사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윤 []의 사진과 함께 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이를 참지 못한 원고 손 [], 손 [], 박 []이 위 최 []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위 최 []이 구속된 일이 있었고, 위 수사과정에서도 원고 박 []이 위 손 []을 출산할 당시의 산부인과 의사이던 소외 이 []과 원고 박 []으로부터 나이와 건강 문제로 위 손 []을 유산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주교의 교리를 설명하여 주며 이를 반대하여 위 손 []이 출생하게 된 것이라는 소외 [] 신부 등의 진술에 의하여 위 손 []이 원고 손 [], 박 []의 딸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다.

(3) 위 손 []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서울로 이사하여 리라국민학교, 송의여중, 여의도고등학교를 각 졸업한 뒤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1982.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 그곳 소르본느 대학교 심리학과에 다니다가 신학에 관심이 많아 파리 카톨릭신학대학교 철학과, 신학과에 재입학하고 수학 중 1990년 아베이 노트담 수녀원에 피정을 가게 된 것을 계기로 베네딕트회에 입회할 것을 결심하여 같은 해 12. 25. 위 수녀원에서 예비수녀가 되는 입회식을 가지고 성모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의 이름을 따서 []라는 수녀명을 가진 채 수녀의 길을 걷게 되었다.

(4) 피고 성 []은 1996. 3.경 ‘클라쎬’의 편집기자로서 취재, 기고문 정리 및 편집실무를 담당하는 소외 전 []에게 전화로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베네딕트 봉쇄 수녀원에서 손 []이 수녀생활을 하고 있는데 취재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

였고 당시 기획회의에서 위 전 []가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자 '클라쎬'의 편집 부
 장으로서 위 잡지의 기획, 취재 및 편집업무를 총괄하던 소외 최 []은 이를 좋은 취
 재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취재지시를 내렸으며, 피고 성 []은 위 지시를 받고 위 손 []
 을 위 수녀원에 소개한 소외 김 [] 신부에게 그 수녀원에 있는 한국인 출신 []
 수녀를 만나서 수녀원생활에 대해 취재하겠다고 하면서 위 수녀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김 []의 소개로 1996. 4. 7. 부활절 저녁
 7:30경 수녀원에 도착하여 같은 달 9. 13:45경 위 장소를 떠날 때까지 위 손 []과
 는 1번, [] 수녀와는 4번 정도 만나 취재를 한 후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인
 편으로 위 전 []에게 보내어 왔고 위 전 []는 피고 성 []이 보내온 기사에 원고
 손 [], 위 손 []의 출생 및 원고 손 []의 영화계 데뷔과정 등을 스포츠 조선과 동
 아일보 등의 기사를 참조하여 별지 기사내용 기재 내용 중 '윤 [] 씨의 본명은 손 []
 []. 6남매 중의 장녀이고 아버지는 손 [] 씨... (중략) ...이 사건은 96년 2월에 터진
 성 [] 사건 때 성 []의 시아주버니 이 []이 5만 달러를 주고 유고 경찰을 매수해
 이루어졌다고 확인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삽입하는 외에 위 최 []은 표지에 나올 제
 목을 '본지 대특종 윤 [] 20세 연하 소문의 동생 손 [] 수녀 충격 인터뷰'로
 정하고, 위 전 []는 목차에 실을 제목으로 "본지 대특종 윤 [] 20세 연하 '소문의
 동생(?)' 손 [] 수녀 충격 극비 인터뷰!"라는 문구를 선택하는 한편 독자들의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도록 별지 기사내용 기재 및 제목을 정한 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1996년 5월호 클라쎬 잡지의 광고를 세계일보, 중앙일보 등에 게재하는 한편
 1996. 4. 하순경 88쪽에서 91쪽까지 별지 기사내용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내용
 이라 한다)를 게재하고 원고 손 []나 소외 손 []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89
 쪽 왼쪽 하단에 그 입수경위를 알 수 없는 원고 손 []와 소외 손 []이 나란히 서 있
 는 사진과 함께 '본명 손 []인 윤 [] 씨와 동생이라는 손 [] 소녀가 1993년
 함께 한 사진, 형부로 되어 있는 백 [] 씨도 이 수녀원에 자주 찾아와 수녀원 사람들
 과 면회객들은 그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설명을 단 클라쎬 5월호 약 30,000부를 발
 행하여 시중에 발매하였다.

(5) 위 잡지에 광고가 나간 뒤로 원고 손 []는 위 광고문안과 기사내용을 문제삼
 아 피고들에게 항의를 하였고, 피고 성 []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 정정기
 사를 작성하여 보여 주고 광고와 위 잡지의 발행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피고 성 []과 피고 회사의 위 최 [], 전 []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뒤에는 위 전 [] 등이 피고 성 []을 통하

여 위 원고에게 1996. 5. 27.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자신들이 추가취재를 하였는데 엄청난 사실들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말로 위 원고를 협박하여 위 형사고소 취하를 강요하였고 위 잡지가 발매된 뒤에 독자들로부터 원고들에게 ‘왜 손[]을 수녀원에 보냈느냐’, ‘무슨 사연이 있느냐’는 내용의 전화가 쇄도하였으며 다른 언론 매체들에서도 추가취재를 하고자 원고들을 접촉하려고 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소위 손[]을 친언니인 원고 손[]의 동생이 아니라 딸이라고 전제한 다음, 위 손[]이 이를 감추고자 봉쇄 수녀원에 들어가 맘에 내키지 않는 수녀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찾아간 피고 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그녀의 과거를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깊이 심어주고 있고, 원고 손[]와 위 손[]의 사진을 무단게재하여 원고들과 위 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권,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기사 중 어느 부분도 위 손[]이 원고 손[]의 딸이라는 전제하에 쓰여지지 않았는데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원고들이 너무 예민하게 위 기사에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원고 손[]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공인인 위 원고에 대한 언론의 자료수집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 기사의 게재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고 다룬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명예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상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프라이버시란 우리 헌법 제17조에 표현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권이란 자기만이 간직한 비밀을 공개당하거나 사생활에 간섭을 받아 정신적 타격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할 것인 바,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전자가 공동체의 외적 관계에 있어서 타인에 의한 평판이 침해된 것을 말하는데 반하여, 후자는 자기자신의 감정 및 스스로의 평가에 대한 침해를 말하는 것으로 일응 구별될 수 있으나 양자는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침해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양 개념에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언론이 기사를 게재하여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독자가 통상 그 기사를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내용,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배치, 기사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도 고려하여야 하며 비록 기사내용이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였다 하더라도 기사작성자나 편집자의 의도가 가미되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와 같이 오해

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 편집하는 행위도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점에 있어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손 []이 원고 손 []의 딸이 아니라 동생인 사실은 이미 1970년대 초반에 앞에서 살펴본 일련의 사건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 있고, 언론인들인 피고들로서는 어렵지 않게 위 손 []의 가족관계나 수녀원 입회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처음부터 봉쇄수녀원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수녀를 취재한다는 표면적인 동기 밑바닥에 위 손 []이 원고 손 []의 딸일 것이라는 풍문과 위 손 []이 외부와 차단된 봉쇄수녀원의 수녀로 생활하고 있다는 두 고리를 엮어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사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위 잡지의 표지 제목에 '윤 [] 20세 연하 소문의 동생 손 [] 수녀 충격 인터뷰'라고 써 위 손 []이 원고 손 []의 동생이라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을 암시하고 기사내용에도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 것임을 나타낸 뒤 목차면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다가 소문의 동생이라는 문구 다음에 괄호안에 의문 부호를 넣어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충격 극비 인터뷰'라고 '극비'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은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준 뒤 기사 본문 제목에도 "지금 32세가 되는데 동생인가?" "동생이다..."라고 적어 동생이다 라는 대답에 자신이 없거나 머뭇거렸다는 느낌을 주고, 기사 본문에서는 "조선대 영문과 1학년 21세 때에 청춘극장의 여주인공으로 영화계에 나왔는데 이 때가 1967년이다. 손수녀가 태어난 해는 1966년이다. 그녀가 영화계로 뛰어들 때는 손 수녀가 태어나고 난 다음해이다"(갑 제7호증의 1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손 []는 조선대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손 []이 1963년생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며칠전 이곳에 오기 위해 [] 수녀를 이곳에 소개한 신부님을 만났는데, 신부님 또한 개인적인 일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덜어줄 것을 당부하셔서 더 이상 물어 볼 수가 없었다", "이 [] 수녀의 침묵을 무엇으로 받아 들여야 할까. 함께 생활하는 또 다른 한국인 수녀 [] 또한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한다. 단지 '윤 [] 씨의 동생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지만 이 또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며, 5년 이상을 이곳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단 한번도 한국말로 그녀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없다'는 [] 수녀는 '그녀에게서 어떤 비밀스러움을 느낀 후부터 그녀를 위해 자신도 오히려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그녀와의 자리를 피하게 된다'고 말한다. [] 수녀의 말속에 수도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보는 듯해 마음이 숙연해진다."(피고 성 []이 위 김 []과 [] 수녀의 딸이라고 직접 또는 간접인용한 말들이 실제로 그들이 한 것인지 하였다면 그

내용이 같은지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7호증의 35의 기재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 수녀. 윤 [] 씨의 동생이기도, 흑 백 [] 씨의 처제이기도, 조카이기도, 소문은 그녀가… 과연 그녀는 왜 이 봉쇄 수도원에 있으며 굳이 우리를 피하는 것일까. 많은 의혹을 남긴다.”, “손 []. 그녀 자신이 이야기하는 윤 [] 씨, 즉 손 [] 씨의 동생이라면 한때 화려했던 영화배우의 동생이기 때문에 숨겨야 하는 것일까. 수녀가 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늘.”(갑 제7호증의 17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손 []은 피고 성 []이 수녀원 생활에 대하여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재를 하지 않고 수녀원의 수녀들의 머리와 속옷에 대해 물어보는 등 유치한 질문을 하면서 윤 []와 백 [] 씨를 아느냐고 하기에 더 이상 대답하거나 이야기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면회를 중단하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아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손 []와 위 손 []이 모녀 사이일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일단 이곳 수녀원에 들어오게 되면 일체의 외출이 금지된다…(중략)… 만약에 수도생활 중 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곳 안에 있는 병원시설로 고칠 수 없다는 진단 아래 외출증을 신청, 로마 교황의 허가 아래서만 바깥 병원에 나갈 수 있는, 바깥 세상과는 철저히 단절된 봉쇄 수녀원으로 이 모든 규칙들이 성베네딕도의 이름아래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갑 제7호증의 43의 기재에 의하면 [] 수녀 자신도 수 차례 외출을 하여 피고 성 []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수녀원에서 외부에 나가기 위하여 교황에게 외출허가를 받는 절차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깥 세상에 있는 가족들과도 편지 이외의 다른 형태로는 연락할 수 없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대 안에 교환 수녀를 통해 외부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을 수는 있지만 수녀 자신이 전화를 걸 수는 없다.”(갑 제7호증의 32의 기재에 의하면 수녀 자신도 필요한 경우 상급 수녀의 허락을 받고 전화를 걸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수도원의 특징이 있다면 이곳 수도원에 들어오고자 하는사람들에게 아무런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지 신청서에 본인의 사인만이 필요할 뿐이다.”(갑 제7호증의 32의 기재에 의하면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먼저 수도회로부터 입회허락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수도회 입회 지원자는 상당한 기간을 그 수도회와 관계를 맺으며 입회를 준비하게 되고 입회시에는 특히 가족사항을 중시하여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일 경우 수도회 입회허락이 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위 봉쇄수녀원이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곳으로 바깥 세상에서 불행한 과거를 지냈던 사람들의 도피처인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면회 시간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

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나갔다 올 사람처럼 면회실을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 수녀, 그녀의 말 속에서도 진정한 수도자의 길을 걷는 수녀다운 신앙의 깊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이 일을 당하고 나니 더욱더 과연 그녀가 진정한 자신이 스스로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진정한 신앙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라는 기사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손 []이 자신의 취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을 빌미잡아 감정적으로 대응한 인신공격적인 표현이라 할 것인 바, 위에서 든 기사내용을 통찰해보면 이 사건 기사내용은 원고 손 []와 위 손 [] 사이가 자매기간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고 그 소문에 근거가 있는 듯한 인상을 일반독자들에게 주도록 작성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는 전체적으로 원고 손 []와 위 손 []이 모녀 사이임을 암시하는 기사내용 중간에 위 두 사람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입수한 위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게재하고 그 밑에 ‘본명 손 []인 윤 [] 씨와 동생이라는 손 [] 수녀가 1993년에 함께 한 사진…’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 손 []와 위 손 []이 그 게재를 허락하지 않은 사진을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에 덧붙여 그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그 공표방법에 비추어 원고 손 []와 위 손 []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손 []는 1966년경부터 영화배우로 활동하여 왔으므로 공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위 기사 작성 당시에는 이미 영화계를 은퇴하여 프랑스에서 가정생활에 전념하고 있어 더 이상 공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위 원고를 공인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기사 내용과 같이 타인의 눈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인은 그 프라이버시가 제한된다는 이론을 적용할 경우 현저하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어서 원고 손 []가 공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성 []은 이 사건 기사내용과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클라쎬’지에 이를 게재하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사 및 광고를 발행, 배포한 불법행위자 겸 피고 성 []에게 기사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편집한 위 최 [], 전 []의 사용인으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위 ‘클라쎄’ 지가 배포되고 광고됨으로써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나이와 사회적 위치, 피고 회사의 규모와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일반인들에 대한 공신력, 피고들의 사실확인보도 의지의 결여, 위 기사의 내용과 크기, 위 기사의 게재 경위와 발행부수, 위 기사 게재 이후의 피고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 손 [] 에게는 금 50,000,000원, 원고 손 [], 박 [] 에게는 각 금 25,000,000원씩이 적정한 위자료 액수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손 [] 에게 금 50,000,000원, 원고 손 [], 박 [] 에게 각 금 25,0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위 ‘클라쎄’ 지의 배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1996. 5.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7.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2. 26.

재판장 판사 박 일 환
 판사 윤 강 열
 판사 고 재 민

기사내용

프랑스 성베네딕도 수녀원에 윤 [] 소문의 20세 연하 동생(?) 손 [] 수녀 방문 충격 인터뷰!!

“지금 32세가 되는데 동생인가?” “동생이다...”

1. 베일에 싸인 중세 봉쇄 수녀원에서의 3박 4일 생활 경험 최초 공개
2. 영화배우 윤 [] 동생이라는 손 [] 4번 면회 신청, 5분 면담 사생활 내용
3. 손 수녀의 항의로 수녀원에서 쫓겨날 뻔한 방문 그 이후

부활절 맞아 일반인에게 특별 공개된 중세식 베네딕도 봉쇄 수도원. 이곳에 한국인 수녀 두 명이 봉직하는데, 그들을 만나 외부의 시각과는 다른 수녀원 생활을 직접 보고 들은 상상 속의 생활을 최초로 공개한다.

또 6, 70년대 최고 톱 스타 윤 [] 씨의 소문 속의 동생(?) 손 [] 씨를 면회한 신상대화 내용 특종 공개.

“동생이 맞는가?”

당황하며 “그렇다...”

아르장땅의 베네딕도(분도) 수녀원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으로 6세기 말경 프랑스 서북쪽 노르망디 지방의 알므네슈에 창설되었다고 전해지는 봉쇄 수도원이다.

이 수녀원은 7백70년에 서거한 아베스 오베르틴 성녀에 대한 존경으로 그 유골을 보존하고 있고 성 베네딕도의 규율에 따라 생활하는 관상 수도원이며 모든 수도자들을 선출한 아베스를 그들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다.

이곳에 들어온 수도자들은 전세계 교회의 이름으로 하루 8번의 기도와 신성한 성무일과로 생활하며, 교회의 전통적 언어인 라틴어와 그레고리안 성가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평생을 하느님께 바치는 종신선언을 함으로써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곳이다.

하루에 8번 하는 기도는 관상 수도자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며 생계와 자급자족을 위 성체와 여러 종류의 사진, 상분, 아콘 그리고 수예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소와 양, 닭 등을 키우는 농장과 넓은 면적의 채소밭을 가꾸고 있다.

수도원과 성당 그리고 가족 친지 등 방문자들을 위한 객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모든 건물과 밭을 포함 8ha라는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베네딕도 성인의 규율에 따라 생활하는 이곳 수도자들의 생활은 지극히 단순하며 형제애로 가득찬 한 가족의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수녀들은 이곳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는 단절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정결, 가난, 순명, 항구성(부동 영속성 : 수도자 자신이 종신서원을 한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항구히 머무는 것)의 4가지 서원을 한다.

현재 53명의 수도자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약 1년 동안의 청원기와 2년의 노비스 생활(견습 수녀), 그후 3년을 위한 단순서원을 하며 마지막으로 종신선언(하느님의 종으로 평생을 바치는 맹세)을 한다. 이 기간까지 6년이 걸린다. 이 종신선언을 이곳 수녀들은 하느님과의 결혼이라고 말하며 그전의 기간을 하느님과의 약혼 기간이라고

말한다.

아베이 노틀담 수도원은 파리에서 기차로 2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노르망디 아르장땅에 위치하고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다. 1944년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침략으로 이 아르장땅 역시 곳곳에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 수도원 역시 붕괴되었다가 1958년 다시 재건되었다고 한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이 작은 마을의 끝부분에 위치한 이 아베이 노틀담 수도원이 이 마을의 유일한 명소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이 수도원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봉쇄 수도원이므로 이곳에 사는 마을 사람들도 이 수도원의 수녀들을 거의 볼 수 없다고 한다. 단지 높고 견고한 담의 성당 뒷쪽 어딘가에 수녀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뿐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 또한 이곳 수도원에서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 수녀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서 며칠 머물렀지만, 단지 객실을 관리하는 수녀와 면회가 허락되는 시간 면회실 안에서만 그 수녀를 봤을 뿐, 기도를 드리는 시간 성당 안에서조차 수녀들을 보기는 힘들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수녀들은 칸막이 안에서 성가를 불렀고 일반 신자나 면회를 온 가족들은 제단 앞쪽에서 수녀들의 노래 소리만으로 기도를 함께 했다.

일단 이곳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면 일체의 외출이 금지된다. 외국인의 경우 프랑스 체류를 위한 체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외출(이곳에 처음 들어온 한국 수녀의 경우 12년 동안 단 한번 체류증을 위해 외출을 했을 뿐이다) 외에 일체의 외출이 금지되어 있고, 만약에 수도생활 중 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곳 안에 있는 병원시설로 고칠 수 없다는 진단 아래 외출증을 신청, 로마 교황의 허가 아래 서만 바깥 병원에 나갈 수 있는, 바깥 세상과는 철저하게 단절된 봉쇄 수도원으로 이 모든 규칙들이 성베네딕도의 이름 아래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또한 이곳 수도원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용품들은 자급자족 혹은 배급형식을 통해 지급받는다(이곳에서 생활하는 수녀들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신발 그리고 속옷까지도 '우리들의 옷, 우리들의 신발'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바깥 세상에 있는 가족들과도 편지 이외의 다른 형태로는 연락할 수 없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대 안에 교환 수녀를 통해 외부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을 수는 있지만 수녀 자신이 전화를 걸 수는 없다.

수녀원에서 만난 사람들

백 씨도 자주 봤다고 해

이렇게 바깥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이 아베이 노틀담 수도원안에는 현재 53

명의 수녀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53명의 수도자 중 이 수도원이 창립된 후 처음으로 한국인 수녀가 들어왔다. 그때가 1984년, 이 수도원이 생긴지 1천 4백년이 지난 후였고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일이다. 이 수도원의 1천 4백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동양인 수녀가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1991년에 또 다른 한국인 수녀가 이곳에 들어옴으로 해서 53명의 수녀 중 한국인 수녀 2명이 이곳에서 수도생활을 하고 있다.

고향이 충청도 보은이라는 58년생 [] 수녀와 전라도 광주 출생이라는 63년생인 [] 노비스(견습 수녀) 두 사람이다.

파리에서 면회와 객실 예약을 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한 탓인지 도착하니 객실 수녀가 금방 우리를 알아봤다. 파리에서 아르장팡까지 하루에 두 차례밖에 없는 기차를 타고 도착하니 이미 이날의 면회 시간은 끝나 있었다. 객실과 복도를 겹쳐 있는 유리문으로 보이는 아르장팡의 밤은 한적한 탓일까 파리보다 더 어둡게 느껴진다.

하루의 모든 일과가 9시에 끝나고 소등과 함께 이미 잠자리에 들은 수녀들처럼 자리를 펴고 누웠으나 잠은 멀리 달아나 있고 숲속을 지나는 바람소리만 가슴에 와 닿는다.

도착한 다음날 아침 식사와 기도시간이 끝난 후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의 면회 시간을 이용해 면회 신청을 했으나 부활절 행사로 바쁜 탓인지 5분 정도 [] 수녀의 얼굴만 봤을 뿐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그리고 또 다음날 다시 면회 신청을 하고 배당받은 면회실에서 기다리니 쇠창살(사진) 맞은편 문이 열리면서 [] 수녀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두 번 있는 면회 시간을 이용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 수녀는 12년전 이곳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자신이 종신선언을 한 93년에 단 한번 한국에서 온 친언니와 몇 명의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신부님들을 통해 한국말로 이런저런 세상이야기를 나눈 것 이외에 이번 면회가 두 번째라 마냥 즐겁기만 해 보였다. 자신의 수도생활과 수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중 자신이 걸어가는 이 수도원의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곳 생활을 알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곳이야말로 하느님의 품안에서 사는 일이며 천국이라고 스스로없이 말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이 벌할 수 없다는 어린시절의 강박관념들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었고 지금은 죽음에 대해 조금도 두려움이 없으며, 하느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엘리자베스 수녀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깊은 신앙으로 하루내내 하느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신의 삶에 만족해 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꼭 영세를 받고 성당에 나가기를 바란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점심 식사 후 개인 자유시간에 다시 면회 신청을 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 수녀님도 같이 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따로 면회신청을 했다. 오후 면회 시간에 우리는 한국인 두 수녀를 다 만날 수 있었다.

인사를 나누고 이름을 물었다.

“언니” 윤 □ 씨와 20세 차이 나

조카로 아는 이도 있어

‘□’의 바깥 세상에서의 이름을 물었더니 ‘손 □’이라고 말했다. 손 □, □ 수녀. 20대 중반이라고 보기에든 힘든 아직 너무나 젊고, 고운 피부가 영화배우였던 윤 □ 씨를 닮은 □ 수녀는 63년생 33세라고 말한다. 이곳에 들어온지 5년. 아직 종신선언을 하지 않은 탓으로 머리에 쓴 가리개가 하얀색이다. 대부분의 수녀들이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냐고 물으니 대답이 없다. 수녀들은 세수하고 난 뒤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그 탓일까. 대부분의 수녀들은 피부가 맑고 투명하다.

영화배우였던 윤 □ 씨와의 관계를 물어보니 그저 말뚱말뚱 쳐다만 본다. ‘동생입니까’ 하고 다시 물어보니 그저 ‘예’라고 대답한다. ‘언니와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납니까’ 하고 다시 물었더니 대답이 없다. 당황스러워하는 느낌이다. 윤 □ 씨의 본명은 손 □. 6남매 중의 장녀이고 아버지는 손 □ 씨. 부산 태생으로 일본대 법학과를 나와 목장을 경영했었다. 어머니는 박 □ 씨이고 아버지와는 15년 나이 차이가 있었다.

그녀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부산에서 광주로 이사를 했기에 본적이 광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전남여고를 다녔다. 조선대 영문과 1학년 21세 때에 ‘청춘극장’의 여주인공으로 영화계에 나왔는데, 이때가 1967년이다. 손 수녀가 태어난 해는 1966년이다. 그녀가 영화계로 뛰어든 해는 손 수녀가 태어나고 난 다음해이다.

이때 그녀는 이미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 윤 □ 라는 예명은 공부 잘하던 친구의 성과 조용함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정희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었다.

이후 그녀는 승승장구했고 얼마 전에는 ‘만무방’으로 대중상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두 살 연하의 백 □ 씨와 결혼한 이후인 1977년 7월 29일에 고 이 □ 화백의 처 박 □ 씨의 뒷에 걸려 유고 자그레이브에서 납치될 뻔한 일이 있

었다고 전한다. 이 사건은 96년 2월에 터진 성 [] 사건 때 성 []의 시아주버니 이 []이 5만 달러를 주고 유고 경찰을 매수해 이루어졌다고 확인되었다.

며칠전 이곳에 오기 위해 [] 수녀를 이곳에 소개한 신부님을 만났는데, 신부님 또한 개인적인 일이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덮어줄 것을 당부하셔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이곳에 왜 왔습니까?”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대답한다. [] 수녀와는 달리 이곳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곳 생활이 낙원인 줄 알면 안된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닐 수도 있다. 잘못된 기사로 인해 이곳을 이상향의 낙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신자라 해도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칠 의사가 있는 사람만이 이곳에 와야 한다고 ‘대단한 각오가 아니라면 이곳 생활이 쉽지가 않다. 잘못해서 이곳을 오게하게끔 해서 안된다. 정확한 기사라면 몰라도 나가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라고 말하며 [] 수녀에게 동조를 구하지만 [] 수녀는 말이 없다. 개인의 생활이,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개인적인 사고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멀기만한 의식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이곳을 자원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 수녀는 ‘처음 한동안은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 갈등을 겪었지만 지금은 다들 이해해 주신다며 이 또한 하느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며 말한다. 그러나 [] 수녀의 경우는 ‘모든 가족들이 환영하고 좋아했다’ 고 말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자 어쨌든 ‘하느님의 종으로 평생 살게 되어서 기쁘다’ 고 말하며 입을 다문다.

한국사정을 잘 아는 손 수녀

원장 수녀 통해 면회 항의

[] 수녀. 다시 잘 보니 윤 [] 씨와는 별로 닮은 구석이 없어 보인다. 하얀 피부와 얼굴 윤곽이 조금 닮았을 뿐. 쌍꺼풀 없는 약간 작고 서늘한 눈매와 작은 콧방울, 얇은 입술이 조금 차가워 보이는 인상을 준다.

면회 시간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지 않았는데 그녀는 잠시 나갔다 올 사람처럼 면회실을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후 이틀에 걸쳐 여러 차례 면회 신청을 했지만 그녀를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

이곳 수도원에서 수녀들이 부르는 찬송들을 모아서 테이프와 CD로 제작되어 나온다. 이 일의 제작 혹은 판매에 백 [] 씨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탓인지 혹은 희귀성 때문인지 객실을 담당하는 할머니 수녀님은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만으로도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푸시며 자신도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백 [] 씨를 여러 차례 봤다' 면서 자랑삼아 이야기 하신다.

[] 수녀를 백 [] 씨의 조카로 알고 있는 이 수녀님은 '윤 [] 씨가 옛날 유명했던 영화배우였다' 고 말하니 '그럴 줄 알았다'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고 물었던 '척 보면 안다' 며 '예쁘다' 고 칭찬이 입이 마른다. 그녀는 아직도 곱다. '단아한 몸매와 늘 검소한 차림에 조금은 어두운 듯한, 그러나 차분한 이미지와 품위를 지닌 50대로 그녀의 조용한 품성이 그대로 배어나오는 듯하다.' 고 말하는 이 프랑스 부인은 1남 5녀의 자식을 두었는데, 두 딸이 수녀가 되어 이 수도원에서 생활하며 하나뿐인 아들은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 나머지 딸 셋과 그녀들의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딸들을 면회온 이 부인의 가족들은 우리가 도착한 날부터 같이 이곳에 머물며 식사 시간마다 함께 하게 되었던 두 수녀의 어머니였다.

가끔 이곳에서 백 [] 씨와 그의 아내를 만났다는 이 부인은 우리보다 더욱더 그들을 잘 알고 있는 듯 이야기 했고, [] 수녀를 백 [] 씨의 사촌 여동생으로 '오해' 하고 있었다. 이 수도원이 생긴 이후 1천 4백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한국 수녀가 2명이나 들어왔다. 당연히 이들의 출현은 이 수도원 안에서나 밖에서 화제가 될 만한 일이다. 이 봉쇄 수도원 안에서 생활하는 수녀들에게는 동양 사람을 처음 본 수녀가 많았을 것임은 물론이겠지만 [] 수녀의 경우 외모가 틀리다는 것만으로도 큰 화제였다고 말하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곳에서 생활하는 수녀들이 가족이나 친지들의 방문 중에 이들 이야기가 화제가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백 [] 씨를 아는 사람이라면 더욱 더 마리조제 수녀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도 남을 일.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높은 벽안 수녀들 사이에서도, 이 굳건한 침묵 밖의 세상에서도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 수도원의 특징이 있다면 이곳 수도원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지 신청서에 본인의 사인만이 필요할 뿐이다.

물론 1천 4백년만에 처음 들어온 한국 수녀의 경우 여권이 필수조건이었을 것이다. 종교인도 체류증은 신청해야만 하니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위해 평생을 바칠 만큼의 신앙심이 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 수녀의 침묵을 무엇으로 받아 들여야 할까. 함께 생활하는 또 다른 한국인 수녀 [] 또한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한다. 단지 ‘윤 [] 씨의 동생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지만 이 또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며, 5년 이상을 이곳에서 함께 생활했지만 단 한번도 한국말로 그녀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 수녀는 ‘그녀에게서 어떤 비밀스러움을 느낀 후부터 그녀를 위해 자신도 오히려 그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그녀와의 자리를 피하게 된다’고 말한다. [] 수녀의 말속에 수도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보는 듯해 마음이 숙연해진다.

[] 수녀. 윤 [] 씨의 동생이기도, 흑 백 [] 씨의 처제이기도, 조카이기도, 소문은 그녀가... 과연 그녀는 왜 이 봉쇄 수도원에 있으며 굳이 우리를 피하는 것일까. 많은 의혹을 남긴다.

손 []. 그녀 자신이 이야기하는 윤 [] 씨, 즉 손 [] 씨의 동생이라면 한때 화려했던 영화배우의 동생이기 때문에 숨겨야 하는 것일까. 수녀가 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늘.

[] 수녀를 만나고 객실로 돌아온 둘째날 원장 수녀로부터의 전갈을 받았다.

우리가 한국의 한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기자들이니 자신들의 이 수도원을 비방하려고 온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날 밤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 원장 수녀를 설득해야만 했다. 겨우 이해를 시킨 후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 ‘ [] 수녀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 그녀의 말속에서도 진정한 수도자의 길을 걷는 수녀다운 신앙의 깊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이 일을 당하고 나니 더욱더 과연 그녀가 진정 자신이 스스로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진정한 신앙에서의 삶을 원해서 이곳에 온 것일까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수도원 입구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드디어 네 부모와 형제를 떠나 내 품에 다다랐구나. 내가 너희에게 지상에서 원했던 모든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 주겠노라.’

2심 判 決 文

사 건 : 97나1424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1. 손 [], 예명 윤 []

2. 손

3. 박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대표이사 황환채

2. 성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변론종결: 1997. 8. 19.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2. 26. 선고 96가합3122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 손 에게 금 40,000,000원, 원고 손 , 같은 박 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5. 1.부터 1997. 9. 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고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손 에게 금 300,000,000원, 원고 손 , 박 에게 각 금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5. 1.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위 '클라쎄'지가 배포되고 광고됨으로써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나이와 사회적 위치, 피고 회사의 규모와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일반인들에 대한 공신력, 피고들의 사실확인보도 의지의 결여, 위 기사의 내용과 크기, 위 기사의 게재경위와 발행부수, 위 기사 게재 이후의 피고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손□에게 금 40,000,000원, 원고 손□, 박□에게 각 금 10,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손□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손□, 박□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클라쎄'지가 배포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6. 5. 1.부터 피고들이 그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담심 판결선고일인 1997. 9.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9. 30.

재판장 판사 이 용 응

판사 이 기 택

판사 박 형 명

□

공무원의 개인적인 비위사실을 제보받아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부산고등법원 1997. 5. 22.자 판결 (96나11761)
대법원 1997. 9. 30.자 판결 (97다24207)

事實概要

대법원 제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은 1997년 9월 30일 김해군 주촌면 최 [] 씨가 국제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소심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보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판단은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다.

국제신문은 1995년 3월 15일자 “창고 공장 불법임대 김해군 공무원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창고를 공장으로 불법임대하고 신고없이 사슴축사를 신축하여 사유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사건기사가 허위보도이고 이로 인해 심대한 명예훼손을 받았으며 1995년 3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문제된 신축사슴축사는 현재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95부산중재6)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국제신문이 제보의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었던 이상, 위 제보를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pp. 333~337) 이에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를 하였고 이 또한 기각되자 상고하였다.

한편, 이와 함께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판결에서 법원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부산지법 제10민사부 1996년 10월 15일 판결 95카합5821, 부산 고법 제3민사부 1997년 5월 22일 판결 96나11778)

2심 判 決 文

사 건 : 96나11761 정정보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최 []

경남 김해군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국제신문

부산 []

대표이사 남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연수

변론종결 : 1997. 5. 1.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6. 10. 15. 선고, 95가합9634호 판결

주 문 :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5. 24.자 청구취지추가 및 원인정정서 부분 송달일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1. 원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5. 30.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의 인정 등

다툼이 없는 바와 같 제2, 7, 12, 17, 18, 19, 21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6, 10, 11, 16호증, 갑 제9호증의 5 내지 2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15 내지 39, 갑 제23호증의 16 내지 23, 을 제 4, 5호증, 을 제6호증의 2 내지 31의 각 기재 및 영상 (이중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의 14, 15, 21, 22, 23, 25, 갑 제14호증의 1, 2, 3, 5, 6, 8 내지 12, 14, 24, 33, 34, 38은 갑 제9호증의 5, 6, 10, 7, 갑 제14호증의 26, 28, 16, 17, 19, 20, 을 제6호증의 2, 3, 4, 10, 11, 14 내지 19, 22, 27, 28, 29와 차례로 같으며, 갑 제9호증의 13은 갑 제14호증의 26, 을 제6호증의 23과, 갑 제9호증의 16은 갑 제14호증의 29, 을 제6호증의 24와, 갑 제9호증의 17은 갑 제14호증의 31, 을 제6호증의 25와 갑 제9호증의 18은 갑제14호증의

32. 을제6호증의 26과, 갑 제9호증의 20은 갑 제14호증의 15, 을 제6호증의 31과, 갑 제9호증의 24는 갑 제14호증의 18, 을 제6호증의 20, 30과, 갑 제14호증의 4는 을 제6호증의 5 내지 10과, 갑 제14호증의 7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2, 13과 차례로 같다)과 원심증인 구 [], 김 [], 김 [], 김 [], 박 [], 김 [], 장 [], 이 [], 김 [], 당사증인 이 []의 각 증언(위 김 [], 장 [], 이 [], 이 []의 각 증언 중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김 [], 장 [], 이 [], 이 []의 각 일부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며 반증 없다.

가. 원고의 신원 등

원고는 1988. 5. 9. 김해시 []에 전입한 이래 그 아내 및 아들 셋과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 일대 임야에 감나무 밭을 일구고 사슴을 사육하여 왔으며, 1993. 7. 27.부터 1995. 4. 29.까지 농업직렬 6급 공무원으로서 위 주촌면 부면장의 직무를 맡아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기사에 게재

(1) 피고회사는 부산, 경남 일원에서 비중있는 국제신문이라는 제호의 지방지를 일간으로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2) 위 국제신문 1995. 3. 15.자 제28면에 별지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남 김해군 [] 간부직원인 최모 씨가 그 소유 감나무 밭에 있는 창고를 공장으로 임대하면서 적법한 신고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사슴 축사를 지어 사용함에 있어 역시 적법한 신고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나누어진다.

(3) 이 사건 기사에서 지목된 위 최모씨는 그 성씨와 나이뿐만 아니라 신분과 직위에다 사슴을 사육하는 감나무 밭의 소유지번까지 밝혀 당시 경남 김해군 []

으로 근무한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은 그 일대 주민이나 원고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물론 이에 관심을 가지는 불특정 다수인들도 쉽게 추지할 수 있다.

다. 보도내용의 진위

(1) 원고가 1990. 9. 25. 경남 김해군 [] 면 [] 임야에 이미 건립된 축사 1동 196.62㎡를 창고로 용도변경하고자 위 면사무소에 그 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7.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1994. 10. 4. 소외 진 []에게 임대하여 이 사건 기사 게재일 당시 위 창고는 위 진 []이 경영하는 [] 공업사 출고제품 등의 보관창고로만 사용되어 왔을 뿐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공장으로서 쓰이지 아니

하였다.

(2) 원고는 1994. 8. 6. 위 면사무소에 같은 리 [] 임야에 축사 및 퇴비사 각 1동 36㎡의 신축신고를 마친 후 같은 달 10.경 이에 착공하였다가 위 각 동을 40㎡씩으로 일부 증축하다 그 연동으로 관리사 1동 47㎡ 및 화장시 1동 4㎡를 이어 짓느라 도합 131㎡(40×2+47+4)를 축조하게 되었으며, 위 임야는 준농림 지역에 속하여 위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건축법 소정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기사는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의 피해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이후 위 []의 직위에서 해제되어 1995. 4. 경상남도 내무과 감사계 주관으로 신문보도 및 지역주민 여론동향에 대한 진위여부를 그 동기로 하는 조사가 2달여 벌어져 1995. 5. 30. 위 인정 기사내용과 더불어 기관장에 대한 신고나 허가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 임대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창고를 임대하여 영리를 취득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체면과 위신 등 그 직무내외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되지만 그간의 공적을 감안한다 하여 경고부 불문처분을 받은 이래 김해시 사적지 관리사업소 관리계장으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다.

마. 취재의 경위

피고회사 소속기자인 소외 김 []는 1995. 2. 23.경 동료기자 등을 통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알린 위 내삼리장 소외 장 []를 만나 그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고 이어 원고의 직속상관으로 위 주촌면장 소외 김 []을 다시 만나 그에게서 “고급간부인 원고가 신고를 안했겠느냐,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그 진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장 []의 제보만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신문의 경우 그 광범위한 전파성과 기사 내용에 대한 일반 독자의 높은 신뢰성에 비례하여 그릇된 오보로 피해자가 입게 될 손해 역시 지대하고 그 회복 또한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설혹 그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거나 이를 게재한 의도가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기사와 같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태만히 하든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내지 품위를 손상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력직 공무원의 법규위반이라는 개인적인 비위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할 경우에는 앞서 그 원고를 작성하고, 게재될 체제와 정도를 결정, 편집한 후 공표, 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별히 신중하여야 할 것이되, 그 표현에 있어서도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회사는 위 인정과 같이 취재기자가 경솔히 정보제공자의 말만 주저없이 신뢰한 나머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으로 삼은 원고의 법규위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조차마져 생략한 채 작성된 원고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일응 인용보도의 형식을 채용하면서도 그 전후로 피고회사가 실제 그 비위사실을 지득 확인한 양 단정적인 표현을 배치하고, 나아가 관계당국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촉발하는 뜻을 담도록 체제를 잡아 그 발행 일간지에 전반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공표한 일련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로써 원고의 인격적 법익에 끼치게 될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피고회사는 헌법상의 특권이 보장된 언론기관으로서 대중민주정치의 근간으로 올바른 언론의 창달을 도모함에 필수적인 공공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정부에 대한 제약없는 비판을 조장하게끔 보도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니, 비록 보도사실이 진실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게재함에 있어 그 허위성의 인식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단순히 그 기사의 작성, 편집, 발행에 있어 주의를 해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기사는 그 소속 취재기자가 직접 정보제공자인 위 장□□와 이어 원고의 직속상관인 위 김□□을 차례로 대면한 끝에 나름대로 신뢰를 가지게 된 그 제보내용대로 게재되었을 뿐, 그 허위성의 인식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원고의 공무집행상의 과오가 아닌 그 개인적인 비위사실에 관한 정보를 독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함으로써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자유롭게 토론한다거나 제약없이 비판하도록 한들 위 주장에서 내세운 공공문제와 정부에 대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언론이 형성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취재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허위성의 인식에 중대한 과실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면책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책임의 범위

원고의 나이와 지위, 생활관계와 그간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성질 및 규모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및 체제, 허위의 정도 등과의 대비, 그 게재경위와 사후 정정보도가 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은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게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5. 5. 24.자 청구취지추가 및 원인정정서 부분 송달일일이 기록상 분명한 같은 달 30.부터 그간 피고회사가 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 10. 15.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회사의 항소는 각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5. 22.

재판장 판사 전 봉 진
판사 박 효 관
판사 지 영 철

기사의 표시

창고 공장 불법임대 金海군 공무원 물의【金海=金 기자】

金海군 공무원의 창고를 공장으로 임대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축사를 짓는 등 불법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金海군과 면 리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직원인 崔모 씨가 일대 자신의 감나무 밑에 있는 60평짜리 창고를 공장으로 불법임대해 주고 있다는 것.

또 자신의 감나무 밑 산기슭에 사슴을 사육하기 위해 50~60평의 축사를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어 사용하고 있는데도 金海군 등 관계당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金海군 은 『창고를 불법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사실은 몰랐으며 신고하지 않은 축사의 경우 농촌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大法院 判決文

사 건: 97다24207 정정보도

원 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최 []

피 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국제신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7년 5월 22일 선고 96나11761판결

변론종결: 1997. 5. 2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나이와 지위, 생활관계와 그간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성질 및 규모, 이 사건 기사 내용과 체제, 허위의 정도 등과의 대비, 그 게재경위와 사후 정정보도가 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액을 그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이 제1심과 사실관계를 일부 달리 인정하면서도 제1심이 인용한 위자료액과 동일한 액을 인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심판결에 이유 모순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항소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위 원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증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축사는 건축법 소정의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신고대상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결에 기사의 허위성의 평가에 관

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기자인 소외 김[]는 동료기자를 통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알린 이장 장[]를 만나 그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고, 이어 원고의 직속상관인 면장 김[]을 다시 만나 그에게서 “고급간부인 원고가 신고를 안했겠느냐,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그 진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장[]의 제보만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기사의 표현형식도 일응 인용보도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피고가 실제로 원고의 비위사실을 지득, 확인한 양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당국에 모종의 조치를 촉구하는 뜻을 담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조치로 수궁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고(대법원 1988년 10월 11일 선고 85다카29 판결, 1996년 5월 28일 선고 94다33828 판결 등 참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기는 하나, 원심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수궁할 수 있고 거기에 언론보도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언론의 특성상 공직자의 윤리 및 비위사실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특별히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거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위자료의 수액이 적정한 것임은 앞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구체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자료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경과실에 대하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 또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9. 30.

재판장 대법관 최 종 영
대법관 정 귀 호
주심 대법관 이 돈 회
대법관 이 임 수

□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과 관련한 기사로 인해 발행인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11. 29.자 판결 (95가합3788)

서울고등법원 1996. 7. 25.자 판결 (96나5348)

대법원 1997. 10. 28.자 판결 (96다38032)

事實概要

대법원 제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1997년 10월 28일 박 [] 외 김 [] 씨가 이 [] (전 주간 '크리스천 한국' 발행인)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 이 [] 이 발행했던 주간 '크리스천 한국' 은 1993년 4월 28일자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 2 교단·교권주의" 제하의 기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 교회의 교단·통합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잔류파의 문제점들이 통합의 유일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1심법원은 원고 김 [] 를 제외한 2인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2심법원은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잔류파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피고 김 [] 만을 취재원으로 하여 원고들의 과거 비위사실을 들추어내어 보도한 점, 원고들의 변명이나 반론을 실지 않음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정신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원고 김 [] 에게도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1심원고 박 [] 는 동일한 기사로 인하여 피고 이 [] 이 발행인으로 있는 목양신문을 상대로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는 원래의 보도가 있었던 정기간행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폐간된 경우에는 그 피신청인 적격을 상실하였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도 없다”며 반론보도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앞서 원고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93서울중재105, 106)을 하였으나 불성립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 95가합3788 손해배상(기)

원 고 : 1. 박 []

2. 이 []

3. 김 []

원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형근

피 고 : 1. 이 []

서울 송파구 []

2. 이 []

서울 중랑구 []

3. 김 []

서울 용산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부

변론종결 : 1995. 11. 15.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 [], 원고 이 [] 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4. 29.부터 1995. 11. 29.까지의 연 5푼의, 1995.

11. 30.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박[] , 원고 이[]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박[] , 원고 이[]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일까지의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내지, 3호증, 강제4호증의 4, 8 내지 16, 강제5호증의 4 내지 9, 13, 18, 23, 25, 26, 31, 34, 39, 42, 강제6호증의 5 내지 10, 강제7호증의 1 내지 3, 강제8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위 강제 4내지 6호증 중 믿지 아니하는 각 일부 기재는 제외)와 증인 이[] , 김[]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래 []교회는 1981년경 []교단과 []교단(이하 []교단이라 한다)으로 분열되었다가 1991년경 통합을 추진하면서 양 교단 내에 각기 통합을 주장하는 파(통합파라 한다)와 잔류를 주장하는 파(잔류파라 한다)로 나뉘게 되었는데, 통합파들은 1991. 11. 28. 통합 결의를 통하여 []교단이라는 통합교단(소위 조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는 여의도 []교회가 중심교회이다)을 만들어 잔류파와 대립하게 되었다.

나. 원고 박[]는 위 통합전의 []교단의 재단 이사장이고, 원고 이[]은 같은 교단의 목사로서 각 잔류파에 속하는 자들이며, 원고 김[]는, 1990. 2. 23. 주간지로 정기간행물등록을 한 '목양신문' (위 잔류파에 속한 신문이다)의 발행인이고, 한편 피고 이[]은 위 통합파의 중심교회인 여의도 []교회의 장로로서 주간종교지인 '크리스천 한국' 위 발행인이며, 피고 이[]는 위 주간지의 취재부 기자이고, 피고 김[]는 []교회의 목사로서 통합파에 속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 이[]는 위 '크리스천 한국' 지의 창간 특집으로 '한국교회 무엇이 문

제인가'라는 제목하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도하여 기독교계가 스스로 자성하고 개선하여 진정한 기독교 부흥과 평신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유도한다는 편집목적하에 취재 및 편집기획안을 작성하여 위 주간지의 발행인인 피고 이 []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이 []의 각 연재기사에 대한 확인 및 보도 허락을 받고 피고 이 []는 10회에 걸친 연재 기사를 보도하였다.

라. 위와 같은 10회에 걸친 연재기사 중 1993. 4. 28.자 위 '크리스천 한국' 지 7호의 18, 19면에는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 2 교단교권주의'라는 제목 아래 [] 교단의 통합문제가 다루어졌는데, 피고 이 []는 위 통합파측 인사인 피고 김 []만을 취재원으로 하여 그와의 인터뷰와 그가 제시하는 자료만에 근거하여, '기하성 교단통합 왜 시비가 되나? 잔류파의 통합시비 실질적인 속셈은'이라는 소제목하에 양 교단의 통합만이 교계를 위한 길이라는 전제하에 위 [] 교단으로의 통합결의가 소외 조 [] 목사의 결단에 의한 것임을 추켜세우는 취지의 기사를 이어서 '조 [] 목사 잔류측 포함돼 교단통합 반대명분 내세우기 급급'이라는 소제목하에 위 잔류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위 조 [] 목사의 친동생인 소외 조 [] 목사임을 소개하면서 '조 [] 목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위 목양신문에 비록 광고이지만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까지 비방하는 내용이 실린 질의서를 게재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적어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기사를 이어서 '통합반대인물은 교권행사 중진 임원 교단재산 때문인가 의혹'이라는 소제목하에 명예와 물욕에 고개를 내미는 샴꾼 목자들이 위 양교단의 통합문제에 걸림돌이라는 취지의 기사와 위 잔류파의 대표격인 원고 박 []와 소위 조 []이 교단의 중진임원이고 위 통합파가 [] 교단으로의 통합후에 원고 박 []를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음을 소개하면서 이어서 '바로 박목사의 합법적이지 못한 재단이사장 취임문제, 모든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에 불응한 문제 그리고 개척선교자금 500,000,000원 등의 횡령사건들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소송은 결국 그들의 예측대로 통과, 재단 직무대행자로 소외 김 [] 목사가 대신하게 된 것이다'라는 기사를, 이어서 '목회자가 소송시비 22건 성명서 공개질의서 마구 게재'라는 소제목하에 목회자들은 목회에만 힘을 써야 한다는 전제하에 위 통합파와 위 잔류파 사이에 소송사건이 많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 시초가 된 최초의 소송을 원고 박 []가 먼저 제기하였다고 소개하면서 위 원고의 소송사건 중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있음을 예로 들면서 '일명 부산 []교회사건인데 내용인즉 박 [] 전 재단이사장이 교회재산을 재단에서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재단간사였던 이 [] 목사를 부산 []교회에 파송시켰다. 그러나 재단간사의 명분으로

당회장을 지내오던 이목사는 교회건물을 임의로 용도변경하는 등의 문제를 빚어 교인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 급기야 사례금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이목사는 교회재무 회계 및 재단이사장인 박목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1989. 8.) 박, 이목사는 같은 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자가 처음 그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그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었다. 김목사(피고 김 []를 가리킨다)는 “박, 이목사는 교인상대로는 불가능한 교회의 돈을 타내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끼리 짜고서 원고와 피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나의 제스처라고 할 수 있지요”라고 말했다’ 라는 기사를, 이어서 ‘각종납치 방화사건 전말 마일스 선교자금 6억원의 행방 이 [] 전도사 캐피탈 호텔 앞에서 괴한들에게 납치,’ ‘잔류측 : 공소시효 지난 마일스 선교자금 왜 자꾸 들먹이나 통합측 : 행정서류 인계 불이행,’ ‘유치한 시비논쟁 평신도 이목도 살피야 자기 흡은 잊어 버리고, 그러다’ 라는 각 소재목하에 잔류과측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양 교단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다(이하 위 각 기사내용을 이 사건 기사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기사에는 특별히 원고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하거나 반론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마. 피고 이 []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린 위 1993. 4. 28.자 ‘크리스천 한국’ 지 약 20,000부를 그 무렵 독자들에게 보급하였다.

2. 명예훼손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764조의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 교단의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위 ‘크리스천 한국’ 지의 취재기자인 피고 이 []와 발행인인 피고 이 []은 위 통합파의 인사인 피고 김 []만을 유일한 취재원으로 하여 교단통합을 위한 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교단 통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고 박 [], 원고 이 []의 개인적인 비리를 들추어 내어, 이러한 비리가 교단 통합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함으로써 목회자로서의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

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 []의 이 사건 기사내용의 제보 및 피고 이 []의 취재 및 편집과 피고 이 []의 이 사건 기사의 발행 및 배포행위는 원고 박 [], 원고 이 []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김 []는, 피고들이 위 '크리스천 한국'지에 '원고 김 []가 목양신문에 소외 조 [] 목사를 비방하는 질의서를 게재하도록 허락하였다'라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내용 중에 어디에도 원고 김 []에 대한 기사는 없고, '목양신문에 소외 조 [] 목사를 비방하는 질의서를 게재하였다'라는 기사도 소외 조 []이 위와 같은 질의서를 위 신문에 광고형식으로 게재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기사로서 위 조 []에 대한 기사 일 뿐 원고 김 []나 그가 발행인으로 있는 위 목양신문에 관한 기사가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김 [] 또는 목양신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가사 목양신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목양신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지언정 그 발행인인 원고 김 []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 박 [], 원고 이 []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들에게는 원고 박 [], 원고 이 []를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으므로 위 보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

위에서 든 강제4호증의 4, 8 내지 16, 강제5호증의 4 내지 9, 13, 18, 23, 25, 26, 31, 34, 39, 42, 강제6호증의 5 내지 10, 강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위 강제 4내지 6호증 중 믿지 아니하는 각 일부 기재는 제외)와 증인 이 []의 일부증언에 변론에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통합전의 []교단의 재단 이사장인 원고 박 []는 그 휘하 목사인 원고 이 []를 1987. 4. 16. 위 교단 산하 부산 순복음 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임명하였는데, 원고 이 []은 위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위 교회건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려고 하다가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었고, 결국에는 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사례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당시 위 교단의 대표자인 원고 박 []를 상대로 사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 이 []이 교인들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는 위 용도변경 문제 외에도 그가

설교한 내용이 교인들로부터 이단시비를 받아 교인들과 분쟁이 발생한 데에도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기사는 위 이단설교문제를 빼버리고 오로지 위 용도변경 문제로 인하여 원고 이 []이 사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뿐만 아니라 원고 이 []이 원고 박 []와 위 사례금 청구의 소를 짜고서 하는 소송이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사실, 한편 위 교단 통합파측 목사들이 1992. 5.경 법원에 원고 박 []를 상대로 위 통합전 []재단의 대의원의 세력분포, 원고 박 []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7. 법원이 원고 박 []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결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결정은 위 통합전의 []교단의 대의원의 세력분포가 통합파가 절대 다수라는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원고 박 []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위 []교단의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거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와 공금횡령을 하였다든 점(뒤에 모두 검찰에 의하여 무혐의 결정되었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는 대의원의 세력분포에 관한 사실을 빼버리고 오로지 위 원고의 비위사실만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여 판단전대,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라도, 적시된 기사 내용이 진실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소 부적절하거나 과장된 표현 및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주요부분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야 함은 물론 부수적인 사실이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진실성을 갖추어야 하고, 어떤 사실에 관하여 일면만을 적시하고 다른 면을 누락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어떤 소문을 보도한 기사는 그러한 소문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는 일부 진실한 사실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실이 철저한 확인도 없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사실에 관하여는 일면만을 부각시키고 다른 면을 누락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 박 [] 및 원고 이 []에 대한 이 사건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

더 나아가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위 잔류파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피고 김 []와 그가 제시하는 자료만으로 유일한 취재원으로 하여 원고 박 [] 및 원고 이 []에 대한 과거의 비위사실(위 통합파의 1991. 11. 28. 통합결의 이전의, 그것도 그 전부가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실)을 들추어 내어 보도한 점, 이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면서 특별히 위 원고들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통합파와 잔류파의 문제점을 균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고 잔류파만의 문제점만을 열거하여 그것이 통합의 유일한 걸림돌이 된다는 보도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 박 [], 원고 이 []의 명예가 훼손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 여부, 이 사건 기사의 보도 목적, 위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박 [], 원고 이 []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기사의 보도일 다음날인 1993. 4. 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5. 11. 29.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원고 박 [], 원고 이 []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 []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 박 [], 원고 이 []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 []와 피고들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 []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 선고를 붙임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1. 29.

재판장 판사 구 충 서
판사 박 범 계
판사 김 정 숙

2심 判 決 文

사 건 : 96나534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박
2. 이

원고, 항소인 : 3. 김

원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김승진, 정광진, 한경수, 배진수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 1. 이

서울 송파구

2. 이

서울 중랑구

3. 김

서울 용산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부

변론종결 : 1996. 6. 27.

주 문 :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김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 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4. 29.부터 1996. 7. 25.까지는 연 5푼, 같은 달 26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김 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박 , 이 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김 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3등분하여 그 1은 피고들, 나머지 2는 원고 김 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박 , 이 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당심에서 감축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4.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고들 :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원고 박 [] , 이 [] 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 2, 3호중, 강제4호중의 8 내지 14, 강제5호중의 7 내지 10, 13, 18, 23, 25, 26, 31, 34, 39, 42, 강제6호중의 13, 14, 강제7호중의 1, 2, 3(을제2호중은 그 일부이다), 강제8호중, 제1심증인 김 []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호중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이 [] , 김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 교회 교단은 1981년경부터 [] 교단과 [] 교단 등으로 분열되었다가 1991년경 교단 통합을 추진하면서 각기 통합을 주장하는 파(이하 통합파라 한다)와 잔류를 주장하는 파(이하 잔류파라 한다)로 나뉘게 되었는데, 통합파들은 1991. 12. 28. 통합결의를 통하여 통합교단인 [] (조 [] 목사가 당회장인 여의도 [] 교회가 그 중심교회이다. 이하 통합전, 후의 [] 교단을 모두 [] 교단이라 줄인다)를 만들어 잔류파와 대립하게 된 사실, (나) 원고 박 [] 는 통합전의 [] 교단의 재단 이사장, 원고 이 [] 은 같은 교단의 목사, 원고 김 [] 는 주간 종교지인 '북양신문'의 발행인으로 각 잔류파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한편 피고 이 [] 은 통합파의 중심교회인 여의도 [] 교회의 장로서 주간 종교지인 '크리스천 한국'의 발행인, 피고 이 [] 는 위 '크리스천 한국'의 취재부 기자, 피고 김 [] 는 [] 교회의 목사로서 각 통합파에 속하는 사람들인 사실, (다) 위 '크리스천 한국'지는 창간 특집으로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10회에 걸친 연재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위 연재기사의 하나로 1993년 4월 28일자로 발행된 위 주간지 제7호의 18, 19면 전면에 걸쳐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 2 교단·교권주의'라는 제목 아래 [] 교단의 통합문제를 다룬 기사(강제7호중의 2, 3)를 게재하였으며, 위 기사는 피고 이 [] 가 주로 피고 김 [] 로부터

취재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발행인인 피고 이 []의 검토·확인
 을 거쳐 게재되었던 사실, (라) 위 기사는 소제목이 붙은 7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 ‘[] 교단통합 왜 시비가 되나? 잔류파의 통합시비 실제적
 인 속셈은’이라는 소제목 아래 ‘교단통합을 반대하는 문제의 [] 교단은 통합을
 반대하고 헌법과 총회의 권위를 무시한 [] (전재단이사장 박 []
 목사)와 [] (총회장 조 [] 목사)등 일부 통합 반대세력의 두
 줄기로 구분된다’고 하고 교단 통합은 조 [] 목사의 비장한 결단에 의하여 마침내
 1991년 12월 18일의 통합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하고, 이어서 (1) ‘조 [] 목사
 잔류측 포함해 교단통합 반대명분 내세우기 급급’이라는 소제목 아래 위 조 [] 목
 사의 친동생인 위 조 [] 목사가 잔류파의 대표적 인물에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면
 서 ‘조 [] 목사…… 설령 형제간에 뜻이 맞지 않았다 해도 자신이 관리하는 위 목
 양신문에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까지 비방하는 내용이 실린 질의서를 게재하도록 허
 락했다는 것은 적어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내용과 (2) ‘통합반대인물은
 교권행사 중진 임원 교단재산 때문인가 의혹’이라는 소제목 아래 ‘상습 도박자는 막
 대한 돈을 잃고서도 결코 도박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교계 곳곳에 또아리
 를 틀고 날카로운 눈으로 명예와 물욕에 고개를 내미는 샅꾼 목사들을 생각해 보았
 다.…… 제발 이번 사건이 위와 같은 교권주의자들의 놀이판이 아니기를 비는 마음
 이었다.…… 박 [] 목사가 재단이사장으로 있던 [] 총회에서는 교단통합전에
 이미 재단이사장직 해임청원서를 11번이나 문화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화
 부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통보, 교단통합이 이루어진 후 통합측의 권 [], 김
 [], 조 [] 목사는 박목사를 상대로 다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
 출했다고 한다. 바로 박목사의 합법적이지 못한 재단이사장 취임문제, 모든 회계장
 부에 대한 감사에 불응한 문제 그리고 개척선교자금 5억원 등의 횡령 사건들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소송은 결국 그들의 예측대로 통과, 재단 직무대행자로 소외
 김경철 목사가 대신하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과 (3) ‘목회자가 소송시비 22건 성명
 서 공개질의서 마구 게재’라는 소제목 아래 통합파와 잔류파 목회자 사이에 소송사
 건이 많다는 것을 비판하고 그 시초가 된 최초의 소송을 원고 박 []가 먼저 제기하
 였다고 소개하고 나서 ‘한편 박목사의 소송사건 중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있었다. 일
 명 부산 []교회 사건인데 내용인즉 박 [] 전 재단이사장이 교회재산을 보호한
 다는 명목 아래 재단간사였던 이 [] 목사를 순복음교회에 파송시켰다. 그러나 재단
 간사의 명분으로 당회장을 지내오던 이목사는 교회 건물을 임의로 용도 변경하는 등

의 문제를 빚어 교인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 급기야 사례금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이 목사는 교회 재무 회계 및 재단이사장인 박목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1989. 8.) 박·이 목사는 같은 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 그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그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었다. 김□□ 목사는 “박, 이 목사는 교인상대로는 불가능한 교회의 돈을 타내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끼리 짜고서 원고와 피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나의 제스처라고 할 수 있지요”라고 말했다’는 내용과 이어서 그밖에 ‘각종 납치 방화사건 전말 마일스 선교기금 6억원의 행방 이□□ 전도사 캐피탈호텔 앞에서 괴한들에게 납치,’ ‘잔류측 : 공소시효 지난 마일스 선교기금 왜 자꾸 들먹이나 통합측 : 행정서류 인계 불이행’, ‘유치한 시비논쟁 평신도 이목도 살펴야 자기 흠은 잊어 버리고, 그러다...’ 라는 각 소제목 아래 잔류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말미암아 교단 통합에 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마) 한편 위 기사에는 특별히 원고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하거나 반론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사실, (바) 피고 이□□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린 위 1993년 4월 28일자 ‘크리스천 한국’ 지 약 20,000부를 그 무렵 독자들에게 배포한 사실, (사) 피고들은 그 후 위 기사로 말미암아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1994년 11월 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각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앞서 본 위 1. (라) (1), (2), (3)항의 기사 내용과 그 전후의 기사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보면 교단의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위 ‘크리스천 한국’지의 취재기자인 피고 이□□와 발행인인 피고 이□□은 통합과 인사인 피고 김□□를 취재원으로 하여 교단통합을 위한 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원고 김□□가 발행하는 목양신문이 위 1. (라)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게재하고 원고 박□□, 원고 이□□이 위 1. (라)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적인 결함과 비리가 있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교단 통합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인상을 위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기사를 보도, 공포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 []의 기사내용 제보, 피고 이 []의 취재 및 편집과 피고 이 []의 발행 및 배포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 피고들에게는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는 강제4호증의 8 내지 14, 강제5호증의 7 내지 10, 13, 18, 23, 25, 26, 31, 34, 39, 42, 강제6호증의 13, 14, 강제7호증의 1, 2, 3, 을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6호증의 6 내지 12, 강제9호증의 1, 2, 강제11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이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목양신문은 1993년 1월 23일자 9면에 원고 박 [] 명의로 된 '조 [] 목사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라는 제목의 광고(을제7호증)를 게재하였는데, 위 광고문에는 조 [] 목사의 부인이나 자녀를 비방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도하였던 사실, (2) 위 교단 통합파측 목사인 소외 권 []이 1992년 5월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원고 박 [] 등을 상대로 위 원고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통합전 [] 교단의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에 불응하였으며 개척선교자금 5억원 등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7가지 이유로 재단 행정총회에서 위 원고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해임결의를 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직무집행정지 등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7. 위 법원이 원고 박 [] 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결정은 이유의 실시가 없이 내려진 것으로 원고 박 []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위 [] 교단의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에 불응하였으며 선교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는 위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를 실제로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 (3) 위 통합전의 [] 교단의 재단이사장인 원고 박 []는 그 휘하 목사인 원고 이 []을 1987년

4월 16일 위 교단 산하 부산 []교회 담임목사로 임명하였는데, 원고 이 []은 위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하던중 위 교회건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하려고 하다가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었고, 결국에는 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사례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당 위 교단의 대표자인 원고 박 []와 위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사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 이 []이 교인들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는 위 용도 변경문제 외에도 그가 설교한 내용이 교인들로부터 이단시비를 받아 교인들과 분쟁이 발생한 데에도 이유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기사는 위 이단 설교문제를 빼버리고 오로지 위 용도변경문제로 인하여 원고 이 []이 사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뿐만 아니라 위 사례금 청구 소송이 원고 이 []이 원고 박 []와 싸고서 한 소송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는 그와 같이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이 진실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기사의 주요부분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면 족하고 세부에 있어서 다소 진실과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곧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사내용 속에서는 부수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직접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실들에 관하여 그 일면만을 적시하고 다른 면을 누락시킴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어떤 소문을 보도한 기사는 그러한 소문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는 일부 진실한 사실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근거도 없는 사실이 확인없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사실에 관하여는 그 일면만을 부각시키고 다른 면을 누락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위 잔류파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피고 김 []와 그가 제시하는 자료만을 취재원으로 하여 원고들에 관한 과거의 비위사실(위 통합파의 1991년 12월 28일 통합결의 이전의, 그것도 그 전부가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실)을 들추어 내어 보도한 점, 이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면서 원고들의 해명이나 반론을 실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통합파와 잔류파의 문제점을 균형있게 보도한 것이 아니고 잔류파만의 문제점만을 열거하여

그것이 통합의 유일한 걸림돌이 된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을제3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공동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이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 바, 앞서 적시한 이 사건 기사와 크기와, 보도 목적과 게재 경위, 위 주간지의 성격과 발행부수,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금 5,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일 다음날인 1993년 4월 29일 부터 피고들이 그 각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 박 [] , 이 [] 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5년 11월 29일까지, 원고 김청수에 대하여는 당심판결 선고일은 1996년 7월 25일까지 각 민법소정의 연 5푼, 각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할 위 인용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김 []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인용금원의 연대지급을 명하고, 원고 김 [] 의 나머지 패소부분 및 원고 박 [] , 이 [] 의 패소부분과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모두 당원과 그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김 [] 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박 [] , 이 [] 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25.

재판장 판사 김 상 기
판사 강 재 철
판사 양 호 승

大法院 判決文

사 건: 96다3803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김 []

서울 영등포구 []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김승진, 정광진, 한경수, 배진수

피고, 상고인: 1. 이 []

서울 송파구 []

2. 이 []

서울 중랑구 []

3. 김 []

서울 용산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부

변론종결: 서울고등법원 1996. 7. 25. 선고 96나53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크리스천 한국'의 기사 내용과 그 전후의 기사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 교단과 [] 교단의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위 '크리스천 한국'지의 취재기자인 피고 이 []와 발행인인 피고 이 []은 피고 김 []를 취재원으로 하여 원고가 발행하는 목양신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게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공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 []의 기사내용 제보, 피고 이 []의 취재 및 편집과 피고 이 []의 발행 및 배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0. 28.

재판장 대법관 이 임 수
주심 대법관 최 종 영
대법관 이 돈 희
대법관 서 성



남북교류를 촉구하는 원고의 편지를
'김일성 애도서신' 으로 왜곡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7. 11. 6.자 판결 (96가합2272)

事實概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은 1997년 11월 6일 전 강원도 의회 의원인 정 [] 씨가 강원일보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일성 조문문제와 관련한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원고의 신분이 도의원 으로 도의원 선거를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편지의 취지와 원고 등에 대한 검찰의 내사사건을 보고함에 있어 원고의 명예를 해하거나 입후보로 도의원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쉽게 예견되므로 그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편지를 김일성 애도편지라고 부적절하게 표현하였고,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고 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원일보는 1995년 4월에서 9월에 걸쳐 원고가 김일성 애도서신을 보냈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모두 16회에 걸쳐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김정일에게 남북간 교류성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강원일보가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를 보낸 것으로 왜곡보도하였고 통일원이 이에 대하여 경고결정을 하고 검·경찰이 국가보안법 저촉여부를 내사 중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낙선하게 되었다는 이유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원고는 이와 관련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강원일보가 속보와 해설 기사를 통해 원고의 무혐의처분 사실과 이유를 상세히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判 決 文

사 건: 96가합2272 손해배상(기)

원 고: 정 [] (鄭 [])

강릉시 연곡면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 고: 1. 주식회사 강원일보(江原日報)

춘천시 중앙로 1가 53

대표이사 조남진

2. 이 [] (李 [])

춘천시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변론종결: 1997. 9. 25.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6부터 1997. 11. 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강원일보(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사회부 기자인 피고 이 []와 피고 회사의 편집국장 및 편집회의 참석자들(이하 피고 이 [] 등이라고 한다)은 1995. 4. 9.부터 같은 해 9. 6.까지 15회에 걸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에 원고가 '김정일에게 남북간 교류 성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 (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보낸 것에 관하여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를 보낸 것으로 왜곡 보도하였으며, 통일원이 이에 대하여 경고 결정을 하고 검찰과 경찰이 국가 보안법 저촉여부를 내사 중이라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로 하여금 도의원 선거에 낙선하게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이 []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이 [] 등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시 원고는 강원도 의회 의원으로서 공인이었고, 피고 회사는 언론사로서 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어 이를 사실에 충실하게 보도한 것일 뿐 원고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원고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이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을 덧붙여 보도하였고, 더욱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보도와 원고의 도의원 선거 낙선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룬다.

2.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9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편지의 작성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소외 정 [], 김 [], 이 [], 이 [](이하 위 위원들이라고 한다.)는

1991. 6. 20. 강원도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하면서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가칭 남북교류추진위원회(이하 위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 후 1994. 11. 17.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았다.

(2) 위 위원들은 당시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는 중국 길림성 정부 공무원들의 협력을 받으면 대북 접촉이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1995. 1.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중국 장춘 및 북경을 1차로 방문하여 중국 공무원들의 협력을 받아 심양 주재 북한 영사관,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등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김 [] 영사부장 등과 전화통화만 하였을 뿐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못하고, 다만 북경 소재 평양냉면집 경리에게 남북강원도 교류 사업에 대한 제안 문건을 위 김 []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사후에 위 문건이 전달되었을 뿐 별 다른 성과 없이 귀국하였다.

(3) 원고는 위 정 [], 김 []과 함께(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같은 해 3.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재차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 전 위 위원회의 간사였던 원고는 이 사건 편지 초안을 작성한 후 위 위원회의 위원장인 위 정 [], 부위원장인 위 김 []에게 이를 보여 주면서 김정일의 지시 없이는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또 1차 중국 방문시에 북한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접촉에 실패하였으므로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접촉해 줄 것이니 이와 같은 서신을 준비해 가자고 제안하여 위 양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편지 초안에 아무런 수정 없이 각자 서명하였다.

(4) 원고 등은 1995. 3. 20. 중국 북경에서 북한측 관계자인 위 김 []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강원도 교류문제를 논의하면서 위 김 []에게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하였다.

나. 이 사건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된 내용은 북강원 인민위원회와 강원도 의회간의 자매 결연을 비롯하여 상호 의원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체육행사 교류, 학생 수학여행단 교류, 남북 청소년 야영대회 개최 등 남북강원도 교류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김정일이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편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되고, 원고의 반독재 투쟁경력을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편지 및 위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통일원의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일원은 1995. 3. 25. 원고 등으로부터 북한측 접촉 결과를 보고 받고 위 편지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29. 위 위원회 대표인 위 정로부터 경위서를 제출 받는 한편, 교류 취소 통고문을 북한에 발송하려 하였으나 정부에서 교류를 방해한다는 역선전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류시켰다.

(2) 춘천지방검찰청은 위와 같은 위 추진위원회의 활동 및 이 사건 편지와 관련하여 강원지방검찰청에 남북교류 추진의 주도자인 원고에 대하여 추진 배경, 성향 등을 내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 후 1995. 4. 7. 위 추진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이 사건 편지 내용 등을 담은 정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이어 강원지방검찰청은 1995. 4. 12.부터 4. 24.까지 원고 등을 상대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한 후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5. 3. 춘천지방검찰청으로 내사 기록을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같은 해 5. 24.부터 같은 해 9. 6.까지 원고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같은 달 25. 무혐의로 내사 종결 처리하였다.

라.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피고 회사의 각 내용 및 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이 []는 1995. 4. 8. 위 정보보고서를 입수한 뒤 춘천지방검찰청 및 강원지방검찰청에서 원고 등에 대하여 내사 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1995. 4. 9.자 강원일보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의 편집국장 및 각 부서의 데스크들이 참석한 편집회의에서 강원일보에 이를 게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목 : “북접촉 도의원 3명 내사”, ② 부제목 : “검·경 김정일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통일원 경위서 요구에 교류위한 순수의도 답변”, ③ 기사 내용 : “도의회 정 [], 김 [], 정 []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당국의 승인하에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 임의로 김정일에게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며 교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데 대해 검·경찰이 국가보안법 저촉여부를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정일에게 전해 달라고 보낸 서신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이란 호칭과 김일성 사망을 애도 위로하는 내용을 담아 전달했다는 것.(중략) 한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귀하」로 보낸 이 서신에는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란 내용이 실려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편지의 작성 경위, 통일원의 경위서 요구 및 제출된 경위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피고 이 []는 원고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기사 내용은 검찰의 1995. 4. 7.자 정보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사건 편지의 인사말 속에는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의 뜻을 담았다는 생각에서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정보보고서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편지에 대하여도 내사를 할 것이고 정부에서 금지한 김일성 사망 애도 내용이 담긴 서신에 대한 내사라면 당연히 국가보안법 저촉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보아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 이 [] 등은 1995. 4. 11.자 강원일보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도의원 3명 통일원 경고 검토”라는 제하에 통일원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은 당초의 승인 사항을 명백히 벗어난 행위로서 당초 접촉승인을 취소할 방침이었으나 이들 의원들에게 경고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같은 달 12.자 강원일보에 원고 등이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 받은 사실과 원고 등이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 함께 통일원이 같은 달 11. 원고 등에게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하고 금명간 경고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통일원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은 당초 북한주민 접촉 승인 사항을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는 논평을 하였으나, 원고 등에 대한 경고를 검토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었다(피고 이 []는 수사기관에서 경고 검토 사실은 자신이 직접 통일원 교류2과 소속 성명불상의 서기관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경고 결정 사실은 피고 회사 소속인 소외 문 [] 기자가 통일원 교류2과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 후 내용을 알려 주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1995. 4. 28.자 강원일보에는 “김일성 애도 도의원 3명 보강수사 계속”이란 제하에 도경찰청은 27. 원고 등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그날 경찰은 원고 등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없었다(피고 이 []는 수사기관에서 보강수사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원고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1995. 9. 6.자 강원일보에는 소외 최 []이 작성한 검찰이 남북접촉 승인 과정에서의 승인절차, 북측과의 접촉과정 및 방법, 서신작성경위, 서신에 반정부투쟁을 담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기사가 게재되었으나, 당시 검찰은 원고 등을 상대로 북측과의 접촉방법과 경위만을 조사하였다(위 최 []은 수사기관

에서 당시 담당 검사에게 기사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썼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 이 [] 등은 강원일보에 모두 16회에 걸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는 제목 또는 부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이 사건 편지와 관련된 기사를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 관련 기사로 특정하였다.

마. 이 사건 편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당시의 사회 상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강원일보의 1995. 4. 8.자 보도가 있기 이전에 피고 회사는 1995. 1.부터 강원일보를 통하여 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대북교류 내용을 5차례 정도 보도한 바 있고, 1995. 봄경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하여 조문 문제가 사회 일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 바 있다.

(2) 피고 회사가 강원일보에 1995. 4. 8. 최초로 이 사건 편지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다음날부터 2일간 양대 텔레비전에서 이를 보도하였고, 7개의 중앙 일간지가 ‘강원도의원 김일성 애도편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3) 위와 같은 보도들이 계속 되는 가운데, 이북 5도민 연합회는 같은 달 17.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어 같은 달 18. 열린 정기 총회에서는 위 성명서를 낭독하고 원고 등을 규탄하였다.

(4) 한편, 원고는 1995. 6. 27. 실시된 강원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3,927표를 얻었으나 1위보다 742표가 적어 낙선하였는데, 1991. 6. 20. 실시된 그 이전의 선거에서는 4,708표를 얻어 2위보다 704표가 더 많아 당선된 바 있다.

(5)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한 위 사건이 같은 해 9. 25. 위와 같이 무혐의로 내사종결 되자 같은 달 29.자 강원일보에 검찰은 이 사건 편지가 남북교류추진을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문제된 부분은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한 사실 및 그 이유를 6단에 걸쳐 속보 및 해설 기사의 형태로 상세히 게재하였다.

바. 애도와 위로의 사전적 의미

(1) 위로 : ① 수고함을 어루만져서 치사함, ② 괴로움을 잊게 하고 즐겁게 함(신한 출판사, 신한 새국어 사전), ①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함, ② 마음을 즐겁게 하고 수고를 치사함(약진문화사 표준 국어 대사전),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 주는 것(금성출판사, 금성판 국어 대사전)

(2) 애도 : 사람의 죽음을 슬퍼함(위 각 사전)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 [] 등은 피고 회사의 신문기사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편지가 사실은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강원남북교류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김정일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김정일에게 남북교류 성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편지라는 점과 이 사건 편지 서두에 기재된 위로라는 용어와 애도라는 용어가 사전적 의미에서도 매우 다른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보도인 1995. 4. 8.자 보도에서 이 사건 편지를 “김일성 애도 편지”라고 표현한 이후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편지의 전체적인 취지가 마치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기 위한 편지인 것처럼 왜곡되어 전달하게 하였으며, 같은 달 11. 및 같은 달 12.에는 통일원 관계자의 비공식적 말이나 동료 기자의 말만 믿고 사실과 달리 통일원이 원고 등에게 경고 조치하기로 검토 내지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고, 그 후 같은 달 24.경 경찰에서의 내사가 사실상 종결되어 더 이상 수사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에 경찰이 원고 등을 조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같은 해 9. 6.에는 검찰이 원고 등과 북한측과의 접촉방법 및 경위만을 조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편지 내용에 관하여 집중 조사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2) 그리고, 김일성 조문 문제와 관련된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원고의 신분이 도의원이며 또한 도의원 선거를 두달여 앞둔 시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편지의 취지와 원고 등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내사 사건 내용을 신문보도함에 있어 그 보도 내용에 따라서는 원고의 명예를 크게 해하거나 원고가 입후보한 도의원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쉽게 예견되므로 더욱더 신중히 사실을 확인한 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 []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편지를 김일성 애도편지라고 부적절하게 표현하였고, 나아가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고 또한 원고가 입후보한 1995. 6. 27.자 강원도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 편지와 관련된 사안이 당시 강원도의회의원으로서 공인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 회사는 일간 신문사로서 위 사건 내용을 신속히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으며,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 이 [] 및 소외 최 []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편지를 김일성 애도 편지라고 표현한 점, 통일원 관계자의 비공식적 말이나 동료기자의

말만 믿고 기사를 작성한 점, 사실과 달리 보강수사를 계속하였다고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 [] 등이 신문기사의 의미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이 [] 등의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이 [] 등의 위와 같은 신문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이 []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이 [] 등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및 피고들의 사회적 위치,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한 피고들의 사후 보도, 기타의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편지에 관한 피고 회사의 보도일인 1995. 9. 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7. 11.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재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 중에는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1. 6.

재판장 판사 주 기 동
 판사 남 기 주
 판사 정 선 오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자 판결 (97가합8022)
서울고등법원 1998. 1. 13.자 판결 (97나43156)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용웅 부장판사)는 1998년 1월 13일 성 씨 등 4인이 문화방송과 '시사매거진 2580'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는 2백만~6백만원씩 모두 1천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인용하면서 양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신세대 대학생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신입생 환영회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방송하겠다는 조건으로 성씨 등의 취재 동의를 받았으나, 신입생 환영회 음주장면과 2차 장소인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의 대화장면 등을 허락없이 촬영 1997년 3월 16일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으로 방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방송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했다. 그러자 양당사자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97가합8022 손해배상(기)

원 고: 1. 성 []
서울 용산구 []

2. 송 []
서울 동대문구 []

3. 김 []
인천 연수구 []

4. 채 []
서울 영등포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 고: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득렬

2. 정 []

3. 이 []

피고 2., 3.의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문화방송내 보도제작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최재경

변론종결: 1997. 7. 10.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성 []에게 금 6,000,000원, 원고 송 []에게 금 2,000,000원, 원고 김 [], 채 []에게 각 금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7. 3. 16.부터 1997. 8. 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당원의 검증 결과, 증인 박□의 증언과 증인 차□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차현주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성□, 송□은 □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이하 □대 성악과라고 한다) 3학년에, 원고 김□, 채□은 같은 과 1학년에 각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방송사라고 한다)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등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이며 피고 정□, 이□는 피고 방송사의 피용자 및 피고 방송사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의 담당기자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기사를 취재, 촬영, 편집, 보도하였다.

나. 피고 방송사의 보조프로듀서인 소외 이□은 1997. 3. 6. 원고 송□의 소개로 전화를 하는 것이라면서 □대 성악과 학회장인 소외 박□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소개한 다음 피고 방송사에서는 과거의 사발식이나 신고식 등 좋지 못한 인식이 남아 있는 신입생 환영회의 모습이 아닌 신세대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단합된 모습의 신입생 환영회를 취재하고자 하는데 성악과의 신입생 환영회를 그러한 모습으로 취재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신입생 환영회 일정을 문의하기에 위 박□은 다음날 오후 6시에 음악대학 내 오페라 연습실에서 신입생 소개식과 간단한 레크레이션이 있고 오후 7시경 문화회관에서 식사를 한 다음 오후 8시경 하이클레스 나이트 클럽에 갈 예정이라고 □대 성악과 신입생 환영회의 일정을 이야기하고 그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촬영후 방송하려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묻자, 위 이□은 '시사매거진 2580'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위 박□은 □대 성악과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취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다. 그 후 위 박□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자 다음날 15:00경 피고 정□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날 저녁 6시경부터 진행될 □대 성악과의 신입생 환영회 일정 중 음악대학 내 오페라 연습실에서 있을 예정인 신입생 소개식과 그곳에서의 간단한 레크레이션 행사만을 취재하도록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 정□은 위 박□에게 같은 날 18:00경 □대 음악대학 건물앞으로 피고 방송사 취재팀이 가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같은 날 18:30경까지도 피고 정□ 등의 취재팀이 위 장소에 오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위 박□은 □대 성악과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여 신입생 소개식과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마친 다음 □대 성악과 학생들을 이끌고 신촌문화회관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는 이미 취재팀이 먼저 도착하여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 정 []은 위 박 []과 약속하였던 내용과는 다르게 위 박 [] 및 성악과 학생들에게 식당에서 식사장면과 여흥장면을 촬영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여 위 박 []은 식당에서의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 정 [] 등의 취재진이 계속하여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겠으며 부정적인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테니 자신을 믿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명함까지 건네 주므로, 위 박 []과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대 성악과 학생들은 위 취재팀의 제의사항을 믿고서 위 취재진의 제의에 동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취재팀의 취재에 응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대 성악과 학생들은 다시한번 위 취재팀으로부터 취재장소는 식당으로 국한하고 술을 마시는 장면 등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피고 정 []은 성악과 학생들에게 합창과 장기자랑, 건배하는 장면의 연출을 요구하였고 또 촬영을 담당한 피고 이 []는 성악과의 대표곡인 '젊었다'의 합창장면과 오페라 연습실에서 이미 한 바 있는 몇가지 레크레이션 내용을 재연출한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마. 한편 피고 방송사는 1997. 3. 16. 21:40부터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하에 별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영을 하였다.

바. 원고 성 []은 서울 강남구 [], 용산구 [], 과천시 []에 아르바이트 솔리스트(solist)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후에 위 교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학교 교수 및 동료 학생들로부터 학교 망신을 시키고 다닌다는 핀잔을 들었고, 원고 송 []은 과천시 []에서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방송을 주선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님 및 성가대원들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으며, 원고 김 []는 인천 []에서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있었고 원고 채 []은 서울 []에서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위 방송후 동료 성가대원 및 학교 동료, 교수들로부터 위 원고들과 같은 내용의 비난을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

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둘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 자신들이 위 문화회관에서 한 여흥장면 및 식사장면이 방송되는 것을 승낙하기는 하였으나 신세대 대학생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신입생 환영회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방송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것이고 피고 정 []도 이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정 []은 원고들을 취재한 장면을 방송함에 있어 신입생 환영회와 관련하여 숨졌다는 모대학의 소위 백 [] 군의 사망사실과 [] 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의 막걸리 사발식 장면, 현란한 나이트클럽의 무대장면, 술에 취한 학생들이 길바닥에 쓰러지거나 여관으로 업혀가는 장면, 주로 유흥가 밀집장면, 지방대학 학생들의 철야음주형태,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때 숨진 소외 장 []과 관련된 고소장 등을 위 취재장면과 편집하여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으로 방송함으로써 이를 시청한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들을 포함한 [] 성악과 학생들이 마치 퇴폐적인 유흥에 물든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으며, 피고 이 []는 원고 채 [], 성 [], 김 []의 위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의 대화 장면을 그들의 동의없이 촬영하고 피고 정 []이 그들의 모습 및 음성을 그대로 방송

함으로써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 이□□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방송사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이 위와 같이 침해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나이, 신분, 원고들이 방송된 경위와 방송내용 및 방송시간, 방송 후의 결과 등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성□□은 금 6,000,000원, 원고 김□□, 채□□은 금 4,000,000원, 원고 송□□은 금 2,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성□□에게 금 6,000,000원, 원고 송□□에게 금 2,000,000원, 원고 김□□, 채□□에게 각 금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의 종료일인 1997. 3. 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7. 8.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없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7.

재판장 판사 박 태 범
판사 박 정 수
판사 김 선 일

보도내용

공포의 통과의례

정□□ 기자 : 요즘 대학마다 신입생 환영회가 한창입니다.

이른바 새내기들에 대한 신고식도 빠지지 않습니다.

신고식은 다름아닌 술자리입니다.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냉면그릇에 술을 마시는 사발식이 거행되기도 합

니다.

술을 처음 접하는 신입생들에게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량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다 보면 어치구니 없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학교

지난 3월 6일

(한손에는 우산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영정을 들고서 우는 여자의 모습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학생들을 비추면서)

여자 : “왜 아무도 모르는 것이야.”

정□□ 기자 : 한손에는 우산을, 한손에는 아들의 영정을 든 어머니가 대학교 교정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학생마다 아들이 어디갔냐며 울부짖습니다.

故 백□□ 군(신입생) 어머니

여자 : “왜, 학생들이 우리 아들 죽은 줄 모르고 있는 것이야.”

“우리아들, 우리아들”

“왜 학생들이 우리아들 죽은 줄 모르고 있는 것이야.”

“우리아들 여기와서 하루동안 공부하다 죽었는데 통틀어서 술먹고 이러다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야.”

(지나가는 학생들의 모습과 이어 어느 식당내부를 비추며)

정□□ 기자 : 지난달 26일 수강신청을 하러 나간 백□□ 군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막걸리병과 노래방 내부를 비추며)

정□□ 기자 : 선배들과 2시간 이상 술자리를 함께 한 후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노래방 건물옥상에 있는 전기 배전판을 비추면서)

정□□ 기자 : 일행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 □□□ 군은 술을 깨기 위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 갔습니다. □□□ 군은 이곳에서 고압선에 감전되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백군의 선배

당시 신입생 환영회 동석

정□□ 기자 : “어느 정도 마셨어요?”

“그때 소주하고 막걸리 같이 마셨나?”

학생 : “소주를 마셨거든요.”

정 [] 기자 : “주료”

학생 : “소주만 마셨어요.”

학생 : “1병 정도 마신 것 같아요.”

(3명의 학생들 모습)

정 [] 기자 : “선배들이 권하고 이라면 사실 거부하기 힘든 좌석들 아니에요.”

학생 : “그렇죠.”

정 [] 기자 : “선배들이 좀 권하는 것도 있었고.”

숨진 백군의 선배

당시 신입생 환영회 동석

(3명의 학생들 모습)

학생 : “우리가 뭐 큰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건 아니다.”

“못챙겨줘서 사고지 진짜 사람이, 사람 일이란 모른 거니까 진짜, 딱, 그 정도예요. 진짜”

“미안하기도 미안하죠.”

(강의실에서 영정을 보며 울고있는 백 [] 군의 어머니 모습)

정 [] 기자 : 그토록 소원했던 대학학부, 그 문턱을 밟기도 전에 숨진 백 [] 군 어머니는 단 하루라도 [] 이에게 대학강의를 들려주어야 했다며 빈 강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여자 : “대학은 왜가 왜, 이렇게 와보고 싶어 했는데 강의실에 앉아 공부, 엄마가 매일 시켜줄게 [] 아.

에그 배신자야...”

([] 문화식당에서 [] 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이 식탁에 쪽 둘러앉아 손뼉을 치며 ‘젊었다’ 는 노래를 합창하는 모습)

정 [] 기자 : 한 신입생 환영회입니다.

100여 명의 신입생과 선배들,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선배의 제의에 따라 모두들 한잔씩 비웁니다.

([] 대학교 응원구호 [] 를 외치고 다 함께 건배하는 모습, 성악과 2학년 여학생이 노래하고 다른 학생들은 손뼉치며 호응하는 모습을 내보내며)

(원고 김 [], 원고 송 []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원고 성 [] 을 차례로 비춘 뒤, 이어 소주병을 식탁에 돌리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정 [] 기자 :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소주병은 박스채로 계속 나옵니다.

(식당의 다른 모임의 학생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모습)

정□ 기자 : 같은 식당 뒷좌석에는 고등학교 동문 환영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 : “대학생이, 잠깐만요.”

(카메라를 의식한 듯, 카메라를 쳐다보며)

학생 “대학생 퇴폐문화, 그런거 아니죠?”

학생 : “아니랍니다. 건배!”

(중략)

(문화회관 식당앞에 서 있는 □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을 비추면서)

정□ 기자 : 밖으로 나선 신입생들, 상당히 취기가 오른 상태입니다.

정□ 기자 : “오늘 술은 한 어느 정도 하셨어요?”

학생(한□) : “밥 그릇으로요, 한, 두잔 정도 마신 것 같습니다.”

정□ 기자 : “밥 그릇으로?”

학생(한□) : “예, 지금 처음 마셔보는 겁니다.”

정□ 기자 : “오늘 처음 마셔보는 거예요?”

학생(한□) : “예”

(□대학교 학생들이 식당에 모여 신입생 환영회를 갖는 모습)

(막걸리를 통에 따르는 모습과 통에 든 막걸리를 냉면그릇으로 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 기자 : 아직도 사발식이 남아있는 서울 한 대학. 선배들의 시범으로 시작됩니다.

(시범을 보이는 4명의 학생이 냉면그릇에 든 막걸리를 마시고 나머지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는 장면)

학생들 :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정□ 기자 : 막걸리 찬가는 우렁차지만 내심 긴장된 표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학생 : “이때 주의점이”, “예, 아시죠”, “천천히, 꼬박꼬박 잘 드십시오.”

정□ 기자 : 먼저 자축인사

여학생 : “안녕하십니까!”, “민족□!”

(여러명의 학생들이 냉면그릇으로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

정□ 기자 : 드디어 사발식, 입맛을 다시면서 마시는 학생, 절반을 흘려 버리는 여학생, 고통의 표정이 역력한 신입생, 어쩔뻔 한그릇을 다 비워야만 합니다.

(사발로 막걸리를 마신 학생들이 쓰레기통에 술을 토해내는 모습)

정 [] 기자 : 마시고 나면 곧바로 토해냅니다.

(중략)

조 []

[] 대 경영 3년 반대표

학생(조 []) : “삐뚤어진 고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그리고 잘못된 사회구조를 가득 가슴속에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어떤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것을 먹고 그리고 선배들과 하나되는 자리에서 다 토해내는거죠.”

(정 [] 기자, 유흥가가 밀접해 있는 신촌의 한 도로에 서서)

정 [] 기자 : 과별로, 동문회별로, 서클은 서클대로, 3월 한달은 연일 신입생들을 위한 술자리가 넘쳐납니다. 밤 10시반, 이미 거나하게 취한 신입생들과 재학생들, 2차 3차를 향해 나섭니다.

(뒷골목 어둡침침한 조그만 식당에서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정 [] 기자 : 사발식을 끝낸 신입생 환영회, 이른바 뒤풀이가 이어집니다. 대학생들만의 특권인 듯 가히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현란한 조명이 돌아가는 ‘하이클레스’ 나이트클럽의 무대에서 많은 학생들은 춤을 추는 모습을 비추며)

정 [] 기자 : 나이트클럽도 신입생 환영회의 중요 장소입니다. 무대를 가득 채운 수백명의 학생들, 격렬한 춤이 계속됩니다.

(나이트클럽의 화장실에 있는 원고 송 [], 채 [], 김 [], 성 []을 차례로 비추면서)

정 [] 기자 : 화장실에는 여기저기 구토하는 신입생들로 붐빉니다.

(원고 김 []가 화장실의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

채 [] : “괜찮아?”

김 [] : “어지러워요...”

정 [] 기자 : 한쪽에서는 선배들이 기강을 세운다며 신입생들을 구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화장실 내부 모습)

성 [] : “학번이 우선이야? 나이가 우선이야?”

김 [] : “학번이 우선입니다. 학번이 우선입니다.”

성 [] : “학번이 우선이야.”

김 [] :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홍가 거리에서 학생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비추면서)

정□ 기자 : 밤 11시 반, 술자리를 마친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거리에서 남녀대학생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의 모습)

정□ 기자 :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칩니다.

(문이 닫혀진 의 한 상가앞에 쓰러져 있는 학생들을 비추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학생들은 길바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학생을 다른 학생들이 일으켜 세워 등에 업고 가는 모습)

정□ 기자 : 선배 등에 업혀가는 한 학생을 따라가 봤습니다.

대학가 주변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어느 여관의 간판과 여관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느 학생의 모습을 비추면서)

정□ 기자 : 신입생 환영회하고 이렇게 됐어요?

학생 : “예”

정□ 기자 : 얼마나 마셨길래?

학생 : “소주 3병...”

정□ 기자 :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 : “여관이요. 저희 단골여관에...”

정□ 기자 : “환영회때만 되면...?”

학생 : “예, 여관 잡아놓고 술취한 후배들 먼저 보내요.”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학생과 그 옆에 서있는 몇 명의 학생들의 모습)

(중략)

설□

대학가 주변 상인

(의 한 도로상에 서서)

설□ : “밤새도록 2시 3시까지 술을 먹고, 온 길에 오바이트하고 난리났어.”

“또 미니스커트를 입고서 어깨에다 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사람도 가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술에 취해 거리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여학생 등 학생들의 모습을 비추며)

정□ 기자 : 지방대학은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객지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배품에 몸을 맡긴 여학생, 이미 인사불성입니다.

정 [] 기자 : 아니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여학생 : “아니 많이 마신거 아니에요. 애가 한 잔 마시고 취해서 이렇죠.”

(술에 취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학생)

정 [] 기자 : 우는 여학생

(엎혀가는 학생)

정 [] 기자 : 하숙집으로 엎혀가는 학생, 천태만상입니다.

정 [] 기자 : 자정 가까운 시간. 3차를 가기 위해 몰려있는 신입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술 좀 하신 것 같아요?

여학생 : “예”

정 [] 기자 : 어느 정도 했어요?

여학생 : “소주 2병 정도요. 처음 먹는 건데 술이 좀 센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정 [] 기자 : 오늘 한 몇시 정도까지 마실 거예요?

학생 : 오늘 집에 안들어갈 생각이예요.

(중략)

(현란한 간판들이 있는 거리에 남녀대학생이 부둥켜 안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비추면서)

정 [] 기자 : 신입생 환영회 때문에 누구보다도 속상한 건 부모들입니다.

특히 딸자식을 둔 학부모들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 []

신입생 어머니

김 [] : “아 예 때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12시 한 10분, 15분 되니까 아주 들어오기만 해봐라 죽인다. 이제는 문도 안열어 줘가지고 반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냉면그릇에 소주 2병을 따르는 모습과, 흐릿한 모습으로 냉면그릇 가득 담긴 소주를 마시는 학생들의 모습)

정 [] 기자 : 지난해 []대 신입생 환영회 때 숨진 장 [] 군. 장군은 선배들이 냉면그릇에 따라주는 소주를 세그릇이나 마셨습니다. 무려 소주 4병반을 단숨에 마셔버린 것입니다.

김 []

故 장 [] 군 어머니

김 [] : “나는 대학교를 처음 보냈기 때문에, 그 마구 강제적으로 맥이는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 나는 야가 안 묵는다 하문 내가 안묵는다 허문 안묵는 줄 알고 알았지 그렇게마 공포스럽게 그리 참말로, 선후배관계는 생각도 못했지”

(고소장의 내용을 비추며)

정 [] 기자 : 얼마전 장군의 부모는 총장과 선배학생 5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상장을 보고 울부짖는 부모 모습)

정 [] 기자 : 1년이 지났건만 슬픔은 더해가고, 잠조차 이루지 못한다고 오열합니다.

(고 장 [] 군의 사진을 비추며)

김 [] : “지금 역수로 보고싶고”

“신학기가 되어갔고 다른 아들 대학에 붙었다 어땠다 그래도 그렇게 되기 쉽고”

([] 대학교 교정과 학생회관 앞에 있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노래동아리 회원들이 신입회원 모집을 위해 교정에서 합창하는 모습을 이어 비추면서)

정 [] 기자 : 3월 신학기초. 상아탑에 봄은 싱그럽기만 합니다.

신입생들의 표정은 밝고 교정은 활기찬 모습입니다.

([] 대학교 교정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과 그곳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비추면서)

정 [] 기자 : 게시판에 나붙은 신입생 환영회, 대학만이 누릴 수 있는 추억과 낭만의 시간어요, 공간인 것입니다.

(다시 문화회관 앞 거리에서 손뼉을 치며 ‘젊었다’라는 노래를 합창하는 [] 대학교 성악과생들의 모습을 비추면서)

정 [] 기자 : 그러나 대학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에게 1차, 2차, 3차 갈 때까지 가보자는 술문화로 상아탑은 멍들고 있고, 대학가는 이미 유흥의 본산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의 간판을 비추면서)

신입생 환영회는 과연 젊음과 지성의 향연인가 아니면(다시 문화회관 식당앞에서 합창하고 있는 원고 등 [] 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의 모습을 비추면서) 공포의 통과례일 뿐인가?

그 답은 대학생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식날 꽃다발을 든 어느 학생의 사진과 어느 거리에서 술이

취해 쓰러져 있는 학생을 다른 학생들이 일으키는 모습을 비추며)

학부모 : “이제 마지막 사진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마지막 사진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대학 안보냈죠. 그간놈의 대학이 뭔데...”

2심 判 決 文

사 건 : 97나4315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성

서울 용산구

2. 송

서울 동대문구

3. 김

인천 연수구

4. 채

서울 영등포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이득렬

2. 정

3. 이

피고 2., 3.의 주소 : 위 같은 곳.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변론종결 : 1997. 12. 9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 주 문 :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7. 3. 16.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성 []에게 금 14,000,000원, 원고 송 []에게 금 18,000,000원, 원고 김 [], 채 []에게 각 금 1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7. 3. 16.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2.항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고, 다만 그 중 제4면 제2행 및 제11행의 “이 []”을 “이 []”으로, 같은 면 제3행의 “학회장인”을 “4학년 학생으로서 같은 과 학생의 대표 역할을 하는 학회장인”으로 각 정정한다.

2.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프로그램은 그 무렵 신입생활영회에서 대학신입생이 과음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함에 따라 신입생활영회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짚어 본다는 의도로 제작되었고, 위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의 원고들의 행동은 미리 그 취재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취재진이 우연히 목격하게 되어 촬영한 것이며, 위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라도 그 중 원고들의 화장실에서의 모습은 화면이 어두워서 원고들임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고, 위 프로그램은 피고 방송사의 대표적인 공익적 보도프로그램으로서 그 공익적 기능이 개인적 사익의 일부 침해로 인하여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위 프로그램의 공익성이 그 보도로 인한 원고들의 사익의 침해보다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프로그램을 제작, 보도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의 목적과 내용상 원고들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그대로 방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들이 그 촬영 후에라도 원고들로부터 그 방영에 관한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위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진행과 내용에 비추어 그 방영으로 인하여 원고들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으리라는 것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및 초상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부분에 관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항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성 []에게 금 6,000,000원, 원고 송 []에게 금 2,000,000원, 원고 김 [], 채 []에게 각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불법행 위일인 1997. 3. 16.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같은 해 8.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 13.

재판장 판사 이 용 응
판사 이 기 택
판사 박 형 명



‘한통노조의 북한조종설’을 언급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박 총장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이를 보도한 신문사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지방법원 1997. 5. 2.자 판결 (95가합94047)
서울고등법원 1998. 1. 21.자 판결 (97나23466)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998년 1월 21일 [] 노조가 95년 파업당시 “노조원들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인 것은 북한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는 박 [] 전 [] 대총장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씨와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씨는 원고들에게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당시 노조원들의 농성을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노동조합은 물론 그 핵심간부들이 북한의 조종을 당한 것처럼 그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박씨의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의 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각이유를 밝혔다.

원고들은 1995년 파업 당시 주요 중앙일간지가 1995년 6월 15일자 등으로 “한통 노조원 성당-사찰 농성 북한서 사전 조종했다”는 제하로 당시 [] 대 박 [] 총장의 발언을 일제히 보도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1995년 6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95서울중재166~170)을 했다. 경향신문 등은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 반론보도를 게재하여 원고들은 중재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중앙일보(95서울중재169)는 보도문의 게재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불성립처리됐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1심법원은 박씨는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들과 피고 박씨는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서울지방법원 1995년 9월 30일자 결정 95카기3524, “언론중재” 95년 겨울호 165~167면 참조)

박 [] 전 [] 대총장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씨와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박씨는 원고들이 청구한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고 중앙일보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당시 노조원들의 농성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는 구

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농성에 참가했던 노조원들이 마치 북한의 구체적 지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고, 노조가 농성노조원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친북단체인 것처럼 비치게 해 노조 및 노조원들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만큼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노조원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들이 박씨의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재판부는 “기사내용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라며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박씨의 발언 내용을 게재함에 있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그 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의견을 개입시킨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가 박씨의 발언을 빌어 원고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회지도층 중 일부의 의견을 드러냄으로써 공정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사 게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원고들은 95년 파업 당시 주요 중앙일간지가 1995년 6월 15일자 등으로 “ 노조원 성당-사찰 농성 북한서 사전 조종했다”는 제하로 당시 대 박 총장의 발언을 일제히 보도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1995년 6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95서울중재166~170)을 했다. 경향신문 등은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 반론보도를 게재하여 원고들은 중재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중앙일보(95서울중재169)는 보도문의 게재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불성립처리됐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5년 9월 30일 인용결정을 받아 낸 바 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95가합9404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공사 노동조합
 서울 종로구
 대표자 조합장 김호선
 2. 도
 안양시 석수1동

3. 이 []
서울 동대문구 []

4. 박 []
군포시 []

5. 박 []
군포시 []

6. 정 []
서울 노원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이상경, 김기중, 안상운

피고, 항소인 : 1. 박 [] (朴 [])
서울 마포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2.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서울 중구 []

대표이사 홍석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변론종결 : 1997. 4. 4.

주 문 : 1. 피고 박 []은 원고들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6. 15.부터 1997. 5. 2.까지는 연 5푼, 1997. 5. 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원고들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6.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호증, 강제2호증, 강제3호

증, 강제4호증의 1 내지 6, 강제6호증의 1 내지 12, 강제7호증, 강제8호증, 을제2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심 [] , 이 [] , 한 [] 의 각 증언(증인 []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원의 [] 대학교 []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한실의 일부증언, 증인 최 [] 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가. 원고 [] 공사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정부투자기관인 []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만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2. 1. 6. 설립되어 위 공사 소속 근로자 약 62,000명 중 원고 도 [] , 이 [] , 박 [] , 박 [] , 정 [] (이하 '위 원고들' 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약 52,000명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도 [] 는 원고 노동조합의 교육홍보실장, 원고 이 [] 은 여성국장, 원고 박 [] 은 임금국장, 원고 박 [] 는 교섭국장, 원고 정 [] 은 서울지방본부 사무국장으로서, 위 원고들은 모두 원고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들이었다.

다. 원고 노동조합은 1995. 5. 2.부터 소외 공사와 1995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검찰이 1994. 7.과 같은 해 12월경에 있었던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농성사건과 관련하여 뒤늦게 원고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위 원고들을 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려고 하자, 위 원고들은 쟁의와 무관한 사유로 조합간부들을 대량 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투쟁하던 중 당시 조합장이던 소외 유 [] 과 위 원고들 및 다수의 조합원들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곤란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일부 조합원들을 보내 그곳에서 농성을 전개함으로써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의하고, 위 원고들과 원고 노동조합의 다른 간부 등 총 13명이 1995. 5. 22.부터 위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는데, 같은 해 6. 6. 정부가 경찰력을 투입해 위 농성 중이던 노조간부들을 모두 연행하였다.

라. 피고 박 [] 은 당시 [] 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던 중이었는데, 위 원고들의 위 농성사태가 있는 뒤인 1997. 6. 14. 춘천에 있는 [] 대학교에서 위 대학 내 교수 등을 초청하여 개최된 수요공개세미나에서 '세계화대비 인성 및 사상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는데, 이 때 위 피고는 '이번에 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다', '북한의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 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나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는 정치를 잡기 위해 6·27. 선

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지자제를 목표로 27일 전에 남한 내 동조세력을 규합해 연대 총파업을 주도하고 오는 8월 15일에는 요인암살 및 중요 기물파괴 등을 계획하고 있다' 는 등의 말을 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일간신문인 '중앙일보'를 발행하고 있는 바, 1995. 6. 15.자 중앙일보 1면 중간부분에 '노조원들의 성당-사찰 농성, 북한에서 조종했다'라는 대제목과 '박 [] 총장'이라는 소제목하에 별지 기사내용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위 피고 박 []의 위 발언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2. 피고 박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 []의 위 발언은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위 농성을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위 성당과 사찰에서 직접 농성에 참가했던 원고 도 [], 이 [], 박 [], 박 [], 정 []이 마치 북한의 구체적 지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고 원고 노동조합은 위 원고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친북단체인 것과 같이 비쳐지게 하여 원고 조합 및 나머지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동시에 실추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강제10호중의 1 내지 강제17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의 농성이 있기 전인 1994. 7.경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여 예정되어 있던 '남북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김일성 장례식에의 조문참여 문제 등으로 정치적 및 사회적 논쟁이 한창 일어나는 등 사회적으로 이념적 논쟁이 격화되던 시점이었는데,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천주교 사제임과 동시에 국내의 명문 대학교 총장으로서 사회적 명망이 있던 피고 박 []은 1994. 7. 18. 청와대 오찬모임에서 "... 북한에서는 UR비준반대와 미군기지 반납 서명운동을 벌이라는 지시를 이미 팩시밀리를 통해 내려놓고 있다.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이 있고, 사노맹 뒤에는 사로청, 사로청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파문을 불러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1994. 7. 19.에도 "...내가 해외를 돌아다니며 보니까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이 한 2, 3백명 된다. 베를린에도 한 20명 있고, 미국에도 있다... 유사시 요인 암살을 위한 테러조직이 있다... 학생들은 해외 6개 지역의 범민련 본부에서 팩시밀리를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1994. 8. 1.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에 초청돼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한국에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된 사례도 있다. 그가 누구지는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며, 1994. 8. 11.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LA지역회의 강연에서도 “주사파는 전체 학생의 1 내지 2%에 지나지 않지만 영향력이 매우 크며 교수들 가운데도 주사파가 있다”고 하고, 1994. 8. 13. 미국 LA 한국일보 미주본사와의 인터뷰에서도, “학원뿐만 아니라 종교, 언론, 정당에도 주사파가 침투해 있다. 일부 야당에는 주사파가 7백 50명이나 암약하고 있으며…”라고 하였고, 1994. 8. 19. 동아일보와의 회견에서도 “...여당에도 주사파가 있다... 750명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라고 말하는 등 각종 공식석상에서 북한 김정일의 사주를 받아 행동하는 이른바 “주사파”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여 해온 사실, 이에 따라 검찰, 국가안전기획부 등 수사기관은 그 ‘주사파’ 들을 색출·검거하기 위하여 수사에 나서기도 하였고, 실제로 1994. 10. 6. 대학 교수 2명이 위 피고가 지칭한 ‘북한 장학금을 받은 교수’ 라는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 조사받다가 하루만에 풀려나기도 하는 등 피고의 위 발언 내용으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발생하기도 한 사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당하는 경우 그 특정인은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인으로부터도 반사회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적 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이 사건 발언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던 사실, 소위 []공사는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규모가 방대한 사업체이고 원고 노동조합은 위 기업의 근로자의 대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대규모 노동조합의 하나이어서 당시 원고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위 공사 및 정부와 마찰을 빚어 오다가 급기야 경찰력 투입이 곤란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들어가 장기적인 농성에 돌입하기에 이르고, 정부가 위 농성을 진압함에 있어 경찰력 투입이 급기시되어 왔던 위 성당과 사찰에 경찰병력을 투입하기에 이르러 이를 두고 정부와 위 각 종교단체와의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는 등 원고 노동조합의 위 농성사태의 전개와 그 해결과정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이와 같은 위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정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가 한 일련의 발언들의 내용과 표현 방식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파장의 정도, 위 피고의 위와 같은 발언들로 인하여 현실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한 바 있음에도 위 피고가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발언을 반복한 점, 위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이 행하여진 시기의 사회 상황, 당시의 위 농성사태의 전개과정,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집중정도, 위 피고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은 그간의 발언내용들과 달리 특정의 단체와 그 간부들을 지목하여 북한이 그들을 조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피해의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한 반면에, 위 발언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해를 입은 원고 노동조합의 규모와 조합원들의 수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위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게재한 위 기사 내용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로서 위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내용 또한 피고 박□의 발언 내용을 아무런 논평없이 사실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진실되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박□이 위 공개세미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 회사가 게재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도 당시 위 세미나에서 피고 박□이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사는 위 발언 내용의 진위여부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진실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기사를 게재한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 박□이 천주교 사제임과 동시에 □대학교 총장으로서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주사과' 관련 발언들로 인하여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켜 온 장본인이었던 점, 당시 원고들의 위 농성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었고, 위 농성이 진압된 이후에도 경찰력을 성당과 사찰에 투입했다는 점에 관하여 정부와 종교기관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어 있던 상황에서 천주교 사제로서 위와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위 피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사회여론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는 점, 피고 회사는 위 발언 내용을 게재함에 있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그 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의견을 개입시킨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위 기사를 게재한 행위는 위 피고 박□의 발언을 빌어 원고 노동조합 및 위 원고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위 피고와 같은 사회적 지도층 중 일부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의견을 드러냄으로써 위 사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은 그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기사 내용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실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위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하겠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박□은 원고들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5. 6.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7. 5.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 날인 1997. 5. 3.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5. 2.

재판장 판사 서 태 영
판사 이 정 식
판사 한 소 영

기사내용

□□대 박□ 총장은 '이번에 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총장은 14일 □□대 수요세미나에 참석해 '세계화 대비 인성 및 사상교육'이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 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총장은 또 '나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후, '북한이

이번에는 정치를 잡기 위해 6. 27.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지자제를 목표로 27 일 전에 남한내 동조세력을 규합해 연대 총파업을 주도하고 오는 8월 15일에는 요인 암살 및 중요 기물파괴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박총장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며 '대학 내 주사파들이 지난 해에 비해 양적으로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각계각층에 더 깊숙이 침투해 각종 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국대학 학생회장의 90%' 라고 주장했다.

2심 判 決 文

사 건: 97나2346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공사 노동조합

서울 종로구 []

대표자 조합장 김호선

2. 도 []

안양시 []

3. 이 []

서울 동대문구 []

4. 박 []

군포시 []

5. 박 []

군포시 []

6. 정 []

서울 노원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항소인: 1. 박 [] (박 [])

서울 마포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56인

(별지 3. 대리인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2.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석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종무

변론종결 : 1997. 12. 17.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7. 5. 2. 선고, 95가합94047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의 피고 박[]에 대한 부분 중, 같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6. 15.부터 1998. 1. 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같은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같은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박[]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박[]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같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원고들에게, 피고 박[]은 금 7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금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5. 6. 1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고들의 항소 :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원고들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6.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박[]의 항소 : 원심판결 중 피고 박[]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박[]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제6호증의 2, 5, 10, 11,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 을 제7호증의 1, 7, 9, 13, 14, 21, 23, 24, 43, 44, 50,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심[], 한[], 이[], 당심증인 양[], 정[]의 각 일부 증언, 원심법원의 []대학교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7호증의 1, 3, 8, 9, 14, 21, 24의 다른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최 [] 및 위 증인 심 [], 한 [], 양 [], 정 []의 다른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공사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정부투자기관인 []공사(이하 '한국통신'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약 62,000명 중 약 52,000명을 구성원으로 한 노동조합이고, 피고 박 []은 []대학교 총장으로 재임 하던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피고 중앙일보'라고 한다)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일간신문인 '중앙일보'를 발행하고 있다.

나. 원고 도 []는 원고 노동조합의 교육홍보실장, 원고 이 []은 여성국장, 원고 박 []은 임금국장, 원고 박 []는 교섭국장, 원고 정 []은 서울지방본부 사무국장으로서, 모두 원고 노동조합의 핵심간부들이었다.(이하, 원고 도 [], 이 [], 박 [], 박 [], 정 []을 '원고 도 [] 외 4인'이라 한다)

다. 원고 노동조합은 1995. 5. 2.부터 []과 1995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마찰을 빚던 중, 검찰이 원고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려고 하자, 쟁의와 무관한 사유로 조합간부들을 대량 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투쟁하였는데, 당시 조합장이던 소위 유 []과 원고 도 [] 외 4인 및 다수의 조합원들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곤란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농성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도 [] 외 4인을 비롯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13명이 1995. 5. 22.부터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들어가 농성을 하였으나 1995. 6. 6. 경찰력의 투입으로 연행되어 모두 구속되었다.

라. 피고 박 []은 []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던 1994. 7.경부터 각종 공식석상에서 '북한 김정일의 사주를 받아 행동하는 이른바 주사파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켜 왔는데, 원고 도 [] 외 4인을 비롯한 노조원 13명의 농성 사태가 있는 직후인 1995. 6. 14.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춘천시 소재 []대학교에서 개최된 수요세미나에서 '세계화대비 인성 및 사상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북한의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 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나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는 정치를 잡기 위해 6. 27. 선거를 기점으로 본

격화되는 지자제를 목표로 6월 27일 전에 남한 내 동조세력을 규합해 연대 총파업을 주도하고, 오는 8월 15일에는 요인암살 및 중요 기물파괴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대학 내 주사파들이 지난해에 비해 양적으로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각계 각층에 더 깊숙이 침투해 각종 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국대학 학생회장의 90%가 주사파다” “정보화시대에 북한은 이미 남한 내 어느 집이 쌀밥을 먹고 어느 집이 보리밥을 먹고 있는지 알고 있을 정도로 북한세력이 남한에 침투해 있다” 라고 말하고, 북한이 각종 노동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이번에 [] 노조원들이 명동성당, 조계사에 들어가 농성한 것도 북한의 조종을 받은 것이냐”라는 참석 교수 1인의 질문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면서, “교회와 사찰을 적화통일에 이용하려고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분별을 해야 한다”, “이번 명동성당과 조계사 사건을 이벤트로 하여 북한이 종교로 하여금 정부와 싸우고 계급투쟁의 앞잡이가 되도록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지도자들의 분별이 좀 미비한 것 같다”, “공권력을 넣은 것은 잘 넣었다. 교회와 정부를 싸움 붙이려는 자들이었다” 등의 말을 하였다.

마. 위 수요세미나는 [] 대학교 부설 []원 소속 회원들이 1990. 4.경부터 격주로 수요일 12:00경에 오찬을 겸해 개최해 오던 것으로서 주로 위 대학교 교수들과 지역인사, 언론인 등이 참석해 왔는데, 피고 박 []의 강연이 있던 위 1995. 6. 14.의 세미나는 []대학교 내 전교수 및 언론사가 초청되어 교수들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당시 피고 박 []은 언론사 기자가 참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그 자리에 참석 중이던 연합통신 소속 심 []기자가 피고 박 []의 강연내용을 취재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고, 그 취재수첩에는 ‘주사파, 작년 비해 양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질적으로 더 깊숙이 침투’, ‘70년 후반부터 대학, 노동, 재야운동에 완전히 잡고 있다’, ‘사노맹, 지역사노에서 노동운동 다 잡고 있다’,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이북은 어느 집이 쌀밥, 보리밥 먹고 있는지 다 안다’, ‘전국대학 학생회장들 90%...’, ‘언론에도 침투’, ‘정치를 잡기 위해, 지자제, 6·27전 연대 총파업’, ‘8·15 요인암살, 중요 기물파괴’라는 기재와 함께 ‘성당 들어갔던 것, 이북이 뒤에서 조정... 정부와 싸움 붙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심 []기자는 위 세미나 당일 16:00경 별지 1. 기재와 같은 통신문을 작성하여 송신하였고, 그 통신문을 접한 피고 중앙일보는 같은 날 위 심 [] 및 []대학교 관계자에게 피고 박 []의 발언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날인 1995. 6. 15.자 중앙일보 1면 중간에 “노조원들의 성당·사찰 농성, 북한에서 조종했다. -박 []총장”이라는 제

정일이 있다”, “...내가 해외를 돌아다니며 보니까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이 한 2, 3백 명 된다. 베를린에도 한 20명 있고, 미국에도 있다... 유사시 요인 암살을 위한 테러 조직이 있다... 학생들은 해외 6개 지역의 범민련 본부에서 팩시밀리를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 “북한에 초청돼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한국에 돌아와 대학교수가 된 사례도 있다. 그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다...”, “주사파는 전체 학생의 1 내지 2%에 지나지 않지만 영향력이 매우 크며 교수들 가운데도 주사파가 있다”, “학원뿐만 아니라 종교, 언론, 정당에도 주사파가 침투해 있다. 일부 야당에는 주사파가 7백 50명이나 암약하고 있다...”, “여당에도 주사파가 있다... 750명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는 등의 발언을 계속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박홍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의 발언으로 특정인이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당하는 경우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점,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던 중 수사기관이 조합간부들을 구속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보름 동안 농성하기에 이르렀고 그 진압 과정에서 명동성당에 최초로 경찰력이 투입되어 정부와 각 종교단체간에 갈등이 야기되었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 박[]은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농성사태도 북한이 노동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교회와 정부를 싸움 붙이려 한 것의 일환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여 그 발언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위 농성참가자 13명의 일원이던 원고 도[]의 4인은 물론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도의 좌절감과 충격을 받은 점, 그러나 한편 위 수요정기세미나는 참석자들이 주로 []대학교 교수들로서 대상범위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었고, 피고 박[]은 세미나 참석교수 1인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위 농성사태에 대해 위와 같이 언급하기에 이르렀던 점, 피고 박[]은 당시 언론사 기자가 참석한 줄은 모르고 있었던 터여서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될 줄은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원래 위 세미나의 초청대상에는 언론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기자에 의해 피고 박[]의 발언이 언론매체에 보도된 점, 피고 박[]은 위 발언이 언론매체에 보도된 직후 즉시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그 후 위 발언을 보도했던 언론사들 중 대다수가 원고들의 반론문을 게재한 점, 기타 위 농성사태의 전개과정 및 결과, 피고 박[]의 위 발언의 내용 및 본래의 의도, 전체적인 흐름과 상황, 피고 박[]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재산상태,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조합원들의 인원수, 원고 도[]의 4인의 지위, 연령, 원

고들의 피해의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박□은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피고 중앙일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중앙일보가 별지 2. 기사내용 기재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중앙일보는, 위 기사 보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도 피고 박□이 그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것을 아무런 논평 없이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진실되므로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박□은 1994. 7.경 이래 '사회 각계각층에 주사파가 침투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 왔고, 한편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위 농성사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는데, 위와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피고 박□이 위 수요세미나에서 "북한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 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발언에 이어,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위 농성사태도 북한이 노동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교회와 정부를 싸움 붙이려 한 것의 일환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던 것인 바, 이는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있는 내용에 관한 발언에 해당하므로 피고 중앙일보가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것은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피고 박□이 한 위 발언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듣는 사람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중앙일보가 별지 2. 기사내용 기재와 같이 피고 박□이 그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논평 없이 그대로 게재한 것 자체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보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중앙일보의 위 기사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기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중앙일보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박□은 원고들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5. 6. 15.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준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1.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원재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중앙일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피고 박□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용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중앙일보에 대한 부분은 당심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 21.

재판장 판사 강 병 섭
판사 조 인 호
판사 최 영 룡

별지1 통신문

〈지방안테나〉 『노조원들 성당 들어간 것 북한조종』

『이번에 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다.』 □대 박 □총장은 14일 □대 수요세미나에 참석해 「세계화 대비 인성 및 사상교육」이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북한의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 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총장은 또 「나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후, 「북한이 이번에는 정치를 잡기 위해 6. 27.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지자제를 목표로 6월 27일 전에 남한 내 동조세력을 규합해 연대 총파업을 주도하고 오는 8월 15일에는 요인암살 및 중요 기물파괴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총장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고 시종일관 강조하면서 「대학 내 주사파들이 지난 해에 비해 양적으로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각계각층에 더 깊숙이 침투해 각종 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국대학 학생회장의

90%가 주사파」라고 주장했다.

박총장은 「정보화시대에 북한은 이미 남한 내 어느 집이 쌀밥을 먹고 어느 집이 보리밥을 먹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북한세력이 남한에 침투해 있다」고 강조했다.

별지2

기사내용

□대 박□총장은 「이번에 노조원들이 성당과 사찰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총장은 14일 한림대 수요세미나에 참석해 「세계화대비 인성 및 사상교육」이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공산세력이 이미 남한 내 학생, 노동, 재야,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총장은 또 「나는 북한의 정보를 구하는 루트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후, 「북한이 이번에는 정치를 잡기 위해 6. 27.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지자제를 목표로 6월 27일 전에 남한 내 동조세력을 규합해 연대 총파업을 주도하고 오는 8월 15일에는 요인암살 및 중요 기물파괴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총장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며 「대학 내 주사파들이 지난해에 비해 양적으로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각계 각층에 더 깊숙이 침투해 각종 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전국대학 학생회장의 90%가 주사파」라고 주장했다.

별지3 대리인 목록

(피고 1. 박□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이재성, 정기승, 이진우, 이기창, 이종순, 박동현, 정성철, 오제도, 오희택, 용태영, 황해진, 황규범, 강달수, 강용구, 김공식, 김동화, 김창수, 김상철, 김유후, 김태경, 나석호, 문상익, 배명인, 박상기, 박재명, 박정근, 박천식, 변무관, 선우종원, 손량, 신창동, 신호양, 안범수, 양현, 오탁근, 우영재, 유택형, 윤태방, 이상곤, 이상규, 이승빈, 이양우, 이장근, 이종남, 이종원, 이창우, 인정현, 장동완, 장봉선, 정승화, 정형근, 지익표, 채훈천, 최석봉, 최성근, 하창우. □

원고가 호화사교클럽을 조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부산지방법원 1997. 3. 5.자 판결 (95가합18232)

부산고등법원 1998. 2. 26.자 판결 (97나3873)

事實概要

부산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진봉진 부장판사)는 1998년 2월 26일 이벤트 기획업자인 이 [] 씨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문제의 기사는 원고가 부유층 미혼 남녀만을 골라 호화사교클럽을 조직하여 초호화연회를 베풀고, 귀족모임을 피하는 듯한 부정적 인상을 주고 있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할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가 전반적으로 진실한 사건이라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기사 성격상 취재기자가 사실확인을 생략하고 기사를 작성하여야 할 만큼 신속을 요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취재기자가 신문광고 내용만을 토대로 하여 추측과 과장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일보는 1995년 6월 9일자 “호화사교클럽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호화사교클럽이 새롭게 등장하여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거액의 입회비를 받고 미혼 남녀회원을 공개모집해 사치풍조와 계층간 위화감을 부추기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으나(95부산중재15), 피신청인이 “월 참가비를 잘못 보도한 것은 인정하나 가입비가 130만원이나 되고, 가입자격에 제한을 뒤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것은 사실인 만큼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 중재불성립되었다.

그러자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1심법원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 95가합18232 정정보도

원 고 : 이 [] (李 [])

부산 수영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호

피 고 : 부산일보(釜山日報) 주식회사

부산 동구 []

대표이사 정한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성래

변론종결 : 1997. 2. 19.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4.부터 1997. 3. 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8,529,565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3.자 청구 취지정정및원인보충서 송달일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2호증(부산일보 신문기사 및 광고), 강제3호증의 1(부산일보 광고), 강제3호증의 2(조선일보 광고), 3(부산매일 광고), 4(국제신문광고, 을 제1호증과 같다), 5(부산경제신문광고), 강제5호증의 1, 2(각

사업자 등록증), 갑제6호증(팸플릿), 갑제7호증의 1 내지 3(각 세금계산서), 4, 5(각 거래명세서), 갑제8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각 계약서), 갑제9호증(서신), 갑제11호증의 1 내지 4(각 출근부), 갑제14호증의 2 내지 4, 갑제16호증의 1 내지 4(각 간이세금계산서), 갑제15호증의 1(관리비납입영수증), 2,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8호증의 1 내지 4(각 영수증), 갑제19호증(신문), 갑제22호증(인증서), 갑제23호증(녹취문), 을제2호증(신청서)의 각 기재, 증인 장 [] , 백 [] 의 각 증언(증언 백 []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원의 주식회사 [] [] 호텔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백 []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 라는 상호로 이벤트기획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부산일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일간지인 부산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나. 피고회사는 위 부산일보 1995. 6. 9.자 제31면(사회면)에 “호화사교클럽 물의”라는 제목으로 “거액 가입비… 부유층 남녀 모집”이라는 부제를 달고 “최근 외국사교클럽과 유사한 친교클럽을 운영하는 업소가 부산에 등장,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거액의 입회비를 받고 미혼 남녀 회원을 공개 모집해 사치풍조와 계층간 위화감을 부추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 호텔 객실에 사무실을 차린 [] 회사는 외국의 유명 사교클럽을 흉내낸 자칭 ‘ [] 클럽’이란 사교클럽을 조직, 20 내지 30대 남녀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이 업소는 부산 [] 호텔을 협조업체로 등장시켜 신용도를 높인 뒤 회원들로부터 연회비 1,300,000원과 월 참가비 330,000원 등을 받고 매월 1회씩의 초호화 연회를 베풀 예정이며 연회에는 유명 연예인까지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호텔 객실인데도 버젓이 업소간판까지 내걸고 있는 이 회사는 전화문의를 통해 일단 고객을 선별,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상대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클럽회원으로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계층에 한해 자격을 한정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재산과 미모 등을 주요 선발기준으로 정해 귀족모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클럽회원의 비밀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호적초본과 졸업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 등 각종 신상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과 대구 지역에도 지사를 개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업소의 관계자는 하루 수백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다.”라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4단으로 게재하고, 같은면 하단에는 5단 전체의 크기로 “산호빛 사연을

담은 6월의 해변에서 [] 클럽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
[] 클럽은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신사숙녀들의 프라이드를 지켜드리는 격조높은 사교모임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즐겨 찾는 품격있는 사교모임을 접할 수 없었던 한국의 미혼 지성인들을 위하여 [] 클럽이 여러분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라는 등 위 클럽을 []의 명의로 선전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 중 진실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가 [] 호텔 객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업소간판을 내걸고, 위 호텔을 협조업체로 등장시켰다는 부분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 이었고, [] 호텔 객실에 사무실을 차린 것은 아니며, 다만 위 호텔 객실을 연락처로 사용하였고, 호텔 객실에 회사의 업소간판을 내걸지 않았으며, 위 호텔을 협조업체로 등장시키지도 않았다.

(2) 거액 가입비, 위 클럽의 회원들로부터 연회비 1,300,000원과 월 참가비 금 330,000원 등을 받는다는 부분

위 클럽의 연회비가 금 1,300,000원인 점은 사실이나, 월 참가비는 금 130,000원이다.

(3) 위 클럽의 행사에 유명 연예인까지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라는 부분

위 클럽 행사의 원만한 진행자로서 유명 연예인을 2명 참여시킬 계획이었다.

(4) 부유층 남녀 모집, 위 회사가 클럽회원으로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계층에 한해 자격을 한정하고 있다는 부분

위 회사는 클럽회원의 자격을 특별히 한정해 두지는 않았고, 신문광고 등에서 의사, 교수, 법조인, 방송인, 건축, 세무, 설계, 회계사, 공·관기업체, 상장기업체, 기타 전문직 종사자로서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삶에 자신을 가진 사람들은 위 클럽에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

(5) 여자의 경우 재산과 미모 등을 주요 선발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부분

위 회사가 클럽 회원을 뽑을 때 여자의 경우에 재산과 미모 등을 주요 선발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남녀 구분 없이 위 클럽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할 때 입회신청서의 자기소개(Self Instruction)란에 신장, 눈의 색상, 머리카락색, 체중, 쌍꺼풀, 곱슬여부, 혈액형, 시력, 특기, 취미, 종교 등을, 환경란에 가족관계, 주거의 형태, 부모의 직업, 월소득액, 동산 및 부동산 소유 등을, 직업 및 경력란에 근무처, 부서,

직위, 근무경력, 연봉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6) 클럽회원의 비밀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호적초본과 졸업증명서, 소득세 납세필증 등 각종 신상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

위 회사는 신문광고나 클럽안내 책자 등에서 회원의 신상에 관한 모든 자료는 탑 시크리트(TOP SECRET)로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고, 위 클럽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로서 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졸업 증명서(재학증명서), 반명함판사진 2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득세납세필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라. 이 사건 기사는 피고회사의 기자인 소외 백 []이 작성하였는 바, 위 백 []은 1995. 6. 5.자 부산일보 제1면 하단에 5단 전체의 크기로 위 클럽에 관한 첫 번째 광고가 실린 후 위 클럽에 관한 독자들의 관심이 잇따르자 위 클럽을 취재하기로 마음 먹고 위 [] 회사를 방문하지 않은 채 그 직원인 소외 정 []에게 전화로 위 클럽에 가입하기 위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클럽에 관한 사항을 문의한 후, 자신의 신분이 기자임이 밝혀지자 원고로부터 직접 만나서 위 클럽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을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위 광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클럽을 설립하여 미혼남녀들에게 공개적인 사교의 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고 하였고, 위 1995. 6. 5.자 광고 이후 같은 달 9.까지 위 회사에 위 클럽에 관한 문의전화가 쇄도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위 클럽은 여자 19명, 남자 10명의 회원을 모집하였으나,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됨으로 인하여 회원의 가입 요청이 중단되고 기존의 가입회원들은 회원가입 신청을 철회하였으며, 원고는 회원모집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바. 원고는 위 영업을 위하여 위 각 광고 등 신문광고비 금 30,874,500원, 직원급료 금 8,300,000원, 팸플릿 등의 인쇄 및 복사비 금 9,438,000원, 사무실 월차임, 관리비 금 2,281,730원, 사무실비품대금 4,088,000원, []호텔 사용료 금 1,368,335원, 직원 유니폼 대금 2,179,000원 등 합계금 58,529,565원을 지출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 원고의 이름이 직접 게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와 생활을 같이 하는 주변 사람들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위 클럽을 설립하여 위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점, 기사의 제목과 기사에 사용된 문구, 기사의 흐름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부유층 미혼 남녀만을 골라 호화사교클럽을 조직하여 초호화연회를 베풀고, 귀족모임을 피하는 등의 사람인 듯한 부정적 인상을 주고 있어,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어 수 많은 독자에게 보도, 공포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원고의 위 영업을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백 []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기사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가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백 []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항변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가 전반적으로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백 []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위 1. 바. 항 기재 금 58,529,565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이 사건 기사의 게재여부와 관계없이 지출된 금원으로서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그러나 피고회사는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이 방해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피고회사가 위 부산일보의 같은 날 같은 면 하단에 위 클럽을 선전하는 광고를 실고, 바로 그 상단에는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점,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크기 및 게재 경위, 원고가 위 영업에 투자한 비용,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불이익, 원고의 나이와 경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위자료 액수는 금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이 사건 1996. 2. 13.자 청구취지및원인보충서부분 송달일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2.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7. 3.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3. 5.

재판장 판사 양 인 석
판사 조 성 제
판사 김 태 호

2심 判 決 文

사 건 : 97나3873 정정보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이

부산 수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중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갑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부산일보 주식회사

부산 동구

대표이사 김상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변론종결 : 1998. 2. 19.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7. 3. 5. 선고 95가합18232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4.부터 1998. 2. 26.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제2심 모두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8,529,565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3.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 송달일로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로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인정되는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2호증, 강제3호증의 1 내지 5(강제3호증의 4는 을제1호증과 같다), 강제5호증의 1, 2, 강제6호증, 강제7호증의 1 내지 5, 강제8, 9, 10호증, 강제11호증의 1 내지 4, 강제12호증의 1, 강제14호증의 1 내지 4, 강제16호증의 1 내지 4, 강제17호증의 1, 2, 강제18호증의 1 내지 4, 강제19호증, 강제22, 23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장[] , 백[] , 당심증인 김[] 의 각 증언(증인 백[] 및 김[] 의 각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의 원고본인신문 결과, 원심법원의 주식회사 [] 호텔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4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백[] , 김[] 의 각 일부증언을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 · 피고의 신분 등

원고는 1995. 3.경부터 [] 라는 이름의 사교클럽(이하 위 클럽이라고만 한다)을 조직, 운영하기 위하여 같은 해 6. 2. [] 라는 상호로 이벤트기획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회사가 발행하는 부산일보를 비롯한 일간지들에 광고를 내는 등으로 위 클럽을 홍보하여 회원모집에 착수하였던 자이고, 피고회

사는 부산, 경남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부산일보라는 제호의 일간지를 발행하는 회사이며, 소외 백 []은 위 부산일보의 기자로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기사에 게재

피고회사는 원고의 광고의뢰에 따라 같은 해 6. 5.과 같은 달 9. 두차례 위 클럽을 선전하는 지면하단 5단크기의 통광고를 게재하였고, 위 두 번째 광고가 게재된 같은 달 9. 그 광고가 실린 같은 면(31면)의 상단에 4단으로 “호화사교클럽 물의”라는 제목과 “거액가입비... 부유층 남녀 모집”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광고의 주요내용 및 이 사건 기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광고의 주요내용

산호빛 사연을 담은 6월의 해변에서 [] 클럽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 클럽은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신사숙녀들의 프라이드를 지켜드리는 격조높은 사교모임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즐겨 찾는 품격있는 사교모임을 접할 수 없었던 한국의 미혼 지성인들을 위하여 [] 클럽이 여러분 가까이 왔습니다. 인기정상의 연예인·예술인과 우아하고 격조높은 런치파티와 함께 품위있는 분위기 속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격 : 20대 30대의 미혼남녀로서 클럽규정의 엄격한 심의를 거친 분에 한합니다. 의사, 교수, 법조인, 방송인, 건축, 세무, 설계, 회계사, 공·관기업체, 상장기업체, 기타 전문직 종사자로서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삶에 자신을 가지신 분들을 []에서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등

(2) 이 사건 기사의 전문

최근 외국사교클럽과 유사한 친교클럽을 운영하는 업소가 부산에 등장,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거액의 입회비를 받고 미혼 남녀회원을 공개 모집해 사치품조와 계층간 위화감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 호텔 객실에 사무실을 차린 「 []」 회사는 외국의 유명사교클럽을 흉내낸 가칭 「 [] 클럽」이란 사교클럽을 조직, 20~30대 남녀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이 업소는 부산 [] 호텔을 협조업체로 등장시켜 신용도를 높인 뒤 회원들로부터 연회비 1백 30만원과 월 참가비 33만원 등을 받고 매월 1회씩의 초호화 연회를 베풀 예정이며 연회에는 유명 연예인까지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호텔객실인데도 버젓이 업소간판까지 내걸고 있는 이 회사는 전화문의를 통해 일단 고객을 선별,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상대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클럽회원으로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계층에 한해 자격을 한

정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재산과 미모 등을 주요 선발기준으로 정해 「귀족모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클럽회원의 비밀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호적초본과 졸업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 등 각종 신상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과 대구지역에도 지사를 개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업소의 관계자는 『하루 수백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백 [] 기자>

다. 기사의 진위 여부

(1) 이 사건 기사 중 진위 여부가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 회사의 사업장은 부산 해운대구 [] []에 소재하였고, 다만, 위 클럽의 행사장으로 위 [] [] 호텔의 연회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객실 1실을 위 호텔로부터 장기간 임차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관계로 이를 임차하여 연락처로 사용하였으며, 임차한 호텔객실에 업소의 간판을 걸지도 아니하였고, 위 호텔을 협조업체로 하지도 않았다.

(나) 클럽의 연회비는 금 1,300,000원이었으나, 월 참가비는 금 13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위 클럽의 행사에 진행자로서 연예인 2명을 참여시킬 계획이었다.

(라) 위 클럽의 회원의 자격을 특별히 한정하여 두지는 않았고,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신문광고를 통하여 의사, 교수, 법조인, 방송인, 건축, 세무, 설계, 회계사, 공·관기업체, 상장기업체, 기타 전문직 종사자로서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삶에 자신을 가진 사람들은 위 클럽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

(마) 클럽의 여자 회원에 관하여 재산과 미모 등을 주요 선발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남녀 구분없이 입회신청서의 자기소개란에 신장, 눈의 색상, 머리카락 색, 체중, 쌍꺼풀, 곱슬여부, 혈액형, 시력, 특기, 취미, 종교 등을 환경란에 가족관계, 주거의 형태, 부모의 직업, 월소득액, 동산 및 부동산 소유 등을, 직업 및 경력란에 근무처, 부서, 직위, 근무경력, 연봉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입회신청서에 외모를 일부 기재하도록 한 것은 과거 원고가 일한 바 있는 호텔의 구직신청서를 참조하여 만들었던 관계로 그 구직신청서에 기재토록 되어있는 외모에 관한 항목이 위 자기소개란에 포함된 것이었다.

(바) 클럽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로서 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2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하였으나, 소득세납세필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 중의 상당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라. 취재의 경위

위 백 []은 1995. 6. 5. 부산일보에 게재된 위 클럽의 첫번째 광고가 실린 후, 위 클럽에 관한 독자들의 다소 항의가 섞인 문의를 받고서 위 클럽을 취재하기로 마음먹고, 동료기자 소외 김 []으로 하여금 위 클럽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가장하고 위 []의 직원인 소외 정 []에게 전화상으로 위 클럽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문의하게 한 후, 스스로도 위 정 []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클럽에 대하여 문의하다가 자신이 기자임이 밝혀지자 원고로부터 위 클럽에 관하여 설명을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후, 다른 사실확인 절차를 빠뜨린 채 주로 위 광고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마. 기사 게재 전후의 기타 정황 등

(1) 원고는 위 클럽과 관련한 영업을 위하여 위 부산일보에 광고비 금 19,332,500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광고비 합계 금 30,874,500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였고(다만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광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광고비채권을 포기하였다), 직원급료 금 8,300,000원, 팸플릿 등의 인쇄 및 복사비 금 9,438,000원, 사무실 월차임, 관리비 금 2,281,730원, 사무실비품대금 4,088,000원, []호텔 사용료 금 1,368,335원, 직원 유니폼 대금 2,179,000원 등 합계금 27,655,065원을 지출하였다.

(2) 위 []에는 1995. 6. 5. 광고이후 같은 달 9.까지 여러사람으로부터 회원가입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남녀 합계 29명의 회원을 모집하였으나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이후 회원가입요청이 중단되고 기존의 가입회원들도 모두 회원가입을 취소하여 원고 회원 모집 업무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및 표현에 사용된 어휘 등으로 보아 독자들에게 위 []가 위 클럽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거나, 위 클럽의 취지나 목적이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에 족한 것이어서 위 백 []의 취재 및 기사 작성으로 인하여 위 []를 경영하는 원고의 영업을 방해되고 또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백 []의 취재 및 기사작성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회사는 위 백 []의 사용자로서 위 백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먼저 이 사건 기사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기사의 상당부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회사는 가사 그 내용에 진실하지 아니한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백[]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는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가 그 성격상 취재기자가 사실확인을 생략하고 기사를 작성하여야 할 만큼 신속을 요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백[]에게 대면을 요청하였으므로 위 백[]이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원고를 대면하여 사실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로 위 클럽의 신문광고내용만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이 사건 기사는 위 신문광고내용만을 토대로 하여 위 백[]의 예단에 바탕을 둔 추측과 과장에 의하여 작성됨으로 인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백[]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는, 위 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위 클럽에 관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위 1. 마.의 (1) 기재 광고비 등 합계 금 58,529,56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금원 중 피고회사에 대한 광고비 금 19,332,5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회사 또한 원고에 대한 위 광고비채권을 포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보 수 없고, 이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기사의 게재와 관계없이 지출된 금원이고,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됨으로 인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위 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이 이 사건 기사의 게재와 관계없이 지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클럽과 관련한 원고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그 지출액 만큼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금원은 위 백[]의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위 금원을 지출한 사실만으로 차 후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2) 다만, 피고회사는 원고의 영업이 방해되고, 명예가 훼손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나이와 경력,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성질 및 그 정도, 이 사건 기사의 내용, 크기, 게재경위 및 허위의 정도, 원고가 위 영업에 투자한 비용, 이 사건 기사가 위 클럽의 광고가 게재된 날의 같은 면의 상단에 게재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은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1996. 2. 13.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부분 송달일인 1996. 2. 14.부터 피고회사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원고의 항소 및 피고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26.

재판장 판사 진 봉 진
 판사 지 영 철
 판사 윤 근 수

